

이 보고서는 무선관리단의 출연에 의한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제 출 문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디지털 통신방송융합시대의 방송정책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 2.

연 구 기 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 책임자: 김 국 진

# 요 약 문

I. 과제명: 디지털 통신방송융합시대의 방송정책에 관한 연구

II.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II. 연구책임자: 김 국 진

IV.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1. 연구의 최종목표

- 국내 디지털시대 방송정책안 마련
- 디지털 시대 방송정책기본에 입각한 법제도안 마련

##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디지털시대 방송정책 모델 유형화
  - 주요국의 디지털시대 방송정책 유형화 및 평가
- 디지털 방송 및 통신방송융합에 따른 국내 방송정책 수립
  - 기존 방송정책의 한계 및 문제점 분석
  - 체계적 정책수립구도에 관한 검토
  - 디지털 방송정책 이념과 목표 설정
- 디지털 방송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주요국의 디지털 방송법제 분석
  - 신규 디지털 방송서비스도입, 확산을 위한 법제도 마련
  - 국내 디지털 방송법제 마련

### 3. 연구방법

- 문헌연구와 각국 전문가에 대한 심층인터뷰 등을 실시

## V. 연구수행내용 및 최종결과

### 1. 융합현상의 서비스로서의 구체화 현상 가속

- 모바일 부문에서의 방송서비스의 확산
- IP-TV의 도입, 확산

### 2. 국가별 특수성과 융합의 보편성 조화

- 융합의 보편성에 따른 각국의 규제변화
  - － 규제기구의 통합추세
  - － 네트워크/콘텐츠 2원제 추세
- 국가별 특수성에 의한 차이의 존재
  - － 디지털방송의 진척과 규제제도의 변화양상의 상이성

# 제 목 차 례

요약문 .....	1
제 1 장 서 론 .....	11
제 2 장 주요국의 디지털 방송 동향과 대응 .....	13
제 1 절 개 요 .....	15
1. 디지털 융합 환경 조성 .....	15
2. 각국의 디지털방송과 변화 .....	16
제 2 절 주요국의 디지털 방송 동향과 대응 .....	17
1. 미 국 .....	17
2. 영 국 .....	19
3. 독 일 .....	21
4. 프랑 스 .....	23
5. 일 본 .....	25
제 3 절 주요국의 통신방송융합서비스 발달 양상 .....	27
1. TPS .....	27
2. IP-TV .....	31
제 3 장 주요국의 디지털 방송 정책 유형 .....	41
제 1 절 개 요 .....	43
제 2 절 주요국의 디지털 방송정책 및 규제 .....	45
1. 미 국 .....	45
2. 영 국 .....	59
3. 독 일 .....	71
4. 프랑 스 .....	80
5. 일 본 .....	87
6. 소결론 .....	101

<b>제 4 장</b>	<b>국내의 디지털 방송정책 모델</b>	107
제 1 절	국내 디지털 방송정책 유형화	109
1.	법제도	109
2.	규제기구	111
3.	소유규제	114
4.	기타 규제	115
5.	국내 디지털 방송정책 유형과 선택	117
<b>제 5 장</b>	<b>우리나라에 바람직한 디지털 시대 방송정책안</b>	119
제 1 절	유형별 시나리오	121
1.	A형	121
2.	B형	122
3.	C형	123
제 2 절	제 언	124
<b>참고문헌</b>		127

## 표 목 차

〈표 1〉 미국 케이블 가입자 .....	
〈표 2〉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 .....	
〈표 3〉 방송이 허가된 DTV 방송사 수(2004년 7월 28일 기준) .....	
〈표 4〉 2004년 초 디지털TV 현황 보고 .....	
〈표 5〉 독일의 디지털 TV 현황 .....	
〈표 6〉 프랑스의 플랫폼 별 가입자 현황 및 전망 .....	
〈표 7〉 일본의 Cable 방송 현황 .....	
〈표 8〉 일본의 위성 디지털 방송 현황 .....	
〈표 9〉 북미 TPS 현황 .....	
〈표 10〉 유럽의 TPS현황 .....	
〈표 11〉 해외의 IP-TV 추진 사업자 .....	
〈표 12〉 All West Communications IP-TV and DSL 패키지 .....	
〈표 13〉 홍콩 유료방송 시장 현황 .....	
〈표 14〉 나우 브로드밴드 TV 가입자 수 변화 .....	
〈표 15〉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및 TV 가입자 수 증가 추이 .....	
〈표 16〉 분리규제 프레임워크하의 서비스 분류체계 .....	
〈표 17〉 미국의 주요 미디어 소유 관련 정책 변화 .....	
〈표 18〉 개정된 어린이 TV 규정 .....	
〈표 19〉 영국 규제 기구의 변화 .....	
〈표 20〉 독일의 방송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 .....	
〈표 21〉 독일 방송 통신관련 규제기구 .....	
〈표 22〉 방송, 미디어서비스, 텔레서비스 구분 .....	
〈표 23〉 향후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의 정책방향 .....	
〈표 24〉 비대칭 규제 내용 .....	
〈표 25〉 일본의 무선국 구분과 금액 .....	
〈표 26〉 융합관련 규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	

〈표 27〉	통신과 방송의 정책 및 규제기관 .....	111
〈표 28〉	국내 통신과 방송 시장 환경, 정책 및 규제 환경 비교 .....	112
〈표 29〉	방송사업의 구분과 허가제도 .....	116
〈표 30〉	기구 통합과 분리의 장·단점 .....	122
〈표 31〉	주요국의 통신·방송융합시대에 대응한 법 개정 현황 .....	124



## 그림 목 차

[그림 1] OFCOM의 조직도 .....	64
[그림 2] 일본의 무선국 허가 절차 .....	97
[그림 3] 주요국 디지털 방송정책 유형 .....	102
[그림 4] 국내 디지털 방송정책의 유형화 .....	118

# 제1장 서론

## 제 1 장 서 론

오늘날 “디지털화”, “통신·방송융합”이라는 이슈는 통신과 방송을 얘기할 때 빼놓을 없는 화두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통신과 방송 전반에 일대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 이미 먼 역사 속의 고전이 되어버린 내용이지만 방송은 통신과의 융합현상 가속화로 방송만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다. DTV, DMB, IPTV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은 통신과 방송이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며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제는 이러한 물리적인 변화 혹은 융합단계를 벗어나 ‘U-sense Network’에 의해 변화의 속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시장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신과 방송 정책 및 규제 구조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한 현실이다. 이미 현실적으로는 2004년 2월 방송법 개정 이후에 신규서비스들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통신과 방송의 상호 진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추세다. 뿐만 아니라 통신과 방송 규제기구의 분리체제로는 일관된 통신·방송 융합정책을 수립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통신방송통합규제기구로의 개편에 대한 주장이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방송 통신 융합과 관련한 정책적 대응은 관련 업계와 산업현실에서의 빠른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관련 서비스의 도입 및 활성화를 지연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오히려 관련 시장의 퇴보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세계 시장에서의 디지털방송서비스와 통신방송융합서비스를 선도하는 현 목표는 국내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달성하기 힘들 수도 있다.

기존에도 국내 방송정책의 한계 및 문제점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노를 젓는 뱃사공이 많아 오히려 배가 산으로 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논의만 있을 뿐 실제 방송·통신 융합에 적합한 제도를 모색하지 못한 상황이다. 기존에는 통신과 방송 관련 규제 및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비교한 연구가 부재하다. 대부분이 현 통신방송융합시대에 대응하고 있는 디지털 방송정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런 연구들을 통해 나온 시나리오를 토대로 단기, 중기,

장기적인 방안을 제시해 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기존 논의를 탈피하여 보다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융합시대의 방송정책을 살펴봄에 있어서, 기존의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법제도적 분석틀에서 벗어나 융합관련 가치사슬(value chain) 상의 관련 사업자들의 개별영역의 역할과 변화를 살펴보고, 해외 사례를 통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산업적 변화와 그에 따른 방송정책의 변화 양상을 유형화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보다 효율적인 법제 및 정책 모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제2장 주요국의 디지털 방송 동향과 대응

## 제 2 장 주요국의 디지털 방송 동향과 대응

### 제 1 절 개 요

#### 1. 디지털 융합 환경 조성

세계 각국은 디지털 융합 환경 조성차원에서 방송 관련법령을 정비하거나 신설하였다. 미국(통신법 '34, '96), 이탈리아(방송통신법 '97), 말레이시아(통신멀티미디어법, '98) 등은 통신법과 방송법을 통합한 단일법 제정하였다. 미국은 통신법(1934)과 케이블통신법(1984)을 통합하여 1996년에 통신법을 개정, 통신과 방송 상호간 상호진출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한편 통신법 내에 별도의 융합서비스 관련 규정은 없으며 통신서비스(Telecommunication Service)와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의 분류에 입각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97년 통합된 방송통신법을 제정하고, 특정개인이 대상인 통신콘텐츠와 불특정다수가 대상인 방송콘텐츠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1998년 통신법과 방송법을 통합한 통신멀티미디어법(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을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국가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다.

한편 영국(Communications Act 2003), 독일(정보통신서비스법, 미디어서비스 협정), 일본(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은 새로운 법을 제정하였다. 영국은 2003년 통신정책을 담당하는 통상산업부(DTI)와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문화매체스포츠부가 공동으로 통신·방송의 환경변화에 부응한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s Act)을 제정하여 단일 법령체계 마련하였다. 기존에 통신은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및 무선통신법(Wireless Telegraphy Act)으로, 방송은 방송법으로 규제해 왔으나 1986년부터 시작된 논의와 조정의 결과로 커뮤니케이션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통신법 및 방송법의 역할은 축소되었다. 독일은 제 3의 법을 제정함으로써 통신방송융합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방정부 차원의 '정보통신서비스법(Information und Kommunikations dienste-

Gesetze)'과 주차원의 '미디어서비스법(Staatsvertrag über Mediendienste)'을 토대로 텔레서비스와 미디어서비스를 구분하고 여기에 포함되는 멀티미디어 융합서비스를 규제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2001년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을 법적 토대로 하여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도 EU의 Framework Directive를 수용하는 전자커뮤니케이션법이 2004년 말에 제정되어 방송 융합 시대의 전자커뮤니케이션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 2. 각국의 디지털방송과 변화

세계적으로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디지털화가 일정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완전한 디지털 전환 시점은 각 나라별로 다르나 정부주도형 국가는 미국과 대만의 경우 2006년, 독일 2010년, 중국 2015년 등 전환 완료시점을 설정하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시장주도형인 영국의 경우 2006년에서 2012년 사이로 완료 시점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디지털 전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위성, 케이블에서 이미 2003년 상반기에 각각 2,000만 이상의 디지털방송 가입자를 확보하고 지상파에서도 1998년 디지털방송 본방송개시 이후 CEA(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의 조사에 따르면(2003. 6) 미국의 디지털산업 현황은 디지털TV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약 621만대가 판매되었으며, 향후 미국 내에서 디지털 TV는 2004년에는 540만대, 2006년에는 1000만대, 2007년에는 1600만대가 넘게 판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은 Ofcom(2004. 3Q) 조사에 따르면, 위성방송, 케이블, 지상파를 모두 합한 디지털 방송 가입자 수는 약 1,386만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방송시장 대비 약 55.9%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2004년 동안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TNT)를 준비하였고 올해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을 출범할 예정이다. 1996년 Canal Satellite와 TPS의 디지털 위성방송을 시작으로 그 이듬해 케이블 방송이 디지털 신호로 방송을 시작하였다.

지상파 텔레비전이 가장 늦게 디지털화를 추진함으로써 올해는 지상파TV의 디지털화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003년 12월 1일, 도쿄, 나고야, 오사카 등 3대 광역권을 중심으로 디지털 방송을 송신, 지상파의 디지털방송시대가 개막하였다. 일본 정부 내의 IT전략본부는 'e-Japan 전략 II'를 책정, 공표하였고, 총무성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출현으로 인한 방송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전파법을 개정해 아날로그 주파수 변경 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일본의 대표적인 미디어 규제제도라고 할 수 있는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을 완화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방송사업자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면서 이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도 제정하였다.

## 제 2 절 주요국의 디지털 방송 동향과 대응

### 1. 미 국

현재 미국의 경우 202개의 시장에서 1,129개 방송사가 디지털방송을 실시하고 있어 전체 미국 시청자의 99%가 디지털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 또한 1억 600만 미국 시청자 중 84%는 5~6개의 디지털 채널을 수신할 수 있고, 59%는 8개 이상의 디지털방송 채널을 수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블TV의 경우 2004년 1월 기준으로 전체 케이블가입자가 7,386만 명으로 이 가운데 디지털케이블 가입자가 2,15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표 1〉 미국 케이블 가입자

(단위: 만명)

	가입자 수
기본 케이블 가입자(2004년 1월 기준)	7,386(68.1%)
전체 텔레비전 가입자(2004년 1월 기준)	10,841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	2,150
모뎀 케이블 가입자	1,500

출처: Grobal Digital TV(2004)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케이블 가입자의



29% 정도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표 2〉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

(단위: 백만)

연도	TV	Modem	Telephony
2000	6.0	1.9	0.18
2001	10.9	4.6	1.10
2002	15.9	8.3	1.91
2003	20.0	12.8	2.50

출처: Grobal Digital TV(2004)

2004년 7월 기준으로 모든 시장에서 1,628개의 텔레비전 방송국들이 DTV 설비 허가 및 면허를 받았다. 전체 1,423개의 방송국들은 현재 디지털 방송을 하고 있고, 634개는 설비에 대한 허가를 받고 있는 중이며, 789개는 STA(특별 임시면허) 혹은 실험적 DTV 조건에 준하여 운영 중이다.

〈표 3〉 방송이 허가된 DTV 방송사 수(2004년 7월 28일 기준)

분류	DTV	방송 중인 DTV 방송국	방송실시 (%)	면허를 가지고 혹은 프로그램 시험 중	임시면허
상위 30개 시장 네트워크 계열회사	119	119	100%	110	9
다른 상업 방송국	1,230	1,018	82.8%	342	676
비상업 교육방송	373	288	76.7%	182	104
전체	1,722	1,423	82.8%	634	789

출처: KBI(2004)

HD(High Definition)TV는 미국 시장에서 킬러 어플리케이션(Killer Application)의 역할을 해왔고, 현재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을 포함해 충분한 양의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FCC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새로운 TV 단말기에 2004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DTV 튜너와 디코더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별도의 셋톱박스가 없어도 지역 방송이 제공하는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송과 관련해서 의무전송규정(must-carry rule)이 지역방송사와 케이블 사업자 사이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방송 업계에서는 기존의 아날로그 프로그래밍 서비스(primary video service)를 위한 채널 뿐 아니라 디지털 전송을 위한 충분한 가용 채널을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케이블 업계에서는 각 지역방송사에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충분한 채널을 공급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다(동향과 분석, 2004. 12. 20).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FCC는 디지털 방송 텔레비전을 위한 ‘방송 플래그(Broadcasting Flag)’로 알려진 재분배 통제 시스템을 채택하여 디지털 방송 콘텐츠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 2. 영 국

영국은 방송의 디지털 전환(Digital Switch-off)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국가 중 하나다. 2004년 10월 말 영국의 디지털TV 점유율은 전체 가구 55.9%를 상회하고 6월 말 53.8%이었던 수치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Digital Television Update. Q3 2004). 디지털 TV 이용부분에서는 위성방송 분야가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료 플랫폼 사업체인 Sky Digital과 무료 위성방송 서비스를 포함하여 모두 28.9%의 가구 점유율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 Freeview가 12.2%로 그 뒤를 잇고, 케이블의 경우 NTL과 Telewest를 중심으로 9.1%의 점유율을 기록했다(동향과 분석, 2004. 10. 15).

OFCOM은 2004년 영국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디지털 방송이 출범한 지 6년이 되었으며 현재 영국 가구의 절반 이상이 디지털TV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무료시청 디지털TV와 유료디지털TV 중 선택이 가능한 지역에서의 채택률은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4〉 2004년 초 디지털TV 현황 보고\*

기술	장비	이용도	브랜드	채택	가구비율
위성	외부장착 위성수신기와 셋톱박스	97%	유료: 스카이 디지털	6.9m	28.0%
			무료: 브랜드 없음	0.2m	0.9%
케이블	네트워크로부터의 케이블 연결과 셋톱박스	51%	유료: ntl, 텔레웨스트	2.3m	9.1%
			무료: 없음	-	-
지상파	재래식TV 안테나나 셋톱박스 또는 일체형 디지털 튜너	73%	유료: 탐 업 TV	2004년 봄 출시	-
			무료: freeview	3.0m	50.2% 총 보급률

m: million(백만)

\* 광대역을 통한 디지털TV는 현재 수가 너무 적어 포함되지 않음

출처: Ofcom

영국의 경우 지상파 디지털방송은 Granada, Carlton, 그리고 루퍼트 머독(Rupert Murdoch)의 BSkyB가 소유한 영국 디지털방송(British Digital Broadcasting)에 의해서 지난 1998년 11월에 시작되었다. 이후 유료 지상파 디지털방송은 ONdigital에서 ITV Digital로 회사명을 바꿔 가며 많은 경제적·기술적 어려움을 딛고 2002년 5월까지 유지해 오다가 이후 도산했다.

ITV Digital의 도산 이후 2002년 10월 무료 지상파 디지털방송인 Freeview가 30개의 TV 채널과 20개의 라디오 채널을 제공하면서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Freeview는 BBC와 Crown Castle International 그리고 BSkyB가 공동투자해서 설립된 회사다. 현재 지상파 디지털방송 수신을 위한 셋톱 박스는 143달러 정도에 판매되고 있고, Freeview를 시청할 수 있도록 셋톱박스가 내장된 iDTV라 불리는 TV 수신기도 판매되고 있다.

이처럼 Freeview의 놀라운 성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인에서 기인한다.

첫째, Freeview의 무료 서비스가 가장 큰 매력이다. 또한 디지털 셋톱박스의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량생산이 가능해지고 제조업체간에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 하락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었다. 둘째, 채널 수가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셋째, 가정마다 보

조 수상기를 디지털TV로 구입하면서 Freeview의 성장에 일조를 했다고 분석한다.

한편, BSkyB는 2004년 6월 20일 200개의 무료 디지털 위성방송 채널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무료 디지털 위성방송 서비스를 통해 가시청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Freeview 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수신 안테나를 개선, 교체해야 하는 시외곽 지역 시청자들에게 크게 소구해 2012년 완전한 디지털 전환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BskyB 계획은 BBC Freeview 서비스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2004년 10월 무료 디지털 위성방송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내년까지 Sky 총 가입자 수 800만 명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급속한 디지털화의 배경이 다음과 같은 요소에서 찾을 수 있다. 영국의 디지털TV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한 데는 위성과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의 유료 다채널 방송 서비스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된다. 특히 초기 보급에는 아날로그 유료 TV에서 디지털 유료TV로의 전환이 큰 역할을 했는데 여기에 1999년 BSkyB와 ONdigital이 디지털 셋톱박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BSkyB는 다채널 유료TV를 확장하고, 디지털 방송 서비스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하여 지난 2001년 아날로그 유료 TV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2004년 10월 BSkyB는 전체 디지털 수신 가정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디지털방송은 아날로그 방송에 비해 주파수 대역 사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부가적인 방송 서비스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이 등장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수요 창출을 통해 방송시장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송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제작 능력의 창의성 개발도 도모할 수 있다.

Ofcom은 2007년 디지털로의 전면 전환이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발표했다. 2012년이 디지털로의 전면 전환을 완수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일 것으로 보았으며, 이것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영국은 디지털 텔레비전 유일 네트워크를 보유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된다.

### 3. 독 일

현재 독일의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지역은 지난 2001년 11월 지역 주민과 시

정부 사이의 합의를 통해 디지털 전환 일정을 공표하여 2003년 8월 유럽 내에서 최초로 완전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다. 디지털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케이블이나 위성 방송 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셋톱박스를 구입해야 하며, 구입가격은 미화 100달러에서 316달러 정도로 책정되어 있다.

2004년 기준, 독일 전체에서 디지털TV 수신 가정은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유럽 지역에 비해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편은 아니지만 2006년 독일 월드컵 축구는 DVB-T 발전의 주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표 5〉 독일의 디지털 TV 현황

연도	TV 가구수(m)	디지털TV가구수(m)	DTV 보급률(%)
2001	34.35	2.10	6.1
2002	34.10	2.54	7.4
2003	34.37	3.14	9.1
2004	35.54	3.57	10.3

출처: Grobal Digital TV(2004).

디지털 전환 전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을 시청하고 있던 17만 가구 중 약 15만 가구가 셋톱박스를 통해 디지털방송을 시청하였다. 디지털 전환 전 시청자들은 12개의 아날로그 채널을 시청하였지만, 디지털 전환 후에는 21개의 디지털TV 채널과 11개의 디지털라디오 채널을 시청취할 수 있게 됐다. 아날로그 신호의 송출 중단은 주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에도 몇 개의 주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독일의 경우 독일통신법과 연방 및 주 정부의 디지털 전환정책에 따라 2010년에는 완전한 아날로그 신호의 송출 중단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독일 베를린-브란덴부르크의 아날로그 송출 중단 시나리오는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먼저 2개의 고출력 아날로그 채널을 2002년 10월에 디지털로 전환하여 고품질의 디지털방송을 시험적으로 선보였다. 다음 단계로 모든 고출력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전환하였다. 모든 상업방송의 경우 2003년 2월 아날로그 신호 송출을 중단하고 공익방송의 경우 계속해서 아날로그방송 서비스를 저출력 지역 채널에서만 수행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모든 아날로그 신호가 2003년 8월 송출 중단됐다. 아날로그 신호 송출 중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대국민 홍보에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정부는 아날로그 신호 송출 중단에 대한 주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방송 및 지면을 통해 홍보를 했고, 마지막으로 각 가정에 공문을 보내 아날로그 신호 전송 중단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가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다. 또한 아날로그 신호의 송출 중단에 관한 문의사항은 콜센터(call center)의 운영과 인터넷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했다. 아날로그 신호 송출 중단을 홍보하는 데 소요된 경비는 약 150만 달러(한화 약 18억원) 정도였다. 독일 정부는 디지털방송이 소비자와 방송사들에게 빠르게 침투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급진적인 아날로그 신호 송출 중단과 같은 정책이 필요했음을 주장한다.

양방향 서비스와 관련해서 보면 공영방송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고 있는데 ARD는 인터랙티브 TV 포털, 뉴스와 정보방송의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ZDF는 인터랙티브 포털, 오락방송과 시사토론 프로그램 중심이다.

2003년 10월, 독일과 프랑스 간의 친선관계가 무르익는 동안 ARD는 처음으로 디지털 부가정보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했다. 각각의 항목들 중 주요한 내용에는 설비, 통계 그리고 상호작용식 당첨 게임 등에 관한 주제들이 포함되었다. 그동안 방송사들이 디지털 정보화에 필요한 기반들을 구축해 온 결과들이 서서히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경험을 위해 시청자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 디지털 전환 장치인 MHP-Box인데, 이 비용은 아직까지 부담되는 가격인 350유로 선이다.

한편, ZDF의 경우에도 ARD와 마찬가지로 상호작용 MHP 응용 서비스의 막을 열었다. 구체적으로 볼 때, 'ZDF 인터랙티브'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오락 및 시사토론 프로그램 등이다. 새로운 인터랙티브 MHP의 제공을 통해 디지털 이용자들에게 개막 쇼인 <우리의 최고들(Unsere Besten)>(2003년 10월 오후 9시 15분 방송)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4. 프랑스

2002년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서비스하려던 계획이 상업 및 공영 방송사업자와 규제기관, 그리고 방송위원회(CSA)간의 아젠다 충돌로 2004년 또는 그 이후로 연

기됐다.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반대하는 상업아날로그 방송사업자인 TF1과 M6는 지난해 CSA가 강제한 채널의 디지털 전환을 거부했다. 이에 법정소송이 진행되었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방송사업자들은 디지털 전환을 하지 않은 데에 대한 벌금을 일 단위로 납부하도록 요청했다. 상업방송용으로 8개의 지상파 무료 채널과 14개의 유료 채널들을 할당했으며, 이외의 채널들은 공영방송을 위해 남겨 두었다.

프랑스는 2004년에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TNT)를 준비하였다. 2001년 7월 24일 방송위원회는 디지털 텔레비전 참여 후보 채널의 입찰을 공고했고, 20개 사영 채널들이 선정되어 방송위원회와 각각 체결하였다. 2001년 8월 1일 이전에 아날로그 공중파 방송의 허가를 획득한 채널들은 자동적으로 디지털 방송 채널로 선정될 자격이 있으며, 한 개의 채널을 더 추가할 자격을 가진다. 지상파 전국 방송사인 TF1, M6, Canal+는 각각 디지털 방송 허가를 받았다. France 2, France 3, France 5, Arte, La Cha ne parlementaire와 같은 공영 채널들은 공익성을 근거로 디지털 채널 선정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므로 자동적으로 허가를 받는다.

2005년 3월 1일부터 우선 한 달 내에 15개의 무료 채널들이 첫 방송을 실시하며, 나머지 15개 채널은 유료 서비스를 공급하게 되는데 9월 1일부터 6개월 내에 서비스의 상업화를 시작하게 된다. 방송위원회의 목표는 첫 방송은 17개의 송신소를 통해 우선 인구의 35%를 커버하고, 유료 채널이 9월에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인구의 50%, 그리고 2007년에는 80%~85%를 커버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10년 프랑스는 아날로그 텔레비전의 마지막 해가 될 것이다 (방송 동향과 분석, 2004. 12).

〈표 6〉 프랑스의 플랫폼 별 가입자 현황 및 전망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10
Cable	3,430	3,523	3,646	3,792	3,963	4,294	4,609
Digital Cable	764	884	1,094	1,327	1,585	2,577	3,687
Digital Dish Home	3,692	3,990	4,229	4,462	4,685	5,092	5,428
DSL	1,418	3,024	4,536	5,670	6,521	7,710	12,954

출처: Global Digital TV(2004).

## 5. 일 본

일본에서는 2000년 디지털 BS(Broadcasting Satellite) 방송이 시작되었고 2002년 3월에 동경 100도 CS(Communication Satellite) 디지털 방송이 추가되었으며, 지상파 방송은 2003년 12월에 수도권과 대도시권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모든 지역에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sup>1)</sup>. 올해 2005년도에는 지상파 디지털방송영역의 확대에 일본 방송계의 사업 구조에도 일대 변혁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 영역 확대에 따라 TV수신기의 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고 있으며, 케이블TV나 IP 방송에 의한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재방영 방식도 재검토 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휴대전화용 지상 디지털방송 개시될 것이다.

본래 2006년 12월까지 디지털 이행이 의무화되어 있던 각 지역 방송사들도 또한 2005년도 내에 실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반해 케이블TV의 디지털화는 2003년 12월에 3대 도시권에서 시작된 일본의 디지털 방송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급 세대수가 확대될 전망이다. 올 연말에 계획되어 있던 수도권에서의 시청지역 확대가 10월로 앞당겨 실시되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민방 5개국 디지털 방송 시청 가능 세대는 현재 12만 세대이나, 시청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640만 세대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위해 8월 초순부터 도쿄타워에서 발사하는 전파출력을 서서히 올려 실험방송을 실시하였다. 총무성이 이처럼 보급 확대를 가속화할 수 있는 이유는, 아날로그 방송 주파수 변경대책이라 불리는 작업이 당초 예정보다 빨리 끝날 전망이다기 때문이다. 이 작업은 지상 디지털 방송에서 사용할 예정의 채널이 아날로그 방송에서 이미 사용되는 지역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각 가정의 수신기 채널 설정을 변경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세대에 필요한 작업은 아니며, 대상은 전국에서 426만 세대, 비용은 약 1,800억 엔으로, 작년 2월부터 6년간의 예정으로 시작되었다. 수도권에서는 140만 세대가 대상으로, 5월 말까지 74만 세대에 대한 작업이 완료된 상태다. 방송지역이 확대되는 10월까지 수도권에서는 대상 세대의 80%까지 작업이 완료될 전망이라고 한다.

---

1) 김무곤·김관규(2004).



〈표 7〉 일본의 Cable 방송 현황

연도	Cable 가입자 수	Cable internet 가입자 수	FTTH 가입자수
2000	9,470	625	200
2001	10,480	1,303	9,300
2002	13,030	1,954	206,189
2003	15,166	2,376	756,211

출처: Grobal Digital TV(2004).

현재 민방과 NHK 교육방송의 시청지역은 극히 제한된 지역이기 때문에, “민방 으로서는 시청지역이 확대되어 640만 세대가 시청세대가 되는 것이 실질적인 디지털 방송 개국”이라고 민방측 간부는 말한다. NHK 종합방송은 이미 690만 세대가 시청하고 있다. 민방 관계자에 따르면, 민방 각 사는 8월 초순부터 도쿄타워에서 발사하는 전파를 현행 15와트로부터 단계적으로 증강하여, 혼신 장애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금번 지역 확대를 위한 목표 출력인 700와트까지 올릴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본방송으로 옮겨갈 수 있으나, 실험방송 중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전파의 출력을 약화시킬 예정이다. 이 확인 작업에는 2개월이 소요되며, 8월부터 10월까지의 실험방송을 거쳐 본방송이 시작된다. HD 영상이 중심인 지상 디지털 방송의 방송지역이 확대되면, 액정/플라즈마 TV 등의 대화면 TV 수요 확대로 이어지므로 관련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NHK의 조사에 따르면 지상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TV나 튜너의 올해 5월 출하대수는 92만 대에 달하고 있다.

〈표 8〉 일본의 위성 디지털 방송 현황

연도	SKY perfecTV(CS)	NHK(BS)	WOW(BS)
2000	1,448	9,464	2,534
2001	2,220	10,621	2,651
2002	3,372	11,164	2,667
2003	3,541	11,580	2,499

출처: Grobal Digital TV(2004).

지역 방송국에서는 원래 디지털 방송 개시가 방송국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수익구조가 수도권이나 대도시권에 비해 턱없이 허약한 지역 방송국으로서는 디지털화에 대한 투자는 모험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의 방송국조차도 예산 문제로 제작하기 힘든 퓨어 하이비전 작품을 지역 방송국이 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며, 시청자들의 디지털 방송으로의 시프트는 순조롭지 못하리라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2011년까지 예정된 전국 방송의 총 디지털화는 절망적이라고 지역 방송국 관계자는 토로한다. 따라서 3대 도시권에서 퓨어 하이비전의 비율을 높여, 지역 방송국에 대한 기술 및 예산 지원을 실시해 나가는 것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고 있다.

한편 이번 디지털전환 관련 문제에도 불구하고 상황전개는 더욱 더 나가 있다. 다양한 융합적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서버형 방송은 방송국에서 송신한 대량의 프로그램을 HDD 내장 수신기에 축적한 뒤, 미리 암호화된 프로그램의 영상이나 음성의 패스워드를 요금을 지불하고 입수하는 형태의 방송이다.

### 제 3 절 주요국의 통신방송융합서비스 발달 양상

#### 1. TPS

디지털화 혹은 통신방송융합 현상의 핵심에는 네트워크 기능의 효율성 측면을 강조할 수 있다. 디지털화로 인해 정보(영상, 음성, text 등)의 형태를 가공·변형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정보가 End-user로 도달되는 과정이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즉, 융합서비스 가치체계(value chain)에서 볼 때, 네트워크를 소유한 사업자가 정보의 상향요구(up-link)와 하향요구(down-link)를 움직이는 주체가 되었고, 한정된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동기화(sync)과정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의 달성이고 사업자의 시장성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TPS(Triple Play Service)이다.

디지털 융합시대에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발달은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의 Triple

Play를 가져오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 가. 북미지역 TPS 현황

현재 북미지역 소비자의 TPS에 대한 선호를 살펴보면, 개별서비스를 사용하는 비율보다 두개 이상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TPS중 음성을 유선에 국한시킬 경우 가입가구 비율은 전체 가입가구 중 3.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무선음성이 추가된 QPS의 경우 약 20%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결국 북미시장의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유무선 전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신사업자가 무선전화를 제공하지 못하는 케이블사업자에 비해 우세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문에 케이블사업자들은 이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사 케이블망을 통한 VoIP 서비스 제공 뿐 아니라 무선전화사업자를 인수하거나 자사 서비스에 무선전화서비스를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표 9〉 북미 TPS 현황

Entertainment and Communications Services	Number of U.S. Households	Percent of Households	Vernacular in the Industry
No Wireline	5,591,512	5.3	
Wireline Only	8,211,559	7.7	
Wireless Only	1,308,148	1.2	
Wireline and Wireless	7,634,375	7.2	
Wireline and Broadband	422,815	0.4	
Wireline and Pay TV	21,912,196	20.6	Traditional Double Play
Wireline, Pay TV and Broadband	3,378,501	3.2	Traditional Triple Play
Wireline, Pay TV and Wireless	35,971,009	33.9	Extended Triple Play
Wireline, Broadband and Wireless	934,588	0.9	Extended Triple Play
Wireline, Pay TV, Broadband and Wireless	20,846,556	19.6	Quadruple Play
Total	106,211,259	100.0	

주: 본문에서 제시되는 서비스는 단일사업자에 의해 제시되는 서비스비율이 아니고, 각기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조합한 결과임

자료: Dataquest(2004. 7)

북미지역의 주요사업자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케이블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던 TPS가 최근 유선사업자들의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케이블 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케이블사업자의 대표적인 TPS 제공기업은 Cox Communication으로 미국 최초로 단일망을 통한 전화, 초고속인터넷, 다채널 방송을 결합한 TPS를 제공하고 있다. 유선사업자로는 미국의 대표적 지역 전화사업자인 SBC와 Verison 등이 있다. SBC는 자사 가입자에게 EchoStar의 위성 TV제공을 통해 TPS를 제공하고 있으며, Verison은 DirecTV의 위성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sup>2)</sup>

#### 나. 유럽지역 TPS 현황

유럽의 케이블 및 통신업체 TPS현황을 살펴보면 헝가리의 UPC나 영국 NTL과 같은 케이블 사업자들은 통신사업자에 앞서 90년대 후반부터 TPS를 제공해왔으며, 광케이블제공 사업자들은 우월한 데이터 전송속도를 이용하여 통신사업자와 경쟁을 벌이고 있다. NTL의 경우 TPS제공으로 인해 2003년에 17%에 달했던 가입자이탈비율이 12%대로 낮아졌으며, Telewest의 경우 2003년에 2분기에 월 평균 ARPU가 61유로로 증가하고 전환도 16%로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편 광케이블사업자인 이태리의 Fastweb의 경우 5만명 이상의 TV가입자를 확보했으며, 스웨덴의 B2는 10만명 TPS에 가입되어 있다. <표 10>은 유럽지역의 케이블 및 통신업체 TPS 현황이다. 그러나 몇몇 ISP에 의한 서비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요 통신사업자들은 TPS제공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표 10> 유럽의 TPS현황

	Technology	Triple-play offering	Triple-play subscribers (estimated)	Triple-play penetration of addressable market
Fastweb	Fiber  AD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oice, video on-demand, broadcast TV, and 10Mbps data</li> <li>• Triple-play price: €110/month</li> <li>• 4Mbps dat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V customers: 21,600</li> <li>• Total video subscribers: 50,000</li> </ul>	N/A

2) SBC와 Verison이 제공하는 서비스유형은 Dataquest의 정의를 토대로 TPS서비스로 간주함

	Technology	Triple-play offering	Triple-play subscribers (estimated)	Triple-play penetration of addressable market
Bredbandsbolaget(B2)	Fiber VDS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oice, video on-demand, and 10Mbps data</li> <li>• Triple-play price: €45.60/month</li> <li>• 12Mbps data</li> </ul>	106,000	37.0%
LyseTele	Fib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oice, broadcast TV, and 10Mbps data</li> <li>• Triple-play price: €92.90/month</li> </ul>	1,150	N/A
Telenet	C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oice, broadcast TV, and 128Kbps data</li> <li>• Triple-play price: €67.18/month</li> </ul>	250,000	11.4%
ntl	C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oice, broadcast TV, and 150Kbps data</li> <li>• Triple-play price: €65.30/month</li> </ul>	508,700	18.0%
Telewest	C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oice, TV on-demand, broadband TV, and 560Kbps data</li> <li>• Triple-play price: €73.22/month</li> </ul>	227,040	13.2%
UPC	C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oice, broadcast TV, and 300Kbps data</li> <li>• Triple-play price: €64.85</li> </ul>	459,000	13.9%
Hansenet	ADS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oice, video on-demand, and 2Mbps data</li> <li>• Triple-play price: €66.80</li> </ul>	70,400	N/A

자료: Forrester(2003)

TPS제공에 따른 평가 중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면, 유럽에서 TPS를 제공중인 케이블 및 광케이블 사업자의 누적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적자의 주요원인은 TPS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이 TPS서비스를 위한 투자 및 운영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방송부문에 있어서 투자와 운영을 위한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도 TPS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터 텔레콤의 가입자 증가가 소폭에 그쳤고, 광케이블을 통해 TPS를 제공하는 KDDI 역시 가입자당 매출에 비해 과도한 투자비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케이블 사업자인 Cox Communication의 경우는 자사고객 중 1/3이 번들 및 TPS에 가입해 있으며, 이를 통해 매출액 증대, 고객이탈을 하락, 생산성 증

대 등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또한 호주의 Optus도 TPS제공에 따라 매출액 및 ARPU가 증가되고 상대적인 M/S우위확보가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 2. IP-TV

외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 말부터 통신사업자가 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의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2년과 2003년은 유럽과 홍콩의 ISP들이 공격적인 IPTV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가입자 기반이 크게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sup>3)</sup>.

외국의 IPTV 추진 사업자들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해외의 IP-TV 추진 사업자

지역	국가	IP TV 사업자	사업자 성격	사업 요건
북미	미국	SBC	통신사업자 (ADSL)	√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별로 케이블 사업자 면허를 취득해야 함.
		Verizon	통신사업자 (ADSL)	
		Qwest: Choice TV	통신사업자 (VDSL)	
유럽	이탈리아	e.Biscom: FastWeb	통신사업자 (Ethernet)	√ ADSL 통신사업자의 TV 서비스는 통신서비스로 간주되어 별도의 방송 규제를 받지 않음.
	프랑스	France Telecom: Ma Ligne TV	통신사업자	√ DSL 기반 통신사업자의 TV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법체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임.
아시아	홍콩 대만	PCCW: Nowbroadband TV	통신사업자	√ 유료TV서비스 허가 취득
	일본	Softbank: BB Cable TV	통신사업자 (ADSL)	√ 통신사업자의 망을 통해 방송서비스가 가능하며, 이는 총무성 등록 절차를 필요로 함. √ 통신사업자가 방송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케이블 방송 면허를 취득해야 함.
		마쓰시다: T-navi	민영+ 지역 SO	
		KDDI: Hikari Plus TV	통신사업자 (FTTH)	

출처: 한창완(2005).

3) 윤석민(2005). IPTV의 국내외 도입 현황과 정책상의 쟁점들, IP미디어 신상품의 성공적 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연구. 한국정보법학회.

### 가. 미 국

미국의 전화사업자들은 위성방송과의 번들링이나 자체적인 IPTV 사업 진출을 통해 방송 사업자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2004년 11월 SBC는 IPTV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TV 플랫폼을 도입하기로 하고 10년간 4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2007년까지는 1800만 명의 SBC 고객들이 IPTV와 더욱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세웠다. SBC 고객 중 일부는 내년 말에 IPTV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제공되는 TV서비스는 주문형 비디오(VOD), 디지털영상저장(DVR) 서비스 뿐만 아니라 TV 스크린을 통한 인스턴트 메시지, 원하는 프로그램 방송 시간 자동 알람 서비스이다.

All West는 2001년 4월 디지털 비디오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디지털 비디오 서비스의 보급률이 4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All West는 2003년 1월에 13개 채널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며 IPTV 패키지는 <표 12>와 같다.

<표 12> All West Communications IP TV and DSL 패키지

서비스	패키지	콘텐츠	요금
비디오	Local Choice	11개 비디오 채널	12.95달러/월
	Basic Choice	52개 비디오, 45개 오디오 채널	29.95달러/월
	Expanded Choice	65개 비디오, 45개 오디오 채널	38.90달러/월
	Complete Choice	65개 비디오, 12개 프리미어 비디오, 45개 오디오 채널	63.95달러/월
DSL	128Kb	128Kbps symmetric	29.95달러/월
	256Kb	256Kbps symmetric	39.95달러/월
	512Kb	512Kbps symmetric	49.95달러/월
	768Kb	768Kbps symmetric	59.95달러/월
	1.5Mb	1.5Mb symmetric	129.95달러/월
번들	Bundle	전체 패키지, 128Kbps DSL, 전화서비스	99.95달러/월

출처: 권호영(2004) 재인용

현재 지역에서 케이블 사업을 하고 있는 Qwest 및 Adelphia, Comcast와 경쟁하고 있다. 연간 약 300명 정도의 추가 가입자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사의 번들 패

키지를 잘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케이블 사업자의 TPS 전략으로 인해 경쟁 관계인 Telco의 융합형 서비스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 (1) SBC Communications(SBC)

통신사업자인 SBC는 2004년 3월, 미국의 2대 위성 방송 사업자 Echo Star와 손 잡고 위성TV 서비스를 시작한지 반 년 만에 12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였다(이홍석, 2004). 또한 2005년 1월 1일 SBC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휴대전화나 PC, TV 등을 이용해 Yahoo 사이트로 접속해서 전화 통화를 비롯해 이메일 확인, TV 프로그램 시청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였다. SBC는 현재 구리선을 광통신망으로 대체한 후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 기존의 TV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관련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을 제공할 MS에 10년 간 약 4억 달러를 지급하게 된다. SBC는 네트워크의 모든 구리선을 교체할 계획인 Verizon과 달리, 모든 프로그램을 동시에 송출하지 않음으로써 대역폭을 최적화하는 전략을 세워 추진 중이다.

#### (2) 미국의 Verizon의 FTTH 준비 계획

미국 최대 유선 전화 사업자인 Verizon은 9개 주에 광케이블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 \$10억을 지출할 계획이다. Verizon 역시 위성방송 Direc TV와 영업 제휴(2004.1)를 체결하고 정액형 장거리 전화, DSL 및 위성방송 번들 상품 구매시 연 \$240 절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현재 Verizon은 케이블 TV 서비스를 위해 현재 텍사스주에서 광섬유 네트워크를 구축 중에 있다. 2005년 1/4분기에 시범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며, 상반기 안에 미국의 몇몇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TV 프로그램 서비스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이다.

### 나. 영 국

영국 지역 통신 사업자인 Kingston Communications는 세계 최초로 1999년에 기존의 통신망상에서 ADSL을 이용해 가입자들에게 상업적 광대역 텔레비전 서비스 KIT(Kingston Interactive Television)를 제공하였다.

2001년 10월 이후 Kingstone-upon-hill과 그 주변에 KIT(Kingston Interactive Television)라는 ADSL을 통한 텔레비전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였다. 이 서비스는 70개 채널을 포함하고 있고, 디지털 라디오방송, 컴퓨터를 통한 광대역 인터넷



으로 접속, 텔레비전을 통한 전자메일과 인터넷 접속,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도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TV포털을 이용한 전자프로그램가이드(EPG)
- 다수의 기본형, 프리미엄과 개별 가입 패키지를 포함한 60개 채널의 디지털 방송TV
- 헐리우드 스튜디오, BBC, 그리고 독립제작사의 콘텐츠를 가지고 페이퍼뷰와 가입 채널을 통해 가용할 수 있는 2,000개 이상의 영화를 VOD로 제공
- VOD 서버로부터 가상 방송 채널
- IP 기반의 방송 디지털 라디오
- 뉴스, 날씨, 스포츠, 오락 그리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상업 정보 목록 등을 포함한 지역성을 갖춘 쌍방향 콘텐츠를 제공하는 KIT 채널
- TV와 PC에 대한 무제한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
- TV와 PC 기반의 이메일
- 개선된 비선형 프로그래밍
- 게임 온 디맨드
- TV쇼핑 및 경매 서비스
- 모든 쌍방향 및 TV 서비스에 대한 월 기준의 단일 청구

Kingstone의 콘텐츠 조달은 경쟁자인 위성방송 서비스 Sky로부터 콘텐츠구매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입자 당 평균 수입과 새로운 텔레커뮤니케이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Kingstone은 방송, VOD, 그리고 광대역 인터넷을 결합하기 시작했다.

2004년 1/4분기에 ADSL을 통한 TV 수신 가구는 2.5% 감소해 총 8664가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364가구가 Kingstone Interactive에 가입해 있으며, 3,300가구가 Homechoice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다. 프랑스**

France Telecom과 Free는 2003년 12월부터 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해 방송을 제공하는 TV over DSL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4년 초에는 Neuf Telecom도 시장에 뛰어들었다.

프랑스 텔레콤(FT)은 현재 리옹과 파리에서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 20달러에서 콘텐츠 없이 기본적인 IPTV 전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랑스 최대의 통신 사업자인 France Telecom과 국영방송사 TF1은 2003년 12월부터 ADSL 브로드밴드 인터넷 접속을 통해 제공되는 TV 서비스, 'PSL' 제공하고 있다.

Free사는 Freebox 서비스 가입 하나로 인터넷, 전화, 텔레비전을 통합한 서비스를 공급한다는데 있다. 기존의 통신 오퍼레이터의 역할에서 채널 디스트리뷰터의 역할까지 더하면서 IPTV의 선두주자가 되고 있다. 처음에는 2003년 12월 TPSL 서비스로 불리는 ADSL을 통한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는 인터넷 서비스 없이 텔레비전에만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지금은 인터넷, 전화, 텔레비전을 통합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프랑스 전역을 커버하고 있다.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 화질은 케이블과 인터넷 방송에 비해 떨어진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TPS L은 2003년 12월 18일 프랑스 리옹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04년 3월 29일부터 파리와 근교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ADSL 모뎀, TPSL 부케,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TPSL은 모회사인 TPS의 위성방송 채널들의 혜택을 입고 있다. 일관성 있는 채널 편성, 영화 편당 요금 부과, 다국어 언어 등 앞선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Free사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 회사는 채널 디스트리뷰터 역할만 하고 기술적으로는 통신 오퍼레이터인 France T 1 com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Club Internet 역시 ADSL을 통해 TV 채널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ADSL TV 채널 공급량을 볼 때 다른 회사들의 경쟁상대가 되기는 힘들다.

또한 프랑스에서 통신사업자들이 통신망을 이용하여 TV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방송 콘텐츠 독점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France Telecom은 지상파 방송 사업자인 TF1, M6, 그리고 위성방송사업자인 TPS와 방송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맺게 됨으로써 Free는 이들 방송 사업자와 방송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맺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프랑스에서 IPTV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채널 공급 독

점이며, 또 하나가 고속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와 기술발전에 의해 이 서비스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인구의 절반 이상이 기존의 전화 모뎀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TV 서비스는 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부수적인 서비스라는 이미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특히 화질이 좋지 않다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

## 라. 일 본

일본은 ADSL을 이용한 TV프로그램의 공급을 검토하는 IPTV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2003년 3월 소프트뱅크(야후 재팬)의 BB케이블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브로드밴드를 시작하였다. 이후 KDDI가 브로드밴드 방송 사업에 참여하고 플라라 네트워크와 온라인TV가 NTT동일본을 대상으로 IPv6를 이용한 브로드밴드 영상 송신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브로드밴드 방송 서비스를 시작한 것에 비해 사업실적이 좋지 못한 편이다. 그 이유는 제공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고 분석한다. BB케이블의 서비스 제공 지역은 수도권뿐이며, KDDI는 광케이블망이 깔린 아파트 단지가 대상이므로 가입할 수 있는 사용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콘텐츠 부족도 사업부진의 한 원인으로 본다.

Yahoo!BB는 ADSL 회선을 이용하여 IPTV 서비스인 BBTB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3년 3월 본 방송을 실시하였으며, 다채널 방송(기본/유료 채널 서비스)과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BTB는 지역방송사의 신호를 전송하지 않는다.

Yahoo!BB는 ADSL을 통한 TV방송을 도쿄 23구, 카나가와현, 치바현, 사이타마현, 오사카부, 아이치현, 후쿠오카현 등 일본 전역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Yahoo! BB 가입자(소프트 뱅크가 제공하는 ADSL 서비스) 중 약 65%가 BBTB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기본채널 22개, 무료채널 2개, 추가채널 2개 등 총 26개 채널을 운영 중이며, 약 4,700개의 VOD 타이틀을 제공하고 있다.

KDDI는 일본의 이동전화 및 유선전화 사업자다. 2003년 KDDI는 시작한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히카리 플러스 서비스(Hikari Plus service)를 출범시켰다. 히카리 플러스 폰(Hikari Plus Phone) IP전화 서비스, 히카리 플러스 넷(Hikari Plus Net)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 히카리 플러스 TV(Hikari Plus TV) 다채널 방송과 VOD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KDDI가 최근 구축한 Content Delivery Network(비디오 전송을 위해 요구되는 서비스의 질 지원)에 기반해서 이루어진다. VoD 서비스는 헐리우드 영화부터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제공할 예정이며, 2004년 3월까지 약 2,000 편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었다. 또한 휴대전화 및 PC 이용자들도 히카리 플러스 TV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휴대전화와 PC의 장점을 이용해 다른 장비를 통한 TV 서비스 등록 및 이용도 가능하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플라라 네트워크(plala Networks)와 온라인TV는 2004년 7월 8일 NTT동일본의 서비스 지역을 대상으로 IPv6를 이용한 브로드밴드 영상 송신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마. 홍콩<sup>4)</sup>**

PCCW는 1999년에 설립된 홍콩 제 1의 종합통신사업자로 2004년 7월 말 기준 70만 명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2003년 9월 NOW Broad band-TV라는 브랜드로 IPTV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나우브로드밴드TV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한 결과, 현재 31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홍콩의 케이블 I-Cable는 가입자 65만 2천명을 확보하고 있고, 30만 가입자의 위성 방송사업자 Galaxy Satellite는 30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PCCW는 케이블과 위성 과 함께 유료 TV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홍콩 유료방송 시장 현황

유형	사업자	가입자수(점유율)
케이블	i-Cable	652,000(57%)
위성	Galaxy Satellite Broadcasting	300,000(25.2%)
통신	PCCW	205,000(17.8%)

출처: 한창완(2005).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며, 2004년 10개의 무료 채널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 34개 이상 채널을 알라 카르테(a la carte) 방식으로 제공 중이다. 셋

4) 권호영(2004). 앞의 책.

톱박스 설치 및 임대비는 무료다.

홍콩의 IPTV는 기존 브로드밴드 가입자에게 부가 서비스 개념으로 시작되었는데 서비스 출시 4개월 만에 신규 20만 5,000가입자를 확보하였고, 이 중 80%가 브로드밴드 가입자로 구성되어 있어 TV서비스 제공으로 APRU가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IPTV는 PCCW의 브로드밴드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PCCW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증가는 시장의 평균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2003년 8월에서 2004년 6월 사이에 시장의 평균 가입자 수 증가율은 14.6%인데 반해 PCCW의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증가율은 18.5%를 기록하였다.

〈표 14〉 나우 브로드밴드 TV 가입자 수 변화

	2003년 9월	2003년 12월	2004년 12월(목표)
가입자 수	58,000	205,000	480,000

출처: 권호영(2004)에서 재인용

〈표 15〉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및 TV 가입자 수 증가 추이

(단위: 천)

연도	2001	2002	2003	2004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402	559	703	753
나우 브로드밴드 TV가입자 수	-	-	205	316

출처: 권호영(2004) 재인용

또한 나우 브로드밴드TV는 고객 서비스의 최적화를 통해 가입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있다. 첫째로, 전체 가구 수의 95%를 점하고 있는 브로드밴드 가입자 기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둘째로, 콘텐츠를 차별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초기에는 채널이 23개였으나, 현재는 기술적으로 400개까지 가능하며 꾸준히 채널 수를 늘리고 있다. 현재 12개의 무료 채널과 infotainment, entertainment, life style, adult, sport 콘텐츠를 50여개 채널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NOW Broadband TV는 위성 방송사업자 Galaxy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였으며 콘텐츠 공급을 위해 PP와의 수익 배분 모델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PCCW는 Pay-TV 비즈니스 벤처에 천9백만 달러를 투자해 유료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로, 콘텐츠 보호와 안

전 보장에 주력하고 있다. 채널을 DVD 수준으로 스크램블 처리하고 있고, 양방향 기술이 적용되는데 제공 및 선택 프로그램을 해킹 가능성이 없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부모가 프로그램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3장 주요국의 디지털 방송 정책 유형화

## 제 3 장 주요국의 디지털 방송 정책 유형화

### 제 1 절 개 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통신방송융합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별 방송·통신 관련법 개정으로 융합시대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1996년), 이탈리아(1997년), 말레이시아(1998년)는 방송통신 단일법을 제정하였다. 영국과 프랑스는 통신법을 흡수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자통신법 제정하였다. 독일은 통신법, 방송법 이외의 제 3의 법을 제정하여 융합서비스를 관할하고 있다. 방송·통신 정책 기구와 규제 기구의 재편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국과 일본은 이미 통합기구가 출범하여 방송과 통신 정책 및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역시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기구가 분리되어 있다.

유럽연합은 새로운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한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켰다. 결국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방송규제 개선 권고안(2002년 3월)을 채택하였다. 유럽연합의 권고안은 모든 전자통신망과 전자통신서비스에 단일 규제체계를 적용하며 네트워크 및 매체 간 균형성의 원칙, 전송과 콘텐츠 규제의 분리, 공익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네트워크 관련 법체계 및 규제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핵심내용은 기존의 역무별 규제를 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 등 계층별 수평규제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전자통신망(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은 전자적 신호를 전자적으로 전달하는 전송 시스템과 부대설비를 의미, 전송 정보 유형과 무관하게 전기적 신호를 전송하는 모든 설비(광, 케이블을 포함한 유선, 무선, 위성)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전자통신서비스(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는 전자통신망 상에서 전기적 신호를 사업목적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로서 통신서비스와 콘텐츠 전송 및 제공서비스 그리고 방송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전송서비스(단, 편성권은 제외)를 지칭하고 있고, 전송 콘텐츠의 편집이나 편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자통신서비스에서 제외된다. 또한 네트워크에 대한 단일 규



제를 수행하는 규제기관은 국가별 행정체계나 법적의무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본다.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 전자통신망, 장비,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부터 기능적으로 분리되어야 하고, 규제기관이 국가소속인 경우 규제기능을 소유 또는 제어 등 사업기능으로부터 철저히 구조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유럽의 경우에는 경쟁법(competition law)으로부터 시장획정과 시장 지배력의 개념을 도입하여 통신방송 융합에 대비한 총체적으로 기술 중립적인 규제체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Marucus, 2002). 즉 네트워크에 관계없이, 모든 네트워크 인프라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이 있는 시장(relevant market)을 획정하고, 그 시장 안에서 시장지배력의 보유유무에 따라서 경쟁법(competition law and economics)을 적용시키게 된다. 결국 융합에 대비한 규제체계는 과거와 같이 같은 각각 분리된 네트워크에 서로 다른 규제체계를 적용하는 수직적 규제가 아니라 네트워크의 종류에 상관없이 수평적인 규제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표 16〉 분리규제 프레임워크하의 서비스 분류체계

분리단위	명칭	영역		규제틀
		통신	방송	
콘텐츠	콘텐츠	통신콘텐츠 (인터넷, 부가콘텐츠)	시청각 콘텐츠 (라디오, TV프로그램)	TVWF와 시청각 분야의 규제원칙
네트워크 (망/전송)	전자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통신, 케이블, 위성, 지상과 방송서비스 등의 전송부분		6 Directive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유선, 무선, 케이블, 위성, 인터넷 등 모든 네트워크 부문		

OECD 역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고려한 방송규제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 권고안 핵심내용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콘텐츠를 전송방식에 따라 상이한 규제를 부과해야 하는가의 여부로 귀결된다. 방송과 통신 영역이 수평적으로 융합된 개념의 규제를 받게 되면, 기술 및 서비스에 중립

적이고 전송과 콘텐츠가 분리된 형태의 규제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본다. 권고안 내 공정한 경쟁 환경 도모를 위한 해결방안으로는 모든 네트워크에 동등한 규제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경쟁원칙과 부문규제(sector-specific)를 준수, 인프라와 콘텐츠 접속 보장을 제시하였다. OECD는 규제기관의 통합에 있어서 규제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보다 명확해진 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국의 전통에 의해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권고사항들은 각국의 방송·통신 환경 및 정책과 규제 논리에 따라 반영되는 모습이 달리 나타난다.

## 제 2 절 주요국의 디지털 방송정책 및 규제

### 1. 미 국

#### 가. 법제도

미국은 1996년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개정으로 통신방송융합시대를 대비하였다.

1999년에 발표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FCC”(A New FCC for 21st Century)를 통해, 통신산업과 방송산업의 융합으로 야기되는 환경변화에 대응 하고 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하여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국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세부적 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정책기구 형성
  - 정보화 시대의 선구자 역할을 할 것
  - 조직을 재정비하여 융합에 적합한 구조를 갖출 것
  - 원활하고, 평면적이며 기능적인 조직을 만들 것
  - 기존 FCC 재직 인원의 경험과 지식을 유지·발전시킬 것
- 모든 통신·방송 시장에서의 자율 경쟁 장려
- 커뮤니케이션 혁명으로 인한 이익을 누릴 기회를 전 미국인에게 장려(보편적 서비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중과 주파수의 관리

이러한 FCC의 새로운 역할정립에서 나타난 미국의 디지털방송법제도의 기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디지털환경의 기술적인 변화를 법제도 속에 담아 그 기초 위에서 규제완화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소극적 규제방식으로 변화
- FCC는 특히 인터넷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이지만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다.
- FCC는 디지털방송 환경 하에서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기타다채널비디오서비스공급자(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s: MVPD)를 총괄하는 새로운 소유제한규칙 제정이 필요하다.
- 이는 디지털환경에서 방송미디어를 일일이 구분하는 것이 점점 어렵거나 의미가 없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법적 대응은 기본적으로 규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규제환경의 변화에는 규제대상이 변화된 경우와 규제를 하는 사회적인 환경이 변화된 경우가 있는데,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법적 대응은 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규제환경의 변화가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방송통신기술의 진보가 법제의 변화를 야기하는 주요원인임이 분명하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산업적 융합이 법제도적 대응 앞서 간다는 것이 방송·통신 융합으로 나타나는 정책변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하겠다.

#### 나. 규제 기구

미국의 방송규제 관련 기구로 FCC(Federal Communicatuib Commission)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최근 2002년 3월 케이블 서비스국과 대중 매체국이 통합되면서 미디어국이 탄생하였고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변화하는 미국 방송정책의 유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FCC는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다섯 부서로 구성된다. 보편적 전송사업국, 무선통신국, 미디어국, 민원정보국, 국제 업무국으로 분류되며 부서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된 업무는 방송국의 허가 및 재허가, 방송용 주파수의 배당 등이다. 그러나 연방커뮤니케이션 법 제 305조에 의해서 미국 정부가 소유·운영하는 국영 방송국에는 적용이 안 된다.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는 정부·군사기관의 방송국은 대통

령이 지정한 별도의 주파수를 이용한다. 이와 관련된 주파수 할당 업무는 상무성 산하의 국가통신정보행정청(National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 설치되어 있는 주파수 관리과에서 담당한다. 규칙을 신설하거나 개정시 방송 업계나 관계 단체에 그 취지를 주지시키고 해당안건에 관계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FCC 원안을 작성·공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 가운데 방송관련 업무는 주로 전기통신국과 미디어 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디어국은 텔레비전 방송국, 케이블 방송국, 그리고 라디오 방송국을 규제한다. 본국은 지역방송국의 면허, 채널 사용, 그리고 방송국 운영에 관한 방송전반의 면허권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방송면허를 위한 조건은 특정 방송서비스지역 안에서 전과간섭 없이 방송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미국의 통신관련 규제기관은 연방차원과 주 차원으로 분리되어 있다. 연방 차원에서는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그리고 주 차원에서는 각 주의 PUC(Public Utility Commission)가 통신정책의 수립과 규제의 시행을 담당한다. 그 밖에 통신규제와 관련된 기관으로는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DOC)의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와 ITA(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NARUC(National Association of Regulatory Utility Commissioners),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 국방부(Department of Defence: DOD),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DOS), USTR(US Trade Representative), IRAC(Interdepartment Radio Advisory Committee) 등이 있다. 여기에 의회, 법원, 그리고 행정부처내의 여러 기관들이 통신정책의 수립이나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시행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다.

연방차원의 규제기구인 FCC는 통신정책 관련 업무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규칙 및 규정의 제정, 무선통신사업자의 진입허가, 방송국 허가 및 운용 감독, 기술표준 설정 및 감독, 서비스 품질 감시, 요금규제, 상호접속조건 제정, 주파수 할당 및 조정, 번호계획 통제, 전기통신 관련 국제협상 지원 및 국제협약 이행의 책임, 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이 있다.

FCC의 기본적인고 고유한 권한으로는 특정산업에 대한 진입 및 요금에 대한 규제권한과 기술기준의 설정,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 등 기술관련 권한 등이 있다. 통신사업자의 진입허가에 관하여서는 통신사업 허가, 사업자간 인수·합병·겸업승

인 등을 하며, 이동전화나 무선호출에 대하여서는 FCC의 미국내 주파수배정권한을 근거로 진입을 규제하고 있다.

FCC는 통신사업자의 영업활동에 관한 규제도 관장하고 있는 데, 상호접속감독 등 공정경쟁제도를 수립 및 운용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감독하며, 통신사업자의 회계, 서류 등에 대한 정보조사를 비롯한 통제 권한, 통신사업자의 자산을 평가하고 경영실태를 조사하며 계약을 검토할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기술표준제정 및 통신장비의 승인 권한 역시 갖고 있다.

#### 다. 소유규제

미국의 미디어 소유규제는 지상파를 비롯하여 가장 약한 나라라고 볼 수 있다. 미디어 소유 관련 정책의 주요 흐름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7〉 미국의 주요 미디어 소유 관련 정책 변화

	주요정책법안	정책내용	비고
1934	통신법안 기초	AT&T 자연독점 허용	FCC의 “보편적 서비스” 추구
1982	수정동의판결(MFJ)	AT&T분리/7개의 지역전화 설립사 체제 전환	장거리 서비스 경쟁 허용
1984	케이블통신정책법제정	지역전화사업자의 케이블산업 겸영금지/관련업체 매각 금지	겸영 금지
1980년대	Open Sky Policy	통신 사업자에게 위성방송사업 진출허용	실패
1987/1991	MFJ 수정	지역 전화 정보 서비스 허용	지역전화, 장거리전화, 케이블TV 독점 탈피
1992	케이블TV소비자보호 및 경쟁법 제정	일부지역통신시장 경쟁도입 케이블TV산업의 보호정책 상당 부분 철회, 요금 인상 불허, 가격 상한선 설정, 단일사업자 소유제한	케이블TV새로운 규제와 경쟁체제 도입
1995	Fin-Syn 규칙 폐지 새 ‘방송통신법안’ 통과	지역전화, 장거리전화, 케이블TV 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 허용 규제 대폭 완화 방침 외국 자본의 자국 미디어 사업 투자 규제에 관한 기준 채택	주요 네트워크 M&A 증가, 커뮤니케이션 탈규제 목적, 위성 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해외자본의 투자증가전망, 겸업허용
1996	Telecommunication Act	사업자 간 진입 규제 완화	매체 간 경쟁과 산업 활성화

출처: 손창용 · 여현철(2003). 수정.

Telecommunication Act of 1996의 Section 202(h)에 따라 FCC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미디어 소유규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2003년 FCC에 의해 제기되었던 소유권 새 규칙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신문/방송 그리고 라디오/방송 교차소유 규정을 미디어 교차소유 제한 규정으로 대체
- 지역 텔레비전 복합 소유 조항의 수정
- 지역 라디오 시장에 대한 정의 수정을 통해 지역 라디오 소유 관련 규정 강화
- 전국 텔레비전 소유 제한의 점진적 수정
- 네트워크 복수소유 금지의 유지

이러한 규정들은 새롭고 포괄적인 전국적·지역적 규제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쟁·다양성, 로컬리즘의 활성화를 통해 공익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 전국 TV 겸영 규칙(National TV Multiple Ownership rule)

2003년 이전의 기존 TV 겸영 규칙에 의하면, 라디오에 대해서는 소유 제한을 폐지하고, TV의 경우 소유국 수 제한은 철폐하되, 시청자 도달률 35%로 상한선(national ownership cap)을 두었다. 즉, 하나의 네트워크가 직접 소유할 수 있는 방송사의 수(계열국, 직영국)가 전국 TV 보유 가구 대비 35% 미만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이 때 가구 수는 시청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 방송국들이 전파를 발사하여 도달하는 가구 수이기 때문에 실제 네트워크가 직접 소유할 수 있는 방송국 수는 30~40개 정도이다. 미국의 인구와 국토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러한 네트워크 소유 범위는 비교적 제한적인 특성을 띠는 것이라 볼 수 있다(정윤식, 2004).

FCC는 이러한 TV 도달 가구 수 기준을 45%까지 확대할 것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로 공동소유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DTV(Digital TV) 구축 비용의 절감, 지역 방송에 대한 투자 여력의 확대를 통한 지역성 보호 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2003년 6월 상원의 상무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이 같은 45% 상향 조정을 백지화하는 규제 원상 회복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백악관과 공화당은 2003년 11월, 소유 상한선을 39%로 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소유 규제 완화의 혼란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특히, 이러한 시청 점유 상한 규정을 연방법 차원으로 정하기로 함에 따라, FCC가 소유 상한에 대해 쉽게 변경하지 못할 전망이다(Media World Wide, 2004. 2).

○ 지역 TV 겸영 규칙(Local TV Multiple Ownership rule)

기존의 규칙에 의하면, TV 방송사는 특정 지역시장(DMA: Designed Market Area)에서 2개 이상의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었는데, 이때의 기준은 i) 방송사의 주파수가 중복되지 않을 경우<sup>5)</sup>, ii) 두 방송사 중 하나의 방송만이 시청률 상위 4위에 속할 경우, iii) 두 방송국 결합 이후 시장에 8개 이상의 독립적인 상업/비상업 방송사가 존재할 경우에만 그 소유를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었다. 이 중 특히 iii)의 조항에 대해 2002년 싱클레어 방송사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자, D.C. Circuit. Court는 이 조항의 '8 voice test'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이후 이 조항에 대한 법적 타당성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8'이란 숫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voice'에 대한 정의가 단지 TV 방송국에만 적용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며, 라디오-TV 겸영에서 신문이나 케이블도 voice로 인정했던 것과 관련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sup>6)</sup>.

2003년 개정 규칙에서는 TV 방송사가 5개 이상인 시장에서는 2개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단, 이 두 방송사 중 최대 하나의 방송사만이 시청률 상위 4위에 속할 경우로 한정했다. 즉, 시청률 상위 4위 내에 속한 방송사끼리의 결합은 금지함으로써, '관점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유지했다. 또, TV 방송사가 18개 이상인 시장에서는 3개의 방송사까지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장에 방송사 수가 몇 개인지는 상업방송사와 비상업방송사 모두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TV 방송사가 11개 이하인 시장에서는 시청률 상위 4위에 속하는 두 방송국이 합병을 추진할 경우를 대비하여 웨이버 과정을 택했다. 과연 개별적으로 있을 때보다 하나의 방송국으로 합쳐져 있을 때, 지역사회를 위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를 FCC가 사안별로 평가·결정한다는 것이다<sup>7)</sup>.

기존의 지역 TV 방송사 소유 규칙 완화의 근거는 다음과 같았다(FCC Immediate Release, 2000, May 30). 첫째, 현재의 시청자들은 TV 방송 이외의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뉴스와 정보를 얻고 있으므로, 다양성 또는 경쟁의 기준이 모호하

5) Grade B 지역이 겹치지 않을 때.

6) Sinclair Broadcasting Group v. FCC. F.3d 148 D.C. Cir. 2002.

7) 윤호진(2003). 미국FCC의 미디어 소유 제한 관련 새 규정, 『방송 동향과 분석』, 2003. 6. 15.

다. 둘째, 현재의 방송 시장은 지역 방송사들이 케이블 및 위성 TV서비스와 실질적인 경쟁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경쟁 촉진의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 셋째, 디지털 방송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방송사간 결합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이 필요하다.

반면 최근 개정된 2003년 지역TV 소유제한과 관련된 규정들은 기존의 규정들이 다양성이나 경쟁 촉진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보았다. 새 규정들은 지역 텔레비전 합병이 지역시장의 경쟁을 북돋우고 디지털텔레비전의 전환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면 이를 허용기로 했다. 궁극적으로 새 규정에 따르면, 지역시장에서 관점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4대 방송사간 합병은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 이중 네트워크 규칙(Dual Network rule)

기본적으로 미국은 네트워크들 간의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다. 주요 네트워크가 다른 네트워크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한 이중 네트워크 규칙(Dual Network Rule)은 1946년에 제정되어 55년 이상 지속되어 왔는데, 이 조항의 제정 취지는 독점적 목소리(voice) 방지하고 의견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4대 네트워크들 간의 결합을 허용할 경우 시장지배력 강화 등과 같은 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에, FCC가 이를 불허하여 온 것이다(동향과 분석, 2001. 4).

하지만 FCC는 이러한 이중 네트워크 규칙을 완화하여, 4대 네트워크와 신생 네트워크들 간의 결합은 허용하였다. 즉, 주요 4대 방송 네트워크인 ABC, CBS, NBC, Fox가 신생 네트워크인 WB, UPN를 소유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FCC는 이와 같은 규제 완화에 대해, 4대 네트워크와 그 이외의 네트워크간의 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성의 감소는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에 의해 상쇄될 수 있으며,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6년 71%에 이르던 주요 6개 네트워크의 주시청시간대 시청률이 2000년에는 58%로 떨어졌으며, 반대로, 약 84%의 가구가 위성이나 케이블방송을 통해 텔레비전을 시청함으로써, 위성방송과 케이블 TV가 기존의 지상파 네트워크의 실질적 경쟁자로 자리 잡았음을 제시하면서, 주요 네트워크들이 다양한 목소리의 확보라는 이유로 다른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신생 네트워크를 합병하지 못하는 것은 규제안이 제정되었던 당시와 전혀 다른 현재의 미디어 시장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FCC News Release, 2001,



April, 19). 이와 같은 FCC의 결정은 경제적 측면에서 지상파 네트워크 방송 산업이 변화되었으며, 따라서 이중 네트워크 소유금지법이 더 이상 수용자 복지를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려진 것(동향과 분석, 2001. 4)이라 볼 수 있다.

○ 지역 라디오 소유권 규칙(Local radio ownership rule)

FCC는 라디오 방송사에 대한 소유 제한을 계속 유지했다. 단, 기존의 규칙에서는 한 방송사가 시장에서 최대 8개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지만, 개정된 규칙에서는 지역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방송사의 소유 상한을 달리 하였다. FCC는 이러한 규정이 지역 라디오 방송국간의 경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독자적인 목소리를 지닌 다수의 라디오 방송국 운영을 보장하고 있는 현 규정을 통해 지역 라디오 소유업체 사이의 관점의 다양성 또한 확장될 수 있다고 보았다.

- 45개 이상의 라디오 방송사가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8개 방송사 소유가 가능하고, 8개 중 5개는 AM 또는 FM이어야 한다.
- 30~44개의 라디오 방송사가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7개 방송사 소유가 가능하고, 7개 중 4개는 AM 또는 FM이어야 한다.
- 15~29개의 라디오 방송사가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6개 방송사 소유가 가능하고, 6개 중 3개는 AM 또는 FM이어야 한다.
- 14개 이하의 라디오 방송사가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5개 방송사 소유가 가능하고 5개 중 3개는 AM 또는 FM이어야 한다.

○ 신문-TV 교차소유 규칙(Newspaper-TV cross-ownership rule)

기존 미국의 교차소유 정책은 라디오와 TV는 허용하되, 신문과 TV의 교차소유는 금지해왔다. 라디오와 TV의 경우, 하나의 상업 TV 방송사가 최대 7개 까지 라디오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교차소유 이후에도 최소 20개의 독립적인 미디어가 존재할 경우로 한정하였다. 여기서 독립적인 미디어라 함은 독립 TV와 라디오 방송사, 일간신문, 케이블TV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참고로, 미국은 동일 지역 내에 있는 케이블 방송사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의 겸영은 금지하지만, 지역이 다른 경우에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과 케이블 방송의 상호 겸

영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동일 지역 내에서의 매체간 상호 겸영 금지는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최현철, 김동규, 2001).

하지만 뉴스 공급원이 풍부한 거대 시장에서 이와 같은 신문-방송 간의 교차소유 금지는 논란을 야기시켰다. 현실적으로 교차소유 금지가 경쟁을 촉진시키는가에 관한 것과 신문과 TV의 교차 소유가 뉴스의 질이나 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에 대한 결론을 바탕으로 FCC는 다음과 같이 라디오, 신문, TV간의 교차소유를 통합하는 규칙 변경을 도모하였다(동향과 분석, 2003. 6).

- 3개 이하의 TV방송사가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TV, 라디오, 신문 간의 교차소유는 허용하지 않는다. 한 TV방송국이 현재 교차소유하고 있는 자산(라디오 방송국 또는 신문)의 활동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상기 금지조항에 대한 웨이버 권한을 얻을 수 있다.

- 4~8개 TV방송사가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다음 조항 중 하나에만 적용되는 경우 교차소유를 허용한다.

(㉠) 1개의 일간 신문 하나의 방송사 해당 지역시장의 라디오 소유제한의 50%까지(즉, 시장에서 라디오 소유제한이 6개라면 3개만 허용)

(㉡) 1개의 일간신문 지역시장의 라디오 소유제한까지(TV 방송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 2개의 TV 방송사 지역 시장의 라디오 소유제한까지(일간신문은 포함되지 않는다.)

- 9개 이상의 TV방송사가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신문-방송, 신문-라디오 간의 교차소유를 허용 한다.

이처럼 FCC는 미디어가 드물던 시대에 만들어진 미디어 소유 규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제기하면서, 신문과 방송의 교차 소유를 허용하는 정책을 결정하였으나, 2003년, 상원에서 이를 기각하면서, 신문과 방송의 교차 소유는 원래대로 금지되는 것으로 회귀되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찬반 논의는 미디어 소유 규제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찾는 데 핵심적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유익선, 2004).

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업규제에 대해서는 주내 통신과 주와 주사이의 통신, 국제

통신으로 분리되어, 주내 및 주간통신은 주 당국이, 국제통신에 대해서는 FCC가 규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과감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연방 수준에서 행하고, 주 차원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미국의 무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한도는 20%이나, 동 무선사업자의 지분을 소유하는 국내법인에 대한 투자(간접투자) 한도에는 정량적 규제가 없다. 다만, 간접투자의 경우 외국인이 국내법인에 대해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와 25% 이상 지분소유 인가를 받은 이우에도 지분을 추가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공익성 심사를 거쳐 FCC의 인가를 받도록 요구한다<sup>8)</sup>.

#### 라. 기타 규제

미국의 방송내용 규제는 프로그램 등급제를 의무화하고 V-chip의 장착을 강제화하고 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급제는 어린이프로그램에 대한 두 개의 등급(TV-Y, TV-Y7)과, 일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4개의 등급(TV-G, TV-PG, TV-14, TV-MA) 등 총 6개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령 기준의 등급제는 부모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체계로 바뀌게 되었다. S(Sexuality), V(Violence), L(Language), D(Dialogue) 등의 내용정보 표시를 덧붙여 제공하는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FCC가 이러한 등급제를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sup>9)</sup>.

내용에 대한 자율 규제의 분위기 속에서 2003년에 시청자 주도의 온라인 미디어 등급 시스템이 도입된 예도 있다. 이 평가 시스템은 언어, 폭력, 성적 내용, 성인용 주제 등등으로 범주를 나누어 미디어 프로그램을 평가하였다. 이 시스템은 TV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영화, 음반, 비디오게임 등의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실시하였다.

최근 부모들은 TV프로그램의 성·폭력 등의 묘사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으며, 2004년 9월에는 어린이 대상 디지털 프로그램 규정이 새롭게 마련되기도 하였다. FCC는 디지털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방송사들로 하여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주당 18시간까지 제공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규칙을 채택하였다<sup>10)</sup>. 또한 무기명 투표를 통해, FCC는 아날로그와

---

8) 통신법 310조.

9) 김정기(2003). 전환기의 방송정책. 한울아카데미.

디지털 방송사로 하여금 교육(educational)과 정보(informational)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E/Q' 심볼을 프로그램에 표시하도록 기존의 어린이 TV 규칙을 개정하였다.

〈표 18〉 개정된 어린이 TV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송사들은 교육적·정보적 프로그램을 표시하는 E/I 심볼을 프로그램에 표시해야 한다(이 규정은 부모와 시청자 단체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돕는다).</li><li>*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디지털 프로그램은 그것이 무료로 제공되든지 유료로 제공되든지 구분없이 1990년 어린이 TV법(Children's Television Act of 1990, CTA)에서 규정한 광고제한규칙이 똑같이 적용된다.</li></ul>
---

출처: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2004). 동향과 분석. 2004. 9. 30.

또한 어린이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웹사이트의 주소 및 링크와 관련, FCC는 케이블사업자, 아날로그 및 디지털 방송사들이 어린이 프로그램에 직접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다른 비상업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곤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웹사이트 주소를 보여주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그 외 음란 및 외설적인 내용을 방송하는 것은 연방법에 의해 규제된다. 이러한 규제는 연방법 18장 1464조(18 U.S.C. 1464)에 근거하며, 의회는 연방통신위원회에 이 규정을 집행하는 행정적인 책임을 주고 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이 규정에 기 반해 음란물을 내보낸 방송사에 경고를 주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방송사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음란한 화면뿐 아니라 외설적인 언어도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연방수정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며, 어느 시간에도 방송될 수 없다. 음란 및 외설에 대해서 세 가지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사회의 기준을 적용해 볼 때, 보통 사람이 방송내용이 전반적으로 외설적으로 흥미를 자극한다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

둘째, 방송내용이 외설적이고 불쾌감을 주는 식으로 법에서 규정한 성적인 행위

---

10) 홍선경(2004). 미국FCC 어린이 대상 디지털 프로그램 규정채택, 『방송 동향과 분석』, 2004. 9. 30.

를 묘사해야 한다.

셋째, 방송내용이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혹은 과학적 가치가 현저히 부족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최근 FCC는 이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고, 반면 시청자 단체를 중심으로 는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미국 통신법 제31조(무선통신 또는 에너지 전송의 허가)에는 주파수는 소유의 개념이 아닌 허가 유효기간 단위로 허가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307조(편의의 배분: 허가기간)에는 모든 무선국과 방송국은 허가의 유효기간이 8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통신법(1996년 개정)이 있고, 전파관련 규정도 통신사업자(Common Carrier)에 대한 사업규제에 관련된 규정 등과 병행하여 이 법률의 일부가 되고 있다. 즉, 동법 제Ⅲ장(제301조-제399조)은 『무선관련규정』으로 FCC의 전파관리 권한 및 그 범위, 무선국 면허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상의 규정에 의거 FCC는 FCC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이들의 법률 및 규칙이 FCC가 담당하는 전파감리의 기본 법령이 되고 있다.

이동전화용 무선국은 허가내용에 변경이 있을 시 FCC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서비스 지역의 확대, 주파수 대역의 변경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 PCS사업용 무선국에 대해서는 PCS사업자에게 Blanket License(포괄면허)를 부여하며, 무선통신서비스를 수익성, 공중망과의 상호접속, 공중의 이용가능성을 기준으로 CMRS(Commercial Mobile Radio Service)와 PMRS(Private Mobile Radio Service)로 구분하고, CMRS 면허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개별기지국에 대한 면허를 따로 요하지 않고, 일정한 경우 기지국의 위치 등 신고 의무가 있다.

미국의 사업용 무선국의 면허제도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서비스별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CMRS인 셀룰라 이동전화와 PCS에 대해서는 개별기지국별 면허가 아닌 시스템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 무선국에 대해서는 개별 무선국별로 면허를 부여받은 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통신법 제307조(a)에 따라 FCC는 무선국 면허 심사기준으로서 공공의 이익, 편의 및 필요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고, 다시 FCC 규칙은

각각의 무선업무의 해당부분 중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B)에 의거, 면허심사 기준에 있어서는 수요가 있는 한도내에서 무선업무의 공정, 효율적인 공평한 배분을 각 주 및 지역사회에 행할 수 있도록 면허, 주파수 등을 배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는데, 모든 무선국의 공통적인 심사기준은 각각 다음과 같다.

- 주파수 할당 가능성: 각각 업무에 분배되어, FCC 규칙에 정해진 주파수를 이용하는 것이어야 함
  - 신청형식 등: 신청서에 필요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수리 가능할 것. 규칙 기타의 조건에 합치할 것. 제출된 사실에 중대한 의문이 없을 것
  - 기술기준: FCC 규칙에 정해진 주파수 허용치, 전력허용치, 주파수대역폭, 공중선 등의 기술기준에 합치해야 함. 원칙적으로 FCC가 인증한 무선기기를 이용할 것
  - 통신내용: 규칙에 허용된 내용의 통신을 행하는 것이어야 함
  - 건설기한: 건설허가가 필요한 무선국에 대해서는 FCC가 정한 건설기한까지 설비를 건설해야 함
  - 환경의 영향: 환경(자연, 사적, 인체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주파수 배분은 경매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주파수경매제 근거 조항은 통신법 제 309조 (j) 항이며 ‘경쟁입찰의 이용(Use of Competitive Bidding)이다. FCC는 경쟁입찰 시스템의 이용을 통하여 자격있는 신청인에게 허가나 건조허가를 부여할 권한을 지니게 된다.

2003년 5월 FCC는 주파수 보유 사업자에게 임대 권한을 부여하고, 임대절차를 간소화하였다. 2000년 11월 Policy Statement와 Spectrum Policy Task Force의 권고에 따라 2차 시장 활성화의 목적으로 일정조건이 갖추어지면 FCC의 사전 승인 없이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입찰을 통하지 않고도 주파수를 획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파수 이용에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지상파 방송국은 새로운 방송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우선적으로 건설허가(Construction Permit)을 신청해야 한다. 건설허가를 소유한 자는 송신기와 안테나 성능이 만족할 만한 것으로 입증된 후에 방송에 대한 정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건설허가는 건설허가 소유자에게 방송국을 건설하고 시험방송을

하기 위한 제한된 시간을 허용한다. 보통 TV의 경우 24개월, 라디오의 경우 18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 그런 다음 건설허가 소유자는 기술적 테스트 기록을 자료로 만들어 정규 허가를 신청한다. 방송국 허가는 현재 최대 8년까지 부여되며, FCC는 전체 방송허가의 98% 이상을 아무런 조건없이 갱신해주고 있다.

케이블 지역사업권은 허가당국(지역 혹은 주 당국)이 그 지역내에서 케이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케이블 시스템의 허가조건을 기술한 조례나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 입찰자들은 지역사업권 허가당국이 요구한 제안서 양식에 의거, 제안서를 작성한다. 프랜차이즈 허가권자들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입찰자에게만 지역사업권을 허가하지만, 복수 허가도 가능하다. 지역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역의 허가당국은 경쟁적 지역사업권 허가를 부당한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대다수의 케이블 시스템들이 지역 독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당국은 기존의 케이블 사업권자가 공익이나 기타 다른 기준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도 허가를 갱신해줄 수 있다. 지역당국이 기존의 사업자에게 허가갱신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케이블 시스템 운영자의 행위와 관련하여 공익 봉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법에서 요구하고 있다.

통신사업자의 요금규제에 대하여 FCC는 접속료 심사 및 사업자가 제출한 요금 내용의 합법성에 관한 심리를 담당한다. 그리고 효력발생 5개월 이내에 요금의 시행을 보류할 권한을 갖고 있다.

미국은 일부 대역에 대해서는 지정단계에서 경매방식을 이용하여 사용자 가격을 부과하고 있으며, 지정후 사용단계에서는 FCC의 관리서비스를 제공받는 모든 영리사용자들에게 사용자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 1986년부터는 면허신청에 대한 행정처리비용충당을 위한 심사수수료(Application Fee)제도만이 도입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4 회계연도부터 전파관리수수료 성격의 규제수수료(Regulatory Fee)가 도입되어 FCC 규제업무관련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고 있다.

기존의 심사수수료와 함께 규제수수료는 FCC의 규제업무 관련 관리비용에 충당되고 FCC의 지출과는 무관하게 징수하여 일반회계에 편성된다.

한편, FCC는 정부사용자, 비영리 무선국, 비상업적 교육방송국, 아마추어 무선국 및 소방서와 같은 공공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등을 규제수수료(관리수수료)의 면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규제수수료는 부과대상 그룹별 산정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민간무선서비스, 대중매체서비스, 일반통신사업자 및 케이블 서비스사업자 그룹별로 산정원칙을 정하여 규제수수료가 부과된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방송과 통신의 단일법 체제를 유지해 오면서 새로운 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서비스와 정보서비스의 분리에 입각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방송의 경우 케이블TV에서 시청자의 선택을 위한 양방향 서비스의 존재를 명시함으로써 데이터 방송, VOD 등의 제공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다.

또한 IPTV와 같은 새로운 융합 서비스는 방송 사업 면허 등에 대한 기존 규제의 적용을 유보함으로써 융합 서비스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sup>11)</sup>.

## 2. 영 국

### 가. 법제도

영국은 기존에 통신법과 방송법이 분리되어 있는 이원적 법체계를 갖고 있었다. 통신법은 1984년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및 1949년 무선통신법(Wireless Telegraphy Act)이 기본법령이다. 반면 방송법은 1990년 이후 단일법 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지난 1996년에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 차례 개정이 있었다<sup>12)</sup>. 이 법에서는 디지털방송 서비스 사업자의 허가 체계를 규정하고 일반 방송프로그램의 전송 이외에 여유 대역을 활용한 “디지털 부가서비스(digital additional service)”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양방향 방송서비스 등의 제공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이상식, 2003).

2003년 7월에 제정된 커뮤니케이션 2003은 통합규제기구인 OFCOM의 구성, 미디어산업의 각종 규제 단순화(이종매체간 교차소유, 비유럽 외국자본의 투자, 라디오 주파수 거래 허용 등)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여 총 6장 411조와 schedule 19조로 구성되어 있다(OFCOM 2004). 1장에서는 OFCOM의 구성 및 기능을 설명하

---

11) 윤석민(2005). IPTV의 국내외 도입 현황과 정책상의 쟁점들, IP미디어 신상품의 성공적 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 연구. 한국정보법학회.

12) 임동민(2004) 영국 Communication Act 2003의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관련 법령 분석, 《정보통신정책》, 제 16권 3호.



고 있고, 2장에서는 모든 전자통신망(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 전자통신서비스(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 그리고 관련설비(associated facility)에 대해 단일 규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있으며, TV, 라디오, 그리고 콘텐츠의 규제에 관한 사항은 제 3장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다.

개정된 법의 내용을 보면, 모든 서비스를 전자통신서비스, 콘텐츠 서비스(Content Service), 그리고 방송서비스(Broadcasting Service)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통신서비스(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는 전자통신망<sup>13)</sup>을 이용하여 신호전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제 2장 제 32조 제 2항)를 지칭하고, 콘텐츠 서비스는 전자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신호로 구성된 자료의 제공 또는 이러한 자료의 편집서비스(제 2장 제 32조 제 7항)를 의미한다. 전자통신서비스의 개념이 정의된 제 2장에서 주목할 점을 기존의 방송과 통신으로 나뉘어져 있던 법령이 망과 콘텐츠 차원의 새로운 분류방식으로 수정되었다는 것이다. 즉, 제공되는 콘텐츠의 종류에 상관없이 콘텐츠를 전송하는 모든 네트워크를 전자통신망이라는 단일 개념에 포함시키고,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별도로 분리하여 규제하는 것이다.

한편 제 3장에서는 방송서비스를 ‘영국내 불특정다수를 위한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 송신서비스’로 정의하면서 방송서비스의 개념을 별도로 구분해 놓고 있다. 또한 방송서비스를 공영방송서비스, 독립TV 서비스, 그리고 라디오서비스의 형태로 나누어서 정의하고 있다. BBC를 포함한 공영방송서비스는 OFCOM이 1996년에 제정된 법과 커뮤니케이션법 2003에 새롭게 추가된 조항들을 적절히 조화하면서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OFCOM이 BBC에 대하여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제 3장에서 주목할 점은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지는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별도로 방송서비스로 분류해 놓고, 방송서비스의 전송관련 부분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즉 내용규제에 관한 조항을 기존의 법에 그대로 의존하면서 방송서비스의 전송부분에 관한 조항들을 새롭게 추

---

13) 전자통신망은 전기적, 자기적 또는 전자기적 에너지를 이용하여 신호를 전송하는 시스템(제 32조 1항) 혹은 그와 같은 시스템을 제공하거나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신호의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 신호워 usghks 또는 라우팅에 이용되는 장비, 소프트웨어와 저장된 데이터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가시켰다는 점이다. 특히 제 3장에서는 독립 TV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세밀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독립TV 서비스를 1그룹 5종, 2그룹 2종 서비스로 각각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1그룹은 텔레비전 방송서비스(Television Broadcasting Service), 제한된 텔레비전 서비스(Restricted Television Service), 부가적인 텔레비전 서비스(Additional Television Service), 텔레비전 면허 가능한 콘텐츠 서비스(Television Licensable Content Service), 디지털 텔레비전 프로그램 서비스(Digital Television Programme Service)로 구성되어 있고, 2그룹은 부가적인 디지털 텔레비전 서비스(Digital Additional Television Service)와 텔레비전 다중송신 서비스(Television Multiplex Service)로 구성되어 있다. 1그룹과 2그룹의 구분은 콘텐츠(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영역이 결합되어 있고, 2영역에 속한 서비스들은 전송 기능만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Communication Act 2003은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대응하여 통신법과 방송법을 단일화하였으며, 망과 서비스로 분류하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적용함으로써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국에서 무선통신과 관련된 기본법률은 The Wireless Telegraphy Act 1949, 1967, 1998 및 The Telecommunications Act 1984, The Broadcasting Act 1990 등이다. 이러한 법률 중 무선국의 허가와 관련된 기본 법률은 1949년 무선전신법(The Wireless Telegraphy Act 1949)으로 제1호에서 무선국을 설립하고 무선 설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률은 무선전신분야에 필요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영국과 인접 영해 및 영해 외부의 특정지역에 있는 정부의 법규에 의하여 규제되는 무선국과 무선설비, 영국영해에 있지 않으나 영국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의 무선국과 무선설비에 적용된다.

#### 나. 규제 기구

기존의 영역위주 규제를 지향하던 영국정부의 통신·방송산업의 규제체제는 사업자 상호간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전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수평적 규제 방안으로의 전환을 모색하여 새로운 법제 마련하고 디지털방송정책을 조율한다.

이처럼 방송 통신 영역 규제 기구들에 대한 통합 요구가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DTI(통상산업부), DCMS(문화매체스포츠부)는 규제 방식 변화 필요성에 대해 검

토하였다. 그 방향은 크게 첫째, 5개 규제기관과 2개 정부부처의 기능이 서로 중첩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의 문제 둘째, 공정성, 예측가능성의 확대에 모아졌는데, 이를 규제기구나 정책기구의 단일화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기존 기구들을 그대로 존속시키되 공동협의체계를 통한 긴밀한 공조관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2000년 12월 <A New Future for Communication>이라는 백서(white paper)를 통해 조율되기 이르렀다. 이 백서는 DTI와 DCMS가 공동 작성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1) 단순화(simplification), 2) 자유화 및 경쟁의 확대, 3)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로 귀결된다. 특히, 새로운 서비스가 출현할 때 그것을 어떤 규제기구가 권한 행사를 담당할 것인지, 복수의 규제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규제기구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짓게 된다.

결국, 이 백서를 토대로 2003년 Communication Act가 제정되고, 이에 따라 OFCOM이 구성되어, 기존 5개 규제 기관의 전권을 이양 받았다.

<표 19> 영국 규제 기구의 변화

기존 규제 기구 틀	새로운 규제 기구 틀
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 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OfTel Radio Authority Radiocommunications Agency	OFCOM
BBC Board of Governors British Board of Film Classification Office of Fair Trading Sianel Pedwar Cymru(S4C)	BBC Board of Governors* British Board of Film Classification Office of Fair Trading Sianel Pedwar Cymru(S4C)*

\*은 업무 내용의 변화. 일부 Ofcom으로 이관

영국의 통합규제기관인 OFCOM은 2003년 12월 29일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기존의 통신위원회(OFTTEL), 독립텔레비전위원회(ITC), 방송기준위원회(BSC), 무선통신국(RA), 라디오위원회(RAu) 등 5개 기관의 기능을 통합하였다. OFCOM은 거

대한 고직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부문의 조직구조와 기존 규제기구의 성격을 적절하게 조화를 시킨 형태이다. 그 외 다른 연관 정부부처와 EU 및 다른 국제 협력 기구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

OFCOM은 구체적인 집행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위원장(chairman)과 집행/비집행 이사진으로 구성된 이사회(Ofcom Board)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OFCOM 이사회는 총 9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은 비집행 이사(non-executive members) 이고, 나머지 3인은 집행 이사(executive members)이다.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비집행 이사는 통상산업부(DTI) 장관과 문화매체스포츠부사(chief executive)를 선발하고, 선발된 집행직 대표이사가 나머지 2명의 집행직 이사들을 임명함으로써<sup>14)</sup>, OFCOM의 독립성 및 규제의 중립성을 추구할 수 있다.

OFCOM의 규제 실무를 담당하는 정책집행부(Policy Executive)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정책이슈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데, 콘텐츠위원회(Ofcom content board)/소비자위원단(Consumer Panel)/기타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s) 등과 연락하면서, 전략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담당하고 있다. 정책집행부는 전략 및 시장개발(Strategic & market development) 그룹, 경쟁 및 시장(competition & market) 그룹, 콘텐츠 및 표준(content & standards)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쟁 이슈와 콘텐츠 이슈가 상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경쟁 및 시장’ 그룹과 ‘콘텐츠 및 표준’ 그룹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수장이 내부적으로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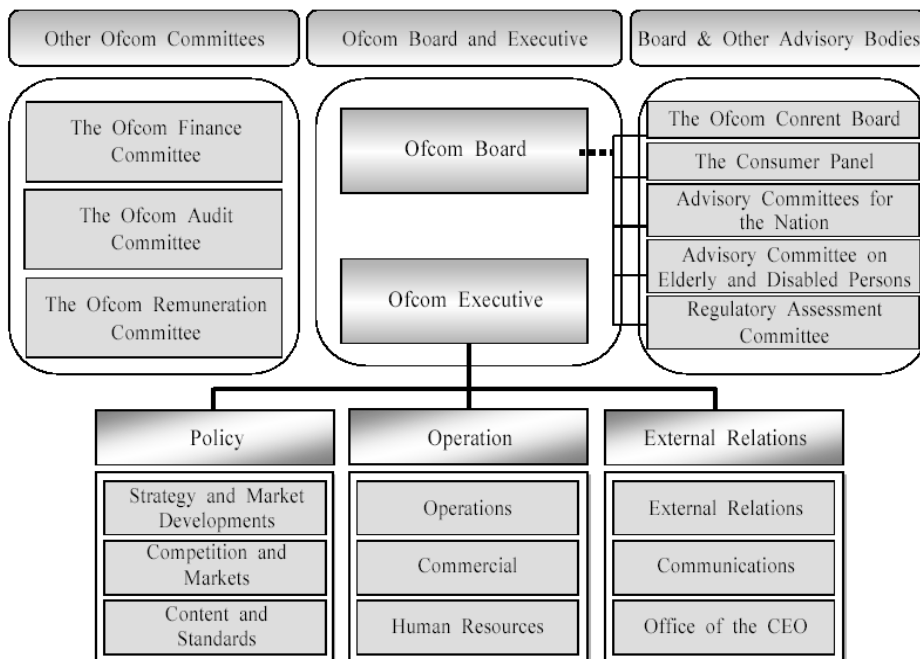
한편 이사회가 콘텐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콘텐츠 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게 되는데, 콘텐츠 위원회는 이사회가 결정하지 않는 콘텐츠 관련 모든 이슈들에 대하여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콘텐츠 위원회의 구체적인 임무는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규제(negative content regulation)fhjtj 내용의 유해성과 공격성, 정확성과 공정성,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에 관한 문제를 규제한다. 둘째, 독립방송제작, 지역방송제작, 유럽/자국 프로그램

---

14) 집행직 이사 2인중, 1명은 정책집행부(Policy)의 전략 및 시장개발 부의 수장이 되고, 나머지 1명은 경쟁 및 시장과 콘텐츠 및 표준 부의 수장이 된다.

제작물 등에 관한 편성쿼터의 유지 여부를 담당하고, 마지막으로 ITV, Channel 4 and Five 등 공공 방송에 관한 규제를 관할하고 있다. 그 밖에 미디어 교육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사회에게 자문을 해 주고 있다.

[그림 1] OFCOM의 조직도



자료: 김원식, KISDI 내부자료

OFCOM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수장은 정부에서 임명하지만, 그 외의 조직 내부 구성이나 예산 등에 있어서는 완전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다. 조직의 구성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조직의 형태는 공사(Public Corporation)라고 볼 수 있다. 예산은 피규제자의 요금(fee, charge)으로 충당하되, 의회에 보고 절차를 밟는다.

#### 다. 소유규제

영국의 1990년 Communication Act에서는 미디어 교차 소유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Dolye, 2002).

- 전국 일간지의 소유주는 ITV나 C5 중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다.

- 신문과 케이블 또는 신문과 해외 위성방송간의 교차 소유는 제한하지 않는다.
- 지상파 방송으로 다각화하고자 하는 전국 일간지의 소유 한도는 최초 20%, 이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면허 재투자는 최고 5%로 제한한다.
- 지역 신문 소유주 및 라디오 소유주와 동일 지역의 지역 텔레비전 방송을 서로 소유할 수 없다.
- Peacock 보고서에 의거, 텔레비전 방송,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사 간의 수직적 분할을 권장한다. 지배적 지상파 방송사는 25%이상의 독립 제작사 쿼터를 두도록 한다.
- 텔레비전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 소유 한도는 15%로 제한한다.

1995년 영국 문화부는 미디어 소유 규제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틀을 녹색(Green Paper)로 제시하였다. 정부의 제안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복잡한 미디어 소유 제도를 철폐하고, 이를 영국 전체 미디어 시장에서 한 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새로운 측정 방식으로 대체하고자 하였다. 단기적으로 시행할 것은, 상업 라디오 면허 소유 규제의 완화, 프로그램 제작사와 방송사 간 교차 소유 상한선 상향 조정, 신문과 방송 관련 미디어 겸영 규제 완화 등이 주요 골자였다. 이러한 녹색의 제안은 미디어 기업과 정치 당국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Doyle, 2002). 녹색의 제안을 바탕으로 1996년의 방송법은 텔레비전의 소유 규제 완화와 방송과 신문의 교차 소유 규제 완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송방식이나 보유 면허 수와 관계없이 모든 방송사에게 동종미디어 소유 상한선을 적용하여, 텔레비전 소유 상한선은 전체 시청자 점유율 15%로 제한한다.
- 동일 지역에서는 두 개의 ITV를 한 운영자가 보유할 수 없다.
- 신문, 라디오, 지상파 텔레비전의 지분 소유 제한을 철회하되, 한 사업자는 라디오 부문의 15%(BBC 시청자 제외), 텔레비전 부문 15%, 전국 일간 신문 발행부수의 20%까지 보유할 수 있다.
- 교차 미디어 소유를 상당한 수준까지 허가함과 동시에 바람직하지 못한 합병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는 임의 권한을 규제자에게 부여하는 공익평가(public interest test)방식을 도입한다. 즉, 신문과 지상파 텔레비전 또는 신문과 라디오 방송 간의 합병이나 인수

경우, 해당 방송 감독 기관은 다원성과 다양성을 참작하여 공익 평가를 실시하고, 합병의 결과로 나타날 경제적 혜택과 신문과 방송 시장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도록 한다.

한편, 영국의 미디어 정책은 2000년 12월 “A New Future for Communication”이라는 백서(white paper)를 통해 다시 한번 조율된다. 백서는 커뮤니케이션 시장에서의 수직적 집중을 특수한 위협으로 간주하면서도, 콘텐츠 제작자와 배급 네트워크간의 수직적 통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는 않고 있으며, 텔레비전 산업의 시장 점유율 15% 상한선을 폐지하도록 제안하는 등, 영국 상업 방송사의 소유 합병에 대한 논의를 가져왔다. 이러한 백서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2003년 Communication Act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비EU 국가 자본의 방송국 참여를 허가하였다. 즉, 비유럽방송국, 광고회사, 지역행정당국도 방송허가를 받을 수 있다.
- 민간방송국간의 무제한 합병 허용. 즉, 종래 하나의 방송사업자가 전체 방송시장의 15%까지 소유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하나의 방송사업자가 Ch3와 Ch5 전체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교조직도 지상파 TV 사업을 제외한 일부 방송사업<sup>15)</sup>에 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조직의 방송진입은 종전대로 배제된다.
- Ch3와 Ch5, 그리고 Ch3 방송국간의 합병 제한은 없다.
- 전국적 차원에서 신문과 Ch3와의 겸영배제 원칙은 유지되지만, Ch5는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sup>16)</sup> 지역적 차원에서는 지역 Ch3를 소유한 방송사업자는 지역/ 지방 신문 시장의 20% 까지 소유할 수 있다.
- 신문은 라디오 시장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장일, 2002).

첫째, 비EU 국가에 의한 미디어 소유 제한에 관한 규정을 없애면서, 특히 미국

---

15) local digital sound programme licences, national digital sound programme licences, TV restricted service licences, digital programme service licences, digital additional service licences

16) 이는 이미 신문시장의 20% 정도를 소유하고 위성방송 (BSkyB)의 대주주인 루퍼트 머독의 뉴스 코퍼레이션 사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업이 영국의 주요 지상파 채널인 ITV나 Ch5등을 매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미국은 영국 기업의 미국 미디어에 대한 진입로를 봉쇄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둘째, 영국에서 이미 주요 신문을 소유하고 있는 Murdoch이 신문의 방송사 소유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지상파 상업 텔레비전 채널(ch5)을 사들여 디지털 채널인 BskyB와의 시너지 효과를 노릴 가능성이 있다. 머독은 현재 The Sun과 The Times 등 두 개의 주간지와 두 개의 일요판 신문 The News of the World와 The Sunday Times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영국 신문 시장의 약 20% 정도에 해당된다.

셋째, ITV 그룹이 더 이상 텔레비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텔레비전 광고 시장이 라디오 및 인터넷 광고 시장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정책적 판단이 존재한다고 볼 때, 향후 ITV 방송사간의 대형 합병이 가속화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넷째, 상업 라디오 업체들은 지역별 라디오 시장의 점유율 55%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운영비 절감을 위한 합병과 인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다.

정리하면 방송을 포함하여 커뮤니케이션 부문 전반에 적용되고 있는 1998년 경쟁법(Competition Act)와 2002년 기업법(Enterprise Act)의 권한을 Ofcom이 동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커뮤니케이션 규제보다는 경쟁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미디어 소유규제 완화 조항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 **라. 기타 규제**

영국의 방송면허권 부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지상파 방송은 상업방송국의 경우 1996년 방송법에 근거해 경쟁입찰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편성에 관한 심사에 응해야 하는데, 뉴스와 교양프로그램의 비율, 지역프로그램의 제작비율, 독립프로덕션의 외주제작 비율 25% 준수해야 하고, 다양한 취향과 이해의 반영해야 한다. 또한 방송사업신청자의 이종매체소유가 20% 미만이어야 한다. 입찰가격의 최고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OFCOM 출범 이전에는 독립텔레비전 위원회(ITC)가 채널 3, 4, 5에게 면허를 부여하였으나, 현재는 OFCOM이 담당하고 있다.

케이블 사업자 및 시스템 면허체계를 살펴보면, 케이블 TV 서비스 허가는 두 가



지로 나누어져 있었다. 케이블 TV 사업자(SO)는 ITC로부터 지역전송서비스 허가 와 통상산업부(DTI)<sup>17)</sup>로부터 기술관련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현재는 OFCOM이 담당하고 있다(DTI는 케이블 TV의 하드웨어와 같은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 하고, 케이블 시스템의 면허를 발급함).

1990년과 1996년 방송법에 근거하고 있는 ITC가 케이블과 위성을 포함한 상업 TV서비스에 면허를 부여하고 규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Radio Authority는 BBC 라디오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독립 라디오 서비스에 면허를 부여하고 규제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헌법기관이다. 1990년과 1996년 방송법에 근거 하여 그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주파수 계획, 면허인가, 라디오 프로그램과 광고 규제, 라디오 소유시스템 감독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현재는 OFCOM이 이를 담당하며 텔레커뮤니케이션 부문에 대한 인허가 시스템이 새로운 전자커뮤니케이 션 네트워크·서비스 규제 제도로 대체될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서비 스를 다루고 있는 조항들 대부분은 2002년 유럽에서 합의된 4가지 지침(EC Di- rectives)을 이행하고 있다. 이 지침은 도입된 새로운 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 별히 탈규제적인 특징은 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면허를 없애는 대신 ‘일반위임(general authorization)’ 조항을 마련하고, 특수 사업자에 대한 의무 조항을 명시하였다는 점이다.

허가의 유형으로는 개별적인 무선국허가와 종별허가로 구분하고 있다. 개별허가 (Individual Licensing)의 경우, 영국은 무선국 허가지 각 무선국에 대하여 개별적 인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선국 허가의 핵심적인 대상이 되는 개별적 인 무선허가는 현재 40여개로 구분된다.

기존의 무선국에 대한 개별허가의 구분은 1998년부터 세가지 그룹으로 변경되었 는데, 미리 설정된 주파수 혹은 송신출력과 같이 표준화된 사용조건이 있는 경우 에 하는 사전일괄허가(Pre-packaged Licences)와 신청자가 범국가적 혹은 특정 지역에 고유한 채널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이 사업에 고유한 선결 요구가 있는 경 우에 하는 고객주문허가(Customised Licences), 그리고 경쟁, 혹은 무선 통신청과 의 세부적인 협상에 의하여 부여되며, 특정한 주파수블록, 미리 결정된 채널 등에

---

17) DTI는 케이블TV의 하드웨어와 같은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케이블 시스템의 면허를 발급한다.

대해 허가가 선행되기 전에 사전에 협의하는 스펙트럼허가(Spectrum Licences)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세 그룹으로 무선국 허가유형을 변경하는 주된 이유는 허가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종별허가(Class Licence)는 해당 그룹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으로 개별 사업자는 무선설비의 사용에 있어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통신은 1984년 통신법에 의거 통신사업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주파수와 관련된 무선통신면허는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사업권 및 주파수이용권이 분리된 형태를 갖추고 있다. 통신사업자가 무선통신사업을 원하는 경우 이를 위한 설비 운용 및 면허를 위해 1949년 및 1998년 무선전신법(Wireless Telegraphy Act)에 따라 DTI의 위임을 받은 RA(Radiocommunications Agency)로부터 무선면허(Wireless Telegraphy License)를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1998년 무선전신법 Chapter 6의 Section 1은 이러한 무선통신면허가 방송면허와는 구별됨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주파수경매와 관련하여 주파수경매제 근거조항으로 1998년 무선전신법(Wireless Telegraphy Act) Chapter 6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경매방식을 실시하면서 경매와 심사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

Wireless Telegraphy Act 1998의 section 4에 따르면, 장관(the Secretary of State)은 면허취득자의 동의나 요청에 의하지 않는한 면허를 취소 및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8개 예외조항을 두어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면허(3G 주파수이용권)는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면허 권리의 전환과 관련해서는 면허취득자는 paragraphs 1에 기록된 주소나 취득자의 명세 등에 대한 내용을 장관(the Secretary of State)에게 사전에 또는 즉각 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무선전신법상 면허의 유효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20~22년간 이다<sup>18)</sup>(3G 면허).

영국의 전파사용료는 전파관리수수료의 성격을 띄고 있는 면허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관리비용 및 R&D에 충당된다.

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전파스펙트럼의 사용에 대한 경제적 부과로부터의 수입을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있으나 영국은 RA의 관리업무를 위한 특별회계를 편

---

18) 박종훈(2001). 앞의 책.

성하고 있으며, 적자나 흑자시에는 국고로부터 보조를 받거나 귀속된다.

영국의 경우 소출력 무선기기의 사용자에게는 전파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정부기관을 포함한 모든 전파통신기기를 사용하는 면허자는 면허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파사용료의 산정 및 부과는 이용형태와 전파설비의 설치장소 등을 고려하여 무선국을 크게 9개 그룹(항공국, 방송서비스, 고정서비스, 아마추어, 육상이동, 해상통신, 무선호출, 위성서비스 및 기타 면허)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별 관리비용이 충당될 수 있도록 연간 정액수수료가 산정, 부과되고 있다.

영국에서 콘텐츠 관련 규제는 이사회, 콘텐츠 및 표준 그룹, 콘텐츠 위원회 세 부문이 담당하는데, 모든 콘텐츠 이슈와 관련된 정책 결정시 콘텐츠 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콘텐츠 위원회는 경쟁 관점에서 소홀해지기 쉬운 공익성 즉, 시청자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는데 주력한다. 콘텐츠 위원회는 다음의 영역을 주로 관할한다.

- 콘텐츠 내용 규제: 폭력, 유해, 정확성, 불편부당성, 사생활보호 등의 이슈에 대한 네가티브 규제
- 콘텐츠 제작 총량 규제: 독립 TV사 제작물, 지역별 제작물, 영국 관련 제작물에 대한 쿼터 설정
- 공영 방송 규제: ITV, Channel 4, Channel 5

현재 신규서비스인 ADSL 텔레비전은 1990년 방송법이 적용되어 케이블 방송서비스와 같은 방식이 적용되었다. 망 사용자는 허가가 필요 없지만, 서비스 편성자로서의 책임을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ITC의 규제 코드가 적용된다. 프로그램 코드나 주요한 사건의 목록, 광고에 관한 규칙, 경쟁 등등이 이에 해당된다.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새로운 법이 2003년 12월에 발표된 이후로 미디어에 대한 국가비서실에 의해 승인된 행동강령에 따라 자동 규제된다<sup>19)</sup>.

---

19) 권호영(2005). IPTV 동향과 전략. KBI

### 3. 독 일

#### 가. 법 제도

독일은 연방차원에서 통신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방송에 관한 법률제정권은 전적으로 주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최근 통신방송융합에 대응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협력해서 융합서비스를 규제하기 위한 제 3의 법을 제정하였다는 것이 특이할 만한 점이다. 이 새로운 법은 1997년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법과 미디어서비스국가협약으로 경계영역적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단일법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여겨 제정된 것이다.

정보 및 통신서비스 법률의 제 1조는 텔레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해 놓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텔레서비스란 개인 커뮤니케이션 범위내에서 행해지는 서비스의 제공(텔레뱅킹, 원격 작업, 원격 의료, 원격 학습 등), 편집 의도가 국민 일반의 의견 형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보 혹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제공, 데이터서비스(교통, 날씨, 환경, 증권 등), 개별적 광고물(단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편집 처리된 문자다중방송과 전자신문의 문자서비스는 예외), 다른 네트워크나 인터넷 이용을 위한 제공물(Navigation 지원 등), 텔레게임의 사용을 위한 제공, 상호교류적인 접속과 직접적인 주문 가능성을 포함하는 전자화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미디어서비스국가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미디어서비스란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의 제공과 이용, 공개적인 의견형성에 영향력이 거의 없는 서비스, TV구매를 위해서 공중에게 직접 제공되는 분배서비스, 전자적 저장 장소로부터 요구에 의해 중계되는 문자, 음성, 영상물의 주문형 서비스(단 개별적 서비스 교환 및 순수한 데이터 교환을 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는 제외) 등을 포함하고 있다. 텔레서비스와 미디어서비스의 구분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텔레서비스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연방정부에 의해 마련된 정보서비스 및 통신서비스 법률에 의하여, 미디어 서비스는 주정부에 의해 마련된 미디어서비스국가협약에 의하여 각각 규제된다.

〈표 20〉 독일의 방송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

구분	방송	미디어서비스	텔레서비스
시장진입	허가제 (방송국가협약 제 20조)	미디어서비스법과 텔레서비스법에 따라 허가와 신고 불필요(미디어서비스법 제 4조, 텔레서비스법 제 4조)	
프로그램의무	다원성 요구와 프로그램 기본원칙 (방송국가협약 제 41조)	보도에 이용되는 서비스의 경우 저널리즘적 주의 의무가 있음 (내용, 출처, 진실 여부에 관한 검토)	규제 없음
주요행사, 이벤트에 관한 무료의 단신 보도, 프로그램쿼터제	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투명성 의무	공표의무	제공자 표시	제공자 표시
청소년 보호	방송국가협약 제 3조, 4조에 규정	미디어서비스법 제 8조 관련	청소년 유해 문헌 보급에 관한 법령과 관련
반론권	있음	있음	없음
광고규제	있음	있음	없음
광고의 삽입과 시간제약	있음	없음	없음

### 나. 규제기구

독일 통신법(텔레커뮤니케이션법)의 제정과 감독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연방 체신과 텔레커뮤니케이션성(BMPT)의 소관이었으나 1998년 1월 1일자로 유럽 텔레콤시장의 개방 이후 텔레커뮤니케이션과 체신을 위한 새로운 정책은 독일 연방 경제노동성(BMWA)에 귀속되었다. 방송정책의 경우에는, 주(州)의 수상성이 주차원에서 방송정책에 관여하고, 각 주(州)들 간의 수상회의는 주(州)차원의 방송정책 조정기구로의 역할을 담당한다. 결국, 독일은 통신과 방송영역을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방송영역에서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리 기구를 구분하고 있다. 현재 독일의 방송 통신 관련 업무는 18개의 관청 및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편, 독일 통신부문의 경제적 규제는 연방차원인 통신우정성(Reg TP)이 관장하고 있고, 방송부문의 경우에는 주 미디어관리청<sup>20)</sup>에서 허가 및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총 9회에 걸친 방송관련 판결에 의하여 방송에 대한 문화적·내용적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각 주의 전속적인 관할권에 귀속되어야 하며, 연방의 권한은 다만 그 기술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지성우, 2002). 독일의 방송규제가 이처럼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 의하여 분할되어 있는 이유는 독일의 지방분권적 전통에 따른 연방정부의 방송장악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나치하에서 연방정부가 방송을 정권 홍보에 이용한 경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1〉 독일 방송 통신관련 규제기구

규제기구	주요업무
통 신	
통신우편규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과 우편 시장 특유의 규제(기회균등, 경쟁 촉진 등)</li> <li>• 허가업무(통신과 우정업무)</li> <li>• 주파수 분배</li> <li>• 보안 데이터 보호</li> </ul>
방 송	
공영방송 평의회	독일 공영방송 규제기구 (추후 보장)
주미디어청(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민영방송 규제기구</li> <li>• 민영 TV와 라디오 방송사 면허부여</li> <li>• 의견 다양성 보장</li> <li>• 프로그램 감독</li> <li>• 청소년보호</li> <li>• 법의 시행을 위한 지침, 규칙 제정</li> <li>• 민영방송 기술 확대를 위한 진흥</li> <li>• DAB, DVB시범사업 계획 및 조직</li> <li>• 외국 방송 채널의 케이블 분배에 관한 허가</li> </ul>
방송부문 자본집중조사위원회 (KEK)	• 전국적 TV채널 의견 형성 보장 문제 감독 및 고지
방송재정수요조사심의위원회 (KEF)	• 물가상승 및 방송 분야 비용상승 고려 공영방송 자체 산출 예상 재정 수요 검토 및 수신료 인상액 산출 기구

20) 방송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주 미디어관리청은 민영방송 허가와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독립기구이다.

독일은 현재 통신 및 방송의 융합에 대비하여 통신규제기관과 방송규제기관의 일원화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가칭 ‘연방청’이라는 연방정부 차원의 통합기구를 신설·운영한다면 민영 방송사를 위한 규제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통신규제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통신과 관련한 독일의 정부부처는 경제기술부(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이지만, 실질적인 정책과 규제는 독립규제기관인 통신우정규제청(Regulierungsbehörde für Telekommunikation und Post(Regulatory Authority of Telecommunications and Posts: RegTP)에서 수행하고 있다. RegTP는 1998년 1월 1일에 설립되었고, 독일의 우정 및 통신부문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독립 기관이다.

RegTP는 1998년 1월 1일 설립할 때 지방에 54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주로 통신과 관련된 기술부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RegTP의 새로운 조직개편 계획에서는 29개의 지역 사무소와 4개의 전문 부서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29개의 지역사무소 가운데 10개는 관리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RegTP의 핵심 임무로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산업진흥정책 등이다. 기존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기존 독점사업자인 DTAG, DPAG의 지배적 시장지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우정 및 통신시장에서 신규 사업자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이고, 산업진흥정책으로는 우정 및 통신시장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RegTP는 우정 및 통신서비스를 위한 면허 부여, 기술표준에 대한 입력사항을 제공, 주파수 및 번호자원 관리, 전파간섭에 대한 조사 및 해결방안 제시, 시장변화에 대한 조사기능 수행, 그리고 이용자에게 우정 및 통신시장에 있어서의 새로운 규제나 실행에 대한 홍보 및 자문역할 등을 수행한다.

#### **다. 소유규제**

방송기업에 대한 독점규제는 연방독점제한법이 적용되며, 동시에 연방방송국가 협정이 적용된다. 민영방송의 도입초기에 독일의 방송정책입안자들은 방송사의 자본소유상한선을 규제하는 이른바 ‘투자지분 제한방식(Beteiligungsmodell)’을 통해 방송자본의 집중을 통제해왔다. 그러나 투자지분 제한방식으로는 양적·질적으로 팽창해 나가는 방송시장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었다.

독일의 연방 16개주는 여론을 좌우할 위험성이 있는 방송자본의 출현을 억제하기 위해 개별 방송사업자의 시청률 점유수준이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위험수위를 넘지 못하도록 방송사업자들의 시청률 점유상한선을 제한하는 ‘시청률제한방식(Zuschaueranteilsmodell)’을 도입하게 되었다.

독일의 방송국가협정(Rundfunkstaatsvertrag) 제26조는 방송분야에서의 자본집중현상을 통제하기 위해, 방송사업자의 전국 시청률 점유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다. 방송국가협정 제26조 1항에는 방송사업자의 방송사 설립을 자율화했다. 그러나 2항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여론형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민영 방송에 투자하는 개인 혹은 법인은 전국적으로 시청률의 30% 이상 점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러한 시청률 점유 상한선 도입 규정에서는 방송사업자들이 소유한 TV방송의 시청률 점유 상한선뿐만 아니라, 자사의 방송프로덕션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다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TV방송에서 방영되면 방영된 프로그램의 TV시청률은 공급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의 전체 시청률 점유 상한선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만일 한 방송사업자가 시청자 점유율 상한선인 30%를 넘게 되면, 방송국가협정 제26조 4항에 따라 방송분야자본집중조사위원회(KEK)는 해당 방송사업자가 더 이상의 방송사 설립이나 방송 관련 유관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관할 주 매체관리청에 통보하게 된다. 주매체관리청은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30% 상한선을 초과한 만큼 방송분야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명령한다. 만일 KEK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사업자가 매각을 거부하게 되면, KEK는 일정한 기간 동안 처리시한을 준 뒤 주매체관리청에 방송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라는 의견을 통보하며, 주매체관리청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sup>21)</sup>.

방송기업은 연방독점제한법에 의거 기업합병과 기업인수에 대해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동시에 연방방송국가협정에 따라 전국 시청률 점유율에 따라 방송분야자본집중조사위원회(KEK)로부터 이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

언론기업의 자본집중 규제는 ‘국민경제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행위’를 감독하고,

---

21) 최근 연방 16개 주의 주총리들은 매체정책관련 연석회의에서 2002년에 개정될 제 5차 방송국가협정에 민영방송기업의 전국시청률 상한선을 25%로 하향조정하고, KEK에게 보다 많은 감독기능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안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의 기업간의 동등한 경쟁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독일정부는 언론 기업간의 합병규제를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거나 독점적 지위에 있는 기업의 지위남용을 막기 위해 개별사안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감독기관의 개입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유럽연합 회원국인 독일의 언론기업들은 유럽연합의 독점제한규정에 의해 감독을 받는다. 또한 언론기업의 합병이나 자본집중현상이 독일에 한정되면 연방독점제한법이 적용되며, 주단위로 이루어지면 주독점제한법에 의해 규제된다.

독일은 1997년 효력을 발생한 ‘제3차 방송수정국가조약’을 통해 이종(異種)미디어 소유를 인정하고 시장진입의 자유를 보장하며, 기존의 미디어 소유제한 방식인 지분제한 및 채널수 제한 방식을 수정하여, 이를 시청점유율을 통한 소유제한 방식으로 완화하였다. 완화된 방식에 따르면 하나의 미디어 기업이 방송사에서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을 최대 49.9%로 제한했던 기존의 지분율 한계를 수정하여 방송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업이라면 누구라도 제한 없이 텔레비전 채널에 참여할 수 있고 100%의 지분소유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한국언론재단, 2000).

그러나 주 차원에서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 제한 규정이 있다. 여론형성의 독점을 막기 위하여 주차원에서는 다양한 모델들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부 주의 방송법에서는 방송구역 내에서의 정기간행물의 총 발행량 중 20% 이상을 유통시키는 기업은 지역 또는 지방용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의 반 이상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일부 주의 미디어 법은 지역프로그램의 신청자가 일간지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단독의 제공자로서는 허가될 수 없는 것으로 하며, 또한 이러한 신청자는 제공자의 공동사업체가 설립될 경우에도 의결권 25% 이상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단, 자본참가는 35%까지 인정된다)고 정하고 있다. 방송사업 진출에 있어 신문이 우선권을 갖는다는 명시까지는 하고 있지 않지만, 주에 따라서는 신청자의 선택기준으로서 신청자에게는 전문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이 기대된다는 규칙을 설정하고 있어서 사실상의 신문의 방송참여를 허용한다는 함축성을 지니고 있다(KEK, 2004).

## 라. 기타 규제

독일 통신법 제6조(면허 부문)에 의하면 지역간을 중계하면서 공중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송수단을 사용하는 자와 자가통신망을 토대로 음성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독일의 무선국 허가제도는 크게 4개의 종류로 구분되어 있다. 제1종 허가는 면허취득자나 제3자에 의하여 공공을 위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송수단을 가동하는 것으로, 이동전화의 허가에 해당하고, 제2종 허가는 면허취득자나 제3자에 의하여 공공을 위한 위성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송수단을 가동하는 것으로, 위성통신의 허가를 의미한다. 제3종 허가는 면허취득자나 제3자에 의하여 공공을 위한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송수단을 가동하는 것으로 제1종과 2종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전송수단에 대한 허가이며, 제4종 허가는 자동 전기통신 네트워크에 의하여 음성전화서비스의 제공하는 자, 즉, 음성전화에 대한 허가로서 이러한 음성허가는 전송수단의 가동에 관한 허가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각 허가의 구성을 보면, 제1종 허가의 구성은 디지털 이동통신, 지역통신, 데이터통신, 무선호출 및 무선호출(ERMES 표준)로 구성되어 있고, 제2종 허가(위성통신)는 지상기지국 및 S-PCS(Personal Communication System)에 대한 허가이다. 또한, 제3종 면허(전송수단)와 제4종 면허(음성전화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허가의 교부에 있어서는, 무선국 허가는 RegTP에 대한 서면신청에 의하여 문서로 교부되는데, 허가 신청서에는 허가등급의 분야가 명시되어야 하고 RegTP은 신청후 6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되며, 다만 무선국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배분할 주파수대가 없는 경우, 신청자가 무선국 운영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및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은 거부될 수 있다.

무선국 허가 및 주파수 배분과 관련된 결정은 RegTP의 산하에 있는 의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경매절차와 공모절차에 의한 허가의 결정은 의결위원회와 산하 자문회와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지고, 의결위원회의 심사는 공개된 구두심의에 의한 것이다. 의결위원회는 최종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비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최종결정은 이유와 함께 관계자에게 행정통지법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통지되어야 한다.

허가자를 이전 혹은 변경하는 경우, RegTP에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허가의 요건과 경매참가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이전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

밖에 허가자의 소유관계의 변경, 허가의 위임은 RegTP에 즉시 신고되어야 한다.

배분될 주파수대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파수 계획에 의하여 허가의 수가 제한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허가의 제한에 관한 결정은 RegTP의 관보에 공시되어야 하고, 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RegTP가 허가를 교부하는 방법은 경매와 응모에 의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경매의 경우, 공공에 대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공급자를 법률 제47조(주파수 지정)의 주파수 배분규정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공모의 경우는 경매절차에 의한 허가의 배분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되는 경우 공모에 의하여 배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모절차는 응모한 공급자 중에서 통신서비스 수요자의 요구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요건과 기반을 갖춘 자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가의 취소에 있어서는, 허가자가 허가의 의무 및 본 법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통신비밀과 데이터 보호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법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허가가 이전되는 경우에 허가의 요건을 위배하는 경우에 대해서 허가의 전부 혹은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정부는 장기적인 주파수의 관리를 위하여 약 5년주기로 전자기술의 발전과 통신기술의 발전 및 무선통신에 대한 경제적인 수요 등을 고려하면서 주파수의 활용현황과 미래수요 등을 분석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독일에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사업개시, 수정, 종료시 한달이 내에 규제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고지의 의무가 있다. 규제기관은 일정기간단위로 이들 신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sup>22)</sup>

독일의 방송사업자 허가는 공영방송의 경우 내무부(연방차원)와 주정부(주차원)가 허가한다. 주미디어관리청은 지상파, 위성, 케이블에 상관없이 자기 주에서 방송되는 모든 민영방송주관자에 대한 허가를 담당하고 있다. 방송주관자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 조직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이며, 방송허가는 7년까지 유효하다.

독일 제2공영방송 ZDF의 TV방송위원회는 지난 10월 10일 독일 남부 슈투트가

---

22) Telecommunications Act, §4 Notification Requirement

르트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자사 프로그램을 위한 새로운 청소년 보호 지침을 의결하였다. 이 규정안은 올해 4월 1일부터 발효된 각 주들의 청소년미디어보호협정(JMStV, Jugendmedienschutz-Staatsvertrag)과 더불어 같은 시기에 발효된 연방 청소년 보호법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ZDF 방송사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 조치를 위해 수정, 보완된 ZDF의 청소년 보호 지침은 방송 서비스의 광범위한 정보전달 의무와 법적인 기준에 대한 TV방송위원회의 폭넓은 개입과 통제 가능성을 망라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ZDF의 새로운 지침안은 독일 공영방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청소년 보호의 임무를 유효한 법률과 조약에 의거해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ZDF의 새로운 청소년 보호 지침은 관련 국가협약 중에서도 인간의 존엄성 보호 국가협약을 비롯해 방송과 전자매체의 청소년 미디어 보호 국가협약, 그리고 이 국가협약에 고시된 ZDF의 방송 및 전자매체에 대한 청소년 보호 조치의 기준 등을 검토해 방송과 전자매체가 청소년 보호 임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보호 지침은 독일에서 점증하고 있는 TV 방송 시리즈물 및 추리물 등의 폭력성이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고, 그 결과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과 우려 속에서 새롭게 재정리된 터라 각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경계 영역적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통신 권한을 지닌 연방정부와 방송권한을 지닌 주 정부 간의 마찰이 심해지자 법적 공백을 해고하고, 신규 통신 서비스와 새로운 미디어서비스를 규율하고자 1997년 정보와 커뮤니케이션법과 미디어서비스국가협약이 제정되었다.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법은 텔레서비스의 이용 및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서명, 저작권료, 사용료 및 청소년 유해문헌 판매에 관한 법령 개정 등의 11개 조항을 담고 있다.

통신방송 융합과 관련하여 정보서비스 및 통신서비스 법률과 미디어서비스국가협약에서 텔레서비스와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다. <표 22>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sup>23)</sup>.

〈표 22〉 방송, 미디어서비스, 텔레서비스 구분

방송	미디어서비스	텔레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기적 파장이나 도체를 사용하여 언어, 소리, 영상이 제공되는 것</li> <li>-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파 또는 유선으로 문자, 음성, 또는 영상으로 분배되는 것</li> <li>-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와 커뮤니케이션(미디어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TV 매, TV 텍스트, 라디오 텍스트, 주문형서비스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자, 영상 혹은 음성과 같이 조합된 데이터가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것</li> <li>- 전자커뮤니케이션을 수단으로 전달됨(텔레뱅킹, 원격작업, 원격의료, 원격학습, 데이터서비스, 텔레게임 등)</li> </ul>

출처: 김원식(2004).

이러한 경계영역적 서비스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상호 변화,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개방적인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다.

텔레서비스와 미디어서비스의 구분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텔레서비스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연방정부에 의해 마련된 정보서비스 및 통신서비스 법률에 의해, 미디어 서비스는 주정부에 의해 마련된 미디어서비스국가 협약에 의해 각각 규제된다.

#### 4. 프랑스

##### 가. 법제도

프랑스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모든 전자통신망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유럽연합의 규제원칙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에 따른 법령 개편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 개정법은 1986년 9월 레오타르(Lotard)법 이후 가장 중요한 법으로 간주된다. 이 법은 두 가지 큰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2002년 유럽공동체 국가들의 합의하에 제정된 유럽 방송법이라 할 수 있는 빠케 텔레콤(Paquet Telecom)과 모순되지 않도록 기존의 방송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법만을 추가하였다. 둘째, 최근 프랑스방송환경은 기술적·산업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새로운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법적 장치의 필

23) 이상우(2004).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해외사례 비교분석. 『방송연구』, 2004. 여름호.

요성이 제기되었다. IPTV도 이 법의 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테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2005년에는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에 있어서도 이러한 법적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우선 이법은 ‘전자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의 사용으로 기존의 방송망, 지상파, 케이블, 위성 그리고 새로운 방송망인 ADSL과 디지털 방송을 통합하고 있다. 이 개념은 ‘전자(기)망에 의해 기호, 문자, 이미지, 소리의 방출, 전송, 수신’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통신기술의 융합된 환경과 방송 통신망의 특성을 고려한 방송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방송위원회를 다른 관련 정부기관과 구분해 구체화하고 강화했다. 이 법은 기술적 중립성, 자유경쟁, 다양성, 소비자 이익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현 정부가 가속화하는 공기업의 사영화 등과 같이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부합하는 성향을 띤다.

#### 나. 규제기구

프랑스는 현재, 방송과 통신의 정책과 규제 관련 기구가 정부부처형과 독립형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다<sup>24)</sup>.

통신정책은 재정경제산업부 산하 기관인 체신 및 정보기술과 산업일반 지도국(DIGITIP)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통신규제기구는 유럽연합의 통신시장 경쟁체제로의 전환 요구와 프랑스 자국내의 통신기술발전 및 민영화/상업화 요구에 따라 기존의 우정통신부가 해체되고 1997년에 통신규제청(ART: Authority for the Regulation of Telecommunications)이 설립되어 현재까지 프랑스의 통신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통신규제청(ART)은 1996년의 통신법에 의해 실체화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sup>25)</sup>. 통신에 대한 ART의 규제

---

24) 정부부처형이란 행정부의 한 부서로서 수상의 감독을 받는 반면, 독립형은 법률적 실체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존재하여 법원과 같은 자율적인 규제기구로서 존재한다.

25) 통신규제청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6년간의 임기 중에는 파면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통령이 추천한 3인,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한 2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된다.

결정은 ‘퐁세이유 데따(Conseil d’Etat:프랑스만이 존재하는 특이한 기관으로, 수상의 자문, 사법과 행정의 엄격한 분리에 따른 최고 행정 재판 기관, 정부 정책의 조정 역을 감당함)’의 재심을 받게 된다. 통신규제청(ART)의 주요 업무는 통신사업자의 면허신청서 처리, 시장감시 및 경쟁상태유지, 사업자간 분쟁 조정, 번호관리 등의 통신정책 및 규제담당 등 기술적·경제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립전파국(ANFR)과 자유와 정보 국립위원회(CNIL)도 각각 통신규제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국립전파국은 주파수 계획, 모니터링, 분배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자유와 정보 국립위원회는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의 생활, 자유 및 공공 질서를보호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방송에 대한 규제업무는 시청각최고평의회(CSA: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al)가 담당하고 있다. 시청각최고평의회는 상임위원회는 대통령이 3인, 하원의장이 3인, 상원의장 3인이 임명하여 총 9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청각최고평의회(CSA)의 주요업무는 주파수 사용권 및 방송서비스 사업 허가, 공영방송사 사장의 임명, 방송에 관한 국제협약체결, 프로그램의 사후심의 및 협약내용 준수여부 감시 등이다. 물론 주파수 업무나 사업자간 경쟁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국립전파국(ANFR)이나 공정거래위원회(Conseil de la concurrence)와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프랑스는 방송과 통신 규제기관의 통합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네트워크에 대한 규제와 콘텐츠의 규제는 그 목적과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방송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문화나 정치적 요인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제기관에서 규제하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프랑스는 시청각 표현의 자유 및 문화적 다원성의원칙이 전자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경쟁의 자유 및 시장의 통합 원칙과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과 통신의 규제기관은 주요 쟁점사안에 대하여 수시로 만나서 협의해 나가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다. 소유규제<sup>26)</sup>

프랑스의 소유집중 제한법은 최근 디지털 텔레비전(TNT)의 개통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법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최근 유럽 방송 지령인 ‘파케 텔레콤(Pa-

26) 방송 동향과 분석(2004. 8. 31)

quet T I Com)’을 수용하는 ‘전자 커뮤니케이션과 방송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관련 법’을 제정하면서 이에 관련된 법 조항을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하였다.

최근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면서 변화를 거듭한 소유집중 제한법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 8월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의 발전을 위한 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의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의 방송이 오랜 기간 공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 법은 하나의 채널이 동시에 2개의 전국 방송 허가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하나는 아날로그 방식, 나머지는 디지털 방식). 게다가 디지털 기술에 의해 채널 수 증가가 용이해졌고, 곧 출범할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은 최대한 많은 인구를 대상을 약 30여 개의 채널을 공급할 예정임에 따라 한 그룹이 여러 전국 채널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존 법이 불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대신 그룹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주파수는 한정되어 있고 아날로그 방식의 채널들도 제한된 수를 유지할 것이므로 여전히 한 법인이 방송계에서 너무 집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내용을 보면 채널 경영 참여권에 있어서 15%(두 채널)와 5%(세 채널) 조항은 아날로그 방식의 채널들에게만 한정되는 반면, 한 법인이 5개까지 허가권을 획득한 디지털 방식 채널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단, 이 채널들을 다른 개인 혹은 법인에 의해 운영되어짐). 달리 표현하면 약 30여개의 디지털 채널 수를 감안할 때 약 6분의 1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신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한 법인이 한 채널의 투표권과 자본금의 49%까지 제한하는 내용은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2001년에 제정된 디지털 관련법은 1986년 9월 지상파 전국 텔레비전에 적용했던 자본금 혹은 투표권의 29% 조항을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에 상관없이 지상파, 케이블 그리고 위성방송을 포함해 개인 혹은 법인이 소유한 채널들의 평균 시청률 합계가 연평균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제한했다. 따라서 이에 혹하지 않는 경우 개인 혹은 법인은 방송 허가권을 획득한 채널의 자본금 혹은 투표권 49% 이상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가장 최근에 채택된 전자커뮤니케이션과 방송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관련법은 기



존 600만 명으로 제한했던 지역 텔레비전의 조항을 1,200만 명으로 개정했다. 또한 한 법인이 소유할 수 있는 디지털 채널의 수를 5개에서 7개(허가권)로 확대하였는데, 이는 디지털 텔레비전 채널이 2000년의 예상보다 향후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라디오의 경우는 모든 라디오 채널을 포함한 청취율 분배에서 한 법인이 총 20% 이상의 청취율(누적)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 채널(들)의 허가권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러한 법 조항들을 공영방송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다원주의의 존중은 공영 채널들의 의무 요강서에서 지시하고 있고 여러 규범들에 의해 이미 적용되고 있다. 그들의 자본금은 법에 의해 100%가 정부에 속해 있으며, 허가권은 방송위원회로부터 별도의 허가권을 획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프랑스 지상파 방송에 관해서는 4가지의 규제 조건이 있다. 첫째, 어떠한 개인, 기업도 방송권을 획득한 회사의 49%의 이상의 지분이나 투표권을 획득할 수 없다. 둘째, 5개 이상의 채널을 획득할 수 없다. 셋째, 같은 지역 내에 한 종류 이상의 방송권을 획득할 수 없다. 각기 다른 지역의 방송권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인구의 총합이 6백만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전국 지상파 TV 1채널을 소유하는 주주는 두 번째 전국 채널에서는 15%, 세 번째는 5% 전국 채널에 투자할 수 있다(Bird&Bird, 2002, 정윤식, 2004 재인용).

케이블 방송 시장이 지체되어 있는 프랑스는 케이블 방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과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 간의 상호 겸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케이블 방송에 대해서는 PP-SO-NO의 교차소유를 허용하되 동종 업종에 대한 복수 소유시 지분 소유에 한도를 두어 제재하는 방식을 취한다(최현철, 김동규, 2001). 이는 허가받은 지역의 인구가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경우 상호 겸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상파 방송은 인구 4백만 명 이상인 지역에서 서비스 하는 경우 케이블 TV 참여가 금지되며, 6백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지역에 대한 방송권을 부여받은 케이블 TV 운영자는 추가적인 케이블 TV 운영권을 획득할 수 없다(최현철, 김동규, 2001).

개정된 방송법 1조를 살펴보면 구법에 명시된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문장 다음에 '서비스의 편성자와 유통자 간의 비차별적인 관계의 확립'이라는 문장이 추가되고

있다. 이 조항은 공정 경쟁이라는 것이 단순히 방송사 간 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유통하는 사업자들 간의 관계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수직적, 수평적 결합의 상황에서 반독점과 공정 경쟁의 장치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법은 계약을 기반으로 한 공정 거래 환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지상파 방송사 중심의 법에서 방송법에 관련되는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있고, 기존의 텔레비전과 라디오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가능한 서비스가 모두 포함되어 그러한 서비스를 전송하고 수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계약관계를 고려하고 있다.

2조 1항에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서비스 유통자”는 지상파, 케이블 또는 위성을 통하여 공중이 접할 수 있는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편성자와 계약 관계로 이루어지는 모든 개인이나 법인을 지칭한다. 또한 다른 서비스 유통자와 계약 관계를 맺어 그러한 서비스 제공하게 되는 모든 개인이나 법인 역시 서비스 유통자로 간주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 **라. 기타 규제**

프랑스의 면허 규제를 살펴보면, 지상파 방송은 주파수 사용에 관한 입찰과정을 거친 후 CSA로부터 허가를 받게 되어 있다. 기술부문에 대한 기술허가와 프로그램 공급사업에 대한 사업허가로 나뉘어지며, 방송사업자는 기술허가와 사업허가를 모두 CSA로부터 취득해야 한다. 단일 기관에서 기술허가와 사업허가를 모두 받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허가 취득으로 기술허가가 자동적으로 따르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케이블의 경우 케이블망의 설립인가는 지방자치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서비스의 운용에 대한 허가는 CSA가 담당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케이블 TV사업자들에게 허가 재허가를 부여하고 있는 방식과는 달리, 프랑스는 PP, SO, NO에게도 허가/재허가를 적용하고 있다.

디지털 전송 서비스 제작자나 서비스 유통업자들은 다음 중 2가지 이상의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2 out of 4 rule), CSA에 의한 방송권을 받지 못하거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한국방송진흥원, 2001).

- 인구 400만인 지역에서 시청할 수 있는 디지털 방식으로 지상파를 사용하여 전송하는 텔레비전 서비스에 관련된 허가를 하나 혹은 복수로 취득한 경우

- 인구 300만인 지역을 가칭 지역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 서비스에 관련된 허가를 하나 혹은 복수로 취득한 경우
- 인구 600만인 지역에서 시청할 수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distributeur) 서비스에 관련된 허가를 1개 혹은 복수로 취득한 경우
- 허가를 신청한 일자 이전의 12개월을 기준으로 전국 규모에서 전체 발행 부수의 20%이상을 점유하는 정치보도와 종합일간지를 1개 혹은 복수를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자

프랑스에서는 ADSL TV서비스가 2003년 12월에 시작되었다. 이 새로운 방송망에 관한 법은 2004년 7월에 개정되고 10월에 공시된 ‘전자 커뮤니케이션과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관한 법’에 와서야 구체적인 적용 영역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 개정된 법에서는 ‘전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를 통해 방송·통신의 융합에 대응하고 있다. 전자 커뮤니케이션은 ‘전자기 장치를 통해 기호, 신호, 텍스트, 영상과 음향을 송출, 전송 수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기존의 통신 네트워크와 방송 네트워크를 아우르는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 이 개념은 고정·이동 통신 네트워크, 케이블 네트워크, 지상파 또는 위성방송 네트워크를 모두 포함하는 일반 개념이다. 이 법에서는 방송위원회(CSA)와 통신규제청(ART) 사이의 업무를 명확하게 분할하였다. ART는 케이블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통신 서비스 전반에 대한(콘텐츠 서비스는 제외) 경제적 규제 권한을 지니게 되었다. CSA는 지상파, 케이블, 위성, ADSL,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텔레비전과 라디오 서비스에 대한 규제권을 갖게 되었고, 커뮤니케이션 자유법의 기본 원칙인 정보의 다양성과 미성년자 보호 의무, 그리고 공영방송에 고유한 임무 수행에 관한 의무, 전파 사용의 문제에 관한 의무 등을 부여받았다(홍석경, 2004. 10).

ADSL TV는 기존의 ‘케이블을 통한 방송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공급’이라는 부분이 ‘전자 커뮤니케이션 망에 의한 텔레비전과 라디오 서비스 공급’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되었다. 이로써 전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을 통해 ADSL TV가 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기술적·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케이블, 위성, ADSL 방송은 서로 조금씩 다른 법해석을 필요로 할 때가 있다.

정리해 보면, ADSL TV는 전자 커뮤니케이션에 포함되어 전반적으로 케이블과

위성방송에 관련된 법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으나 케이블과 위성방송이 가지는 몇몇 특별 조항(기술적·경제적 특성에서 기인)에는 제외된다.

## 5. 일 본

일본경제의 회생을 위한 돌파구로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는 맥락에서 통신방송 융합에 대한 대응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국가적 목표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통신과 방송에 관한 정책, 행정, 규제라는 국가업무를 ‘총무성’이라는 단일기관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업무에 일관성, 종합성,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규제정책의 목표로는 i) 공공의 복지증진, 표현의 자유 확대,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ii)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경쟁체제 강화,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하에 방송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꾸준히 실시하였다. 위성방송에 관한 각종 규제완화 정책으로는 CS방송에 대한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의 완화, 보유 프로그램 수의 완화, 방송 프로그램 심의기관 설치 의무 등의 완화, CS방송의 외자규제 철폐 등이 있으며 케이블TV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정책으로는 전기통신사업을 겸영하는 케이블TV에 대한 외자규제의 철폐, 케이블TV의 외국인 임원취임에 관한 규제완화, 헤드엔드의 공용화 등이 있다.

한편 최근의 통신·방송 관련 규제정책의 동향으로는 - 통신·방송 융합기술의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전기통신사업법과 NTT법의 개정안 가결, -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법의 제정, -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개정 등이 있으며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 융합의 진전에 대응한 제도정비, 정보통신 인프라의 정비, - 플랫폼 비즈니스의 육성 지원, 정보유통 제도의 확립, - 콘텐츠 제공의 원활화를 위한 사업환경 정비 등이 있다.

### 가. 법제도

일본의 현재 방송관련 법체계는 방송법과 전파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는 1950년에 성립된 전파 3법(방송법, 전파법, 전파감리위원회 설치법)에 의해 확립된 것이다. 실제 일본 방송에 있어서 법제화가 마련된 것은 메이지 헌법 하에 1923년 제정된 방송용 사설무선 전화규칙(체신성령 98호)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현 방송법은 전파 3법에 의해 설정된 기본방향을 따르고 있다. 미국 점령기에 미국의 FCC를 모델로 해서 입법권과 사법권이 부여되었던 독립행정 감독·규제기구인 전파감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한 전파감리위원회법은 점령 종료 직후 폐지되었다. 이로 인해 전파감리위원회의 사무는 우정성 전파감리국으로 이관되고 우정대신 자문기관으로서 전파감리심의회가 설치되었다. 이 심의회는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결정권이 없다. 방송법은 프로그램 편집 준칙, 프로그램 조화원칙, 매스 미디어 집중배제원칙 등 방송 프로그래밍 즉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정과 일본방송협회, 일반방송사업자, 수탁방송사업자, 위탁방송사업자 등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주로 포함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파법은 무선국의 면허, 무선설비의 조건, 무선종사자의 자격, 무선국 운용의 방법, 무선국에 대한 감독 등 하드웨어에 대한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에는 방송의 디지털화로 방송·통신융합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방송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 간의 제휴 및 NTT의 방송분야 진출, 그리고 케이블TV사업자의 전화서비스 제공과 같이 통신과 방송 급격한 융합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통신과 방송관련 법안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일본은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여 장기침체에 있는 일본경제를 희생시키려는 목적에서, 통신 및 방송영역에서 시장경쟁체제를 강화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규제완화조치를 단행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은 2001년 ‘통신·방송융합기술의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을 재제정하여 2001년 5월로 폐지기한이 도래한 동법을 향후 5년 간 더 연장했으며, 같은 해에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을 제정하여 통신과 방송의 전송로융합의 진전에 대응하여 디지털 통신위성방송 및 유선텔레비전의 설비이용 규제를 완화했다. 위와 같은 일본이 법제도 개선은 ① 융합발전에 대응한 제도정비, ② 정보통신 인프라 정비, ③ 플랫폼 비즈니스 전개 지원, ④ 정보유통 규정 확립, ⑤ 콘텐츠 제공의 원활화 위한 사업환경 정비라는 지향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이처럼 방송·통신융합의 길이 용이하게 된 것은 하드웨어(수탁방송사업자: 방송국의 면허 주체)와 소프트웨어(위탁방송사업자: 방송프로그램 편성 주체)의 분리 원칙을 적용한 것과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한 방송을 제도화했기 때문

이다. 이로써 위성방송과 케이블TV방송은 자유로운 사업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sup>27)</sup>.

그 밖의 방송관련법으로는 방송대학을 규정한 ‘방송대학학원법’, 케이블TV를 규정한 ‘유선텔레비전방송법’, 유선라디오방송을 규정한 ‘유선방송전화에 관한 법률’, 전송로의 융합을 규정한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법’, 기타 ‘통신·방송위성 기구법’ 등이 있다.

일본의 통신관련 법령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은 정보통신사업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정보통신사업의 발전과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전파법은 전파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 확보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전파법은 1950년에 제정되었으며 2001년 6월 29일의 개정 이후 현재, 총 9개의 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령에서의 용어 정의를 보면, ‘전파’란, 3백MHz이하의 주파수의 전자파를 말하며, ‘무선전신’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부호를 보내거나 받기 위한 통신설비를 말하며, ‘무선전화’란, 전파를 이용하여 음향을 보내거나 받기 위한 통신설비를 말한다. ‘무선설비’란, 무선전신, 무선전화 이외의 전파를 보내거나 받기 위한 전기적 설비를 말하며, ‘무선국’이란, 무선설비 및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단, 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무선종사자’란, 무선설비의 조작 또는 감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총무성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또한 전파법 일부를 개정해 아날로그 주파수 변경대책을 마련하여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에 대한 논란들을 일단락 지었다. 일본은 방송용 주파수를 세분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용으로 전환할 주파수대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방송을 시작할 경우 전파혼신이 발생하여 TV시청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UHF대역(13~52ch)의 아날로그 채널을 다른 채널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총무성은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방송사업자에게서 거둬들이는 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을 연장하고 금액을 인상하였다. 따라서 기간은 전파법 시행령이 발효되는 2003년 9월 1일부터 2011년 3월 24일까지 약 8년간 추가부담하게 되었다. 추가금액은 대규모 방송사업

---

27) 신호철(2003). 일본의 디지털방송 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정보통신정책 제 16권 4호 통권 342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고 영세한 민방 로컬국에게는 적은 부담을 주었다.

## 나. 규제기구

일본의 규제기구는 통신·방송융합이 가시화되기 이전부터 통합형 구조를 보유하고 있었다. 통산산업성(MITI)이 가지고 있던 통신 단말 및 장비 생산과 수출입 정책 기능을 흡수한 새로운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설립을 제안, 1998년 6월, 일본 의회에서 정부 기능 재조정법이 통과되어 우정성은 2001년 1월에 실시된 중앙성청 재편을 통해 총무청, 자치성과 함께 ‘총무성’(Ministry of Public Management, Home Affairs, Posts and Telecommunications)으로 재편되었다. 우정성이 설치된 이후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약 2년 동안 전과감리위원회(1950년~1952년)가 통신과 방송 규제를 담당하기도 했으나,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2001년 총무성 산하로 이관될 때까지 우정성이 통신과 방송의 규제기관으로 활동하였다. 우정성 산하에는 통신정책국, 방송행정국, 그리고 전기통신국이 함께 존재했으나, 이러한 조직구조는 융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일본 규제제도의 특징은, 동일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통신과 방송에 다른 규제가 적용되며, 심지어 방송서비스는 전송로마다 규제가 달랐다. 예를 들면, 케이블TV에 대해서는 유선텔레비전방송법이라는 법률이 존재하는데, 따라서 케이블TV의 설비를 경유하여 제공되는 영상프로그램 서비스를 방송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신위성을 경유한 영상프로그램 서비스의 직접수신에는 위탁·수탁방송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영상프로그램 서비스를 방송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유료의 영상프로그램 서비스에 관해서도 역시 유료방송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하고 있다. 이외에도, 방송사업 참가규제, 조직규제, 내용규제, 소유규제 등 다양한 형태의 규제가 실시되고 있다.

총무성은 행정의 기본적 제도 관리운영, 지방자치제도 관리운영, 전기통신 방송 행정, 우정사업 및 그 외 고유 행정 목적 실현의 임무가 있는 특성 성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임무로 설치되었다.

구성은 장관 및 10개국이 설치되어 있으며, 외청으로는 경쟁정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공해분쟁주선, 조정, 중재, 재정 등을 실시하는 공해 조정위원회, 우정사업을 실시하는 우정사업청, 소방행정을 담당하는 소방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무성의 시설기관 중 통신종합연구소 및 소방연구소는 2001년 4월, 통계센터는

2003년 3월에 독립행정법인화 되었다.

총무성은 내각과 수상의 보좌 및 지원체제 강화의 일환으로 설치되었으며, 행정의 기본적인 제도 관리운용, 지방자치제도의 관리운용, 전기통신 및 방송행정, 우정사업 등을 관할한다.

기존에 우정성에서 담당하던 통신과 방송에 관련된 행정 및 규제의 모든 업무는, 총무성의 정보통신정책국과 종합통신기반국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국과 종합통신기반국이 포함된 총무성은 미국의 FCC와 같이 전파 및 방송관련제도와 정책을 관장하는 총괄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FCC와 달리 정부기관이다.

#### 다. 소유규제

일본의 방송소유규제는 과도한 소유 집중의 제한을 두는 이른바 ‘매스미디어의 집중배제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매체에 따라 차이를 둔다. 방송 소유 관련 규제는 이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의 원칙은 독점금지법상의 기업결합이나 집중에 대한 규제보다 더 엄격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총무성령의 하나인 방송국 개설의 근본적 기준 9조의 핵심내용은 이른바 “3사업 지배의 금지” 및 “복수국 지배 금지”의 원칙이다. 개념은 다음과 같다(한국방송진흥원, 2001).

- 3사업 지배금지는 중파(라디오)방송, 텔레비전 방송, 신문사업을 한 사람이 경영 또는 경영지배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
- 복수국 지배금지는 개인(일반방송사업자)이 동일 지역에서 소유 또는 경영지배할 수 있는 방송국은 1개에 국한된다는 원칙인데, 타 지역에서 걸쳐 복수국을 소유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는다.
- 경영지배(Control)는 10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갖는 것이며 타 지역에서는 15분의 1의 의결권을 갖는 것, 5분의 1을 초과하는 역원(이사), 대표권을 갖는 역원(이사)을 의미한다. 위성방송의 경우(BS 디지털 방송)는 3분의 1의 결권을 의미한다.

3사업 지배 금지의 원칙은 역으로 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중매체간의 겸영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일본에서는 신문사업과 방송사업의 겸영이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다채널, 다매체화가 진행되면서 전과자원의 희소성이 해소되어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기 시작했으나, 방송의 ‘다원성’, ‘다양성’, ‘지역성’을 위해서는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할 정책목표라는 전제 하에 현행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을 적절하게 완화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00년 5월에 전과법 20조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미디어 겸영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방송 통신 규제기관인 총무성은 지상파방송사업자에 의한 BS 디지털 위탁방송사업자 출자비율 상한을 3분의 1미만부터 2분의 1미만 이하로 완화하는 방송법시행규칙 및 방송국 개설의 근본적 기준의 일부를 개정했다. 아직 그 서비스 보급이 본격화되고 있지 않는 BS 디지털 방송을 NHK와 5대 민방 주도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라 할 수 있다(한국방송진흥원, 2001).

둘째, 일본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과 케이블 TV 간의 상호 겸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신문과 방송의 상호출자를 허용하고 있어, 신문사의 방송사업 진출이 매우 활발하다(김영덕, 2003).

한편, 총무성의 조사연구회인 ‘방송정책연구회’은 ‘BS디지털방송 관련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의 완화(2003. 5. 14)’,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의 완화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2003. 5. 16)’을 발표하였다. 논의의 핵심은 2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막대한 설비투자를 감당할 수 없는 영세 로컬국의 합병 인정 부분과 BS디지털방송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상파방송과의 개선을 통한 자회사화 인정 부분이다. 이 보고서에 나타난 주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2003년 12월 일본 총무성은 지상파의 디지털 방송전환 비용 조달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방송국의 합병 등을 엄격하게 제한해왔던 매스미디어 집중배제 원칙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총무성은 집중배제완화를 통해 지역의 프로그램 제작력 및 정보 발신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동일한 현 내에서는 겸영 및 키 스테이션에 의한 지배가 지역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제 완화의 움직임에 따라 일본의 방송업계에서는 방송시장 재편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는 방송서비스를 시작한 지 2년이 넘도록 경영난에 허덕이는 BS 디지털방송과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라 막대한 설비투자로 경영난이 예상되는 로컬국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CS디지털방송은 플랫폼사업자이므로 합병을 막는 법적 규제는 없다. 로컬국의 경우 방송지역이 서로 다른 Key국으로부터 출자비율의 상한은 20%로 변화가 없지만 인접한 현 및 동일블록내의 합병, 통합이 가능하게 되면,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시대 생존전략으로 규제완화의 틀 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국의 경영통합이 현실화되는 것은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는 2008~2010년에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방송진흥원, 2001).

〈표 23〉 향후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의 정책방향

구분	내 용
지상파방송	1. 동일지역내의 완화문제 동일지역내에서의 출자제한의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현행 출자 상한 1/10 이하) 2. 서로 다른 지역간의 완화 서로 다른 지역간의 완화 가운데 Key국과 로컬국의 경우 로컬국의 지역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완화를 신중히 검토(출자 비율 규제는 현행 유지 혹은 소폭 완화) 3. 로컬국간 완화의 구체안 로컬국간의 경우 지상파방송의 중요한 목적인 지역성을 유지하고 디지털화에 대응, 지역의 프로그램 제작과 정보제공 능력을 향상키며, 경영기반 강화가 가능한 경우는 ① 지역성을 고려한 일정조건(방송대상지역이 인접할 것, 2개의 방송대상지역에 한정할 것)을 충족시키는 방송사업자간의 겸영(혹은 완전 자회사화) 인정 등 대폭적인 완화가 타당 ② 위의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겸영(혹은 완전 자회사화)은 인정되지 않지만, 출자규제비율은 지역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완화가 타당
위성방송	1. BS디지털방송과 지상파방송의 겸영은 현 시점에서는 부적합 2. 출자비율은 현행의 1/3 미만에서 1/2 이하로 완화하는 것이 적함
경영과탄시 처리문제(지상파, 위성 공통)	방송사의 경영 과탄시 시청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일정한 조건하에서 예외적인 완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당

일본의 전기통신시장은 비대칭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독점시장에서 경쟁시장으로 이행하면서 과도적 상태에 있으므로 시장영역이 큰 점 등의 조건을 가진 전기통신사업자(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장에서 요금 등 기타 제공조건 결정이나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경쟁관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시장지배적사업자와 신규참가 사업자와의 사이에 접속이나 영업활동을 둘러싼 분쟁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① WTO 기본합의에서는 주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반경쟁적 행위 방지나 상호접속에 관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② 구미의 국가들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규제제도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기통신사업이 국민생활 및 사회경제 활동을 기반으로 높은 공공성을 가진 점을 감안하여 종전의 보틀넥설비에 착안한 규제와 함께 일정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지속적으로 방지,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동체 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 기준이 되는 동일 업무 구역 내의 수익 영역을 1/4이 넘는 경우로 규정하는 등 소요 정·성령 정비를 실시하였다.

〈표 24〉 비대칭 규제 내용

		시장지배적 사업자		시장비지배적사업자
		지역고정계 설비	이동체 설비	
서비스	요금	프라이스캡 신고(현행유지)	신고(현행유지)	신고(현행유지)
	계약약관	인가(현행유지)	인가→신고	인가→신고
접속		접속약관인가·공표 (현행유지)	접속협정인가→ 접속약관신고·공표	접속협정인가→ 접속협정신고
공정쟁경확보		방화벽설치 (역원검입 제한 등)		
		접속정보 목적 외 이용, 부당우대 등 금지 (정비·변경 명령)		

출처: 정성영(2004)

꾸준한 규제 완화의 흐름 속에서 2003년 7월 일본 기존 통신사업 규제에 획기적

인 변화를 야기하는 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이 통과했다. 진입규제와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제를 비롯해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제도 전체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하고 ‘전기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및 간소화’, ‘통신사업자의 활력 및 경쟁력 제고’를 우선시 고려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유지해 오던 설비규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서비스에 대한 사전규제도 최소화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의 골자 및 보완조치를 정리할 수 있다.

- ① 제 1종 전기통신사업 및 제 2종 전기통신사업의 사업구분 폐지
- ② 진입·퇴출규제에 대해 인·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신고제로 완화
- ③ 사업자에 의한 인프라 구축의 원활화를 위해 공익사업 특권과 관련한 인정제도를 도입: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인프라 구축 진입의사 결정
- ④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서 요금계약약관의 작성의무 등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서비스 제공조건의 자유화) 한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불만처리 의무 등 이용자 보호 규칙 정비
- ⑤ 사업자간의 중요 통신확보를 위한 규칙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
- ⑥ 단말기기의 기술기준 적합성을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의 신설
- ⑦ NTT법 개정: NTT동일본이 NTT서일본에 대해 금전을 교부(무상 지원)하는 등
- ⑧ 경쟁 평가프로세스의 명확화 및 공개 절차화 추진

따라서 사업법 개정에서 주목할 점은 정부간섭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보호책 등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사전규제를 지양, 사후규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시내전화 부문을 제외하고 특정 이용자와 상대계약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특징적이다. 아울러 진입규제 완화에 따른 보완조치로서 인프라 확보에서 공익사업 특권제도를 도입하고, 필수설비 부문을 배외하고 사업자간 거래와 관련된 사전규제를 폐지하였다<sup>28)</sup>.

또한 일본의 통신시장은 NTT 이외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이

28) 정성영 (2004). 유비쿼터스 구현을 위한 통신사업 규제 개선방향, <통신시장> 통권 제 52호.

없다. 1997년 7월, NTT 지주회사, NTT 동일본 지역회사, NTT 서일본 지역회사와 완전한 민간회사 형태인 NTT 장거리·국제 등 4개로 분할하였다.

NTT법 6조에 의하면 외국인은 NTT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며, 의결권 지분의 총 33.3%까지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의 범위에는 외국 정부, 외국 자연인, 외국 법인, 외국인의제 국내법인이 포함되며, 국내 법인의 외국인의제 기준은 지배력(Controlling Power) 확보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NTT법 10조에 의하면 외국인 NTT 지주회사 또는 지역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라. 기타 규제

일본의 전파법 제4조(무선국의 개설)에서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총무성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 발사 전파가 현저하게 미약한 무선국으로 총무성령으로 정한 것이나 시민라디오의 무선국(26.9MHz부터 27.2MHz까지의 주파수 전파를 사용하거나 공중선 전력이 0.5W이하인 무선국 중 총무성령으로 정한 것으로 제38조의 2 제1항의 기술기준적합증명<sup>29)</sup>을 받은 무선설비만을 사용하는 것, 공중선 전력이 0.01W이하인 무선국 중 총무성령으로 정한 것으로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을 자동적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능 이외에 총무성에서 정한 기능을 보유한다. 타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하는 것과 같은 혼신 또는 기타 방해를 주지 않고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38조의 2 제1항의 기술기준적합증명을 받은 무선설비만을 사용하는 것)은 총무성령에 의거 무선국 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무선국의 면허는 원칙적으로 총무성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전파법 제4조), 만약 총무성 장관의 면허 없이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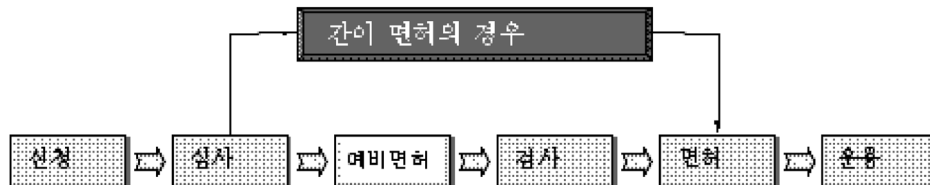
‘변경허가’는 전파법 제16조의 2와 제17조에 근거, 면허인은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업무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총무성 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선국의 목적 변경이 가능하며 통신 상대, 통신사항 또는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

29) 총무성 장관은 소규모 무선국에서 사용하기 위한 무선설비로 총무성령으로 정한 것(특정무선설비)에 대해 제3장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지정하는 자(지정증명기관)에게 이를 행하게 할 수 있음

변경 또는 무선설비 변경 고사를 하려는 경우, 다시 총무성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림 2) 일본의 무선국 허가 절차



출처: 박종훈(2001).

일본은 통신시장 개방 이후 전파법 제27조의 2<sup>30)</sup> 규정에 의거 포괄면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휴대전화의 연간 가입자 수가 증가하여 행정과 휴대전화 사업자에게 있어서 면허신청에 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별 무선국을 총무성 장관이 감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해 통신 상대방인 무선국(기지국)의 지시를 받아 전파를 발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휴대전화의 이동국 등 개별 무선국마다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하나의 면허로 복수의 무선국을 개설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자적 무선국 면허 신청제도로 FD(Flexible Disk)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정보화 진전과 함께 행정절차의 전자화, 페이퍼레스화를 추진, 무선국 면허인의 이용 편의성 향상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999년 4월부터 FD신청 절차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지상파 방송은 방송국을 개설하려고 할 때 총무대신으로부터 신규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방송국의 면허는 사업의 면허가 아니고, 전파법 제4조에 따라서 무선국으로서의 방송국 면허를 받는 것이다. 전파법에 따르면 방송국의 면허를 받

30) 통신 상대방인 무선국으로부터 전파를 받아 자동적으로 선택된 주파수 전파만을 발사하는 무선국 중 총무성령으로 정한 것으로 제38조의 2 제1항의 기술기준적합 증명을 받고 무선설비만을 사용하는 것(특정무선국)을 2개 이상 개설하려는 자는 특정무선국의 목적, 통신 상대, 전파형식 및 주파수와 무선설비의 규격(총무성령을 정한 것에 한함)이 동일한 것에 한해 특정 무선국을 포괄하여 대상으로 하는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은 자는 전파법상 “무선국으로서 방송국의 면허인”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전파법의 규제를 받게 되고, 또 하나는 “방송법상 방송 사업”이라고 하는 지위가 주어지기 때문에(방송법 제4조1항), 방송국 개설 후 업무 운영에 관해서는 방송법의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방송국의 면허 절차는 면허신청, 면서의 심사, 예비면허, 공사낙성 후의 검사, 면허교부의 순서를 거친다. 방송의 면허는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에 의한다. 1) 공사설계가 전파법이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방송용 주파수 사용계획에 따라 주파수 할당이 가능할 것, 3) 신청에 관련한 업무를 유지하는데 충분한 재정적 기초가 있을 것, 4) 총무성령으로 정한 방송국 개설의 근본적 기준에 일치할 것 등이다.

일본의 케이블, 수탁방송사업자들을 총무성으로부터 면허를 부여받고 있으며, 위탁방송사업자는 인정을 받는다. 전기통신역무이용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제를 운용하고 있다.

경제발전 및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함께 전파 사용의 급격한 증가와 다양화되는 변화 속에서 불법무선국의 급증, 전파이용 확대에 따른 행정부담 증대라는 관리상의 문제에 직면, 이러한 비용부담 해결을 위해 1993년 4월 1일부터 전파이용료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전파이용료(User Fee)로 명명되지만 관리비용 충당을 위한 전파관리 수수료의 성격을 갖는다. 즉, 전파감시, 무선국 데이터베이스 정비 등 전파 스펙트럼 사용자를 위해 행해지는 각종 활동비용 충당을 위해 무선국 면허인으로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징수하기 때문에 전파관리 당국에서는 전파이용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하지만 관리비용충당 원칙에 근거한 관리수수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수수료 수입은 경상관리비용에 무선국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비용도 전파이용료로 충당하는 관리비용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전파법의 제103조의 2<sup>31)</sup>에 근거, 전파스펙트럼의 이용형태와 무선설비의 설치 장

---

31) 면허인은 전파이용료로 무선국의 면허일부터 계산하여 30일 이내 및 이후 매년 면허일에 해당하는 일(해당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30일 이내에 해당 무선국의 면허 일 또는 해당일(이하 계산일)부터 시작되는 각 1년의기간에 대해 다음 <표 4-31>과 같이 무선국의 구분에 따른 금액(계산일부터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금액에 해당 기간의 월

소에 따라 무선국을 9개로 구분하고 무선국의 면허일 또는 해당 일부터 1년간의 기간에 대한 전파이용료를 다음 <표 25>와 같이 일본 정부에 납부한다.

<표 25> 일본의 무선국 구분과 금액

무선국의 구분	대표 무선국	금액
1. 이동하는 무선국(3항부터 5항까지 및 8항에서 열거한 무선국 제외. 2항 동일)	간이무선국, 항공국, 육상이동국, 선박국	600엔
2. 이동하지 않는 무선국으로 이동하는 무선국 또는 휴대하여 사용하기 위한 수신설비와 통신을 실시하기 위해 육상에 개설한 것(8항에서 열거한 무선국 제외)	기지국, 무선호출국, 해안국	5,500엔
3. 인공위성국(8항서 열거한 무선국 제외)	통신위성, 방송위성	24,100엔
4. 인공위성국 중계에 의해 무선통신을 실시하는 무선국(5항 및 8항에서 열거한 무선국 제외)	지구국	10,500엔
5. 자동차, 선박, 기타 이동하는 것에 개설하거나 휴대하여 사용하기 위해 개설한 무선국으로 인공위성국의 중계에 의해 무선통신을 실시하는 것(8항에서 열거한 무선국 제외)	선박지구국, 항공기 지구국	2,200엔
6. 방송하는 무선국(3항 및 7항에서 열거한 무선국 제외)	TV방송국, 중파방송국	23,800엔
7. 다중 방송을 실시하는 무선국(3항에서 열거한 무선국 제외)	음성/문자 다중방송국	900엔
8. 실험무선국 및 아마추어무선국	실험국, 아마추어국	500엔
9. 기타 무선국	고정국	16,300엔

출처: 일본 전파법 제103조의 2

한편 전파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대상 무선국에 대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전파법에서는 국가가 개설한 무선국, 지방 공공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중 소방용 무선국과 외국에서 취득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에 대한 면허의 특례사항에 관한 규정에 의해 면허를 부여받은 무선국의 경우 전파이용료를 면제하며 지방 공공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중 방재용 무선국(방재행정무선)의 경우에는 1/2을 감면한다.

수를 12로 나누어 얻은 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방송법 제 1조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적시해 놓고 있다. 일본의 내용 규제는 첫째, 방송사업자는 방송이 국민에게 최대한 보급되어 그 효용을 가져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방송의 불편부당, 진실 및 자율을 보장함으로써 방송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방송종사자의 직책을 밝힘으로써 방송이 건전한 민주주의 발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넷째, 이러한 방송의 기본방향에 입각해 제 3조의 방송 프로그램 편집의 자유·방송 프로그램의 편집준칙·방송 프로그램의 편성기준·방송 프로그램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기관으로 프로그램 심의기관의 설치 등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규정들은 공안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지 말 것, 정치적으로 공평할 것, 보도는 사실을 왜곡하지 말 것,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다양한 각도에서 논점을 밝힐 것, 장르별 상호조화의 원칙 등과 같이 공익 및 다양성 보장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러한 방송 프로그램 내용 관련 규정에 입각해 민간방송사업자 단체인 일본민간방송연맹은 업계차원에서 방송 프로그램 기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각 사업자는 내부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 심의기관은 NHK와 민방 모두에 그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의 설치는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NHK는 국내방송의 경우 중앙방송프로그램 심의회와 일본의 8개 행정구역별로 지방방송 프로그램 심의회를, 국제방송의 경우에는 국제방송 프로그램 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방송국 내의 고사실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심사하고 있다.

최근 통신시장에 등장한 인터넷폰은 현재의 역무 구분에서 음성역무의 하나로 제1종사업자와 일반 2종 사업자가 특별한 규제 없이 허가(1종) 또는 신고(일반2종)로써 진입할 수 있으며 공전공 접속비용으로 원칙적으로 규제는 없어졌으며, 1997년 8월 제2종사업자에 의한 국제 인터넷전화도 자유화되었다. ISP는 설비보유유무에 따라 제1종 또는 일반2종사업자가 될 수 있으며 역무, 양태의 분류는 동등한 법률적 적용을 받고, 제1종의 경우 제1종 사업자로써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제공하는 역무는 데이터전송 역무로 분류한다.

일본은 2002년 Softbank Broadband media가 ADSL을 통해 텔레비전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서비스의 모태가 된 법률은 2002년 1월부터 시행된 전기통신 업무이용 방송법으로 제 2조 1항에 따르면 “공중에 의해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의 송신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기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업무를 이용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전기통신 업무이용 방송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위성이나 유선 등 전기통신 사업자의 설비를 이용해 방송을 실시하는 영역을 새롭게 전기통신 업무이용 방송 사업자로 구분하고 방송 면허 조건도 등록제로 전환하였다. 다만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 방송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권호영, 2004).

## 6. 소결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신방송융합에 대한 대응방식이 국가별통신·방송 환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연구를 토대로 주요국들의 디지털 방송정책을 유형화하고 향후 우리나라 디지털 방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주요국들의 디지털 방송정책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분석틀을 마련하였고, 두 가지 기준 가치를 선택하였다. 첫 번째 기준가치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이행하면서 방송법제도에 변화가 일어났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시장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신규서비스의 등장, 사업자 허가, 규제 변화 등을 알 수 있는 규제기구의 개편 여부를 하부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두 번째 기준가치는 통신·방송융합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통신 규제와 방송 규제 간의 유사성 정도 또는 통합여부를 알아본다. 이 기준 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통신법과 방송법의 유사성 정도 및 통합여부, 통신·방송 규제기구의 유사성 정도 및 통합여부, 통신·방송 소유규제의 유사성 정도를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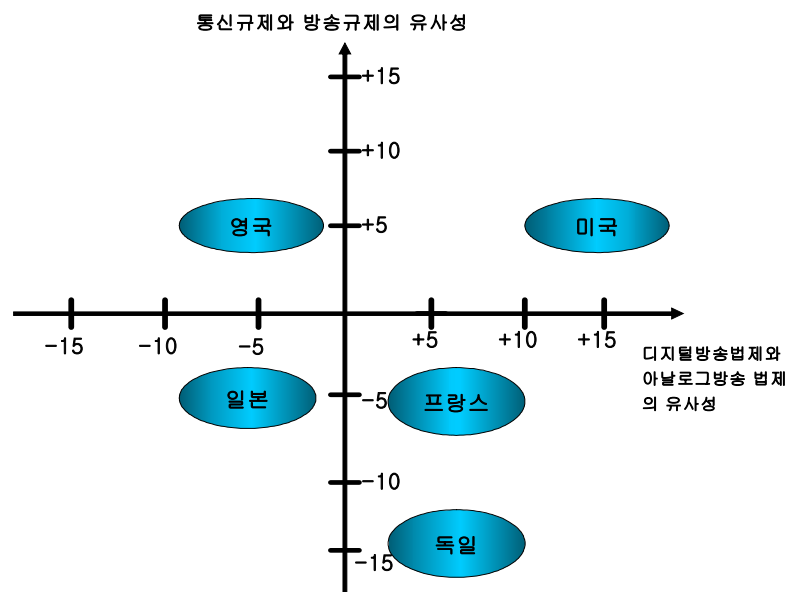
이러한 각각의 가치 기준들에 근거해서 아날로그시대와 디지털시대의 방송제도의 유사성 정도, 통신·방송 규제의 유사성 및 통합정도에 따라 -5에서 +5까지 점수를 부여하였다. 즉, 디지털 전환기의 변화 정도가 크면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방송법제 유사성이 낮게 점수<sup>32)</sup>가 부여되고, 변화가 없거나 변화의 정도가

32) 점수 부여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변화가 없으면 유사성 점수 +5, 획기적인 변화

적으면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방송법제 유사성이 높게 점수가 부여된다. 통신·방송 규제 유사성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통신규제와 방송규제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하게 되면 유사성이 낮은 점수를 받게 되고, 통신규제와 방송규제간의 통합규제가 만들어졌거나, 차이가 없으면 유사성은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두 가지 분석 틀을 중심으로 주요국들을 분류한 결과 다음 [그림 3]과 같이 유형화되었다.<sup>33)</sup>

[그림 3] 주요국 디지털 방송정책 유형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아날로그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방송정책 및 법제 간에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형으로 분류된 근거는 미국이 디지털기술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고려되지 않았던 1934년에도 방송과 통신은 같은 통신법 관할 하에 있었고 이후 개정된 1996년 Telecommunication Act도 단일법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

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면 유사성 점수 -5가 부여된다.

33) 통신·방송 전문가 20인을 대상으로 5점 척도로 주요국 디지털방송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균점을 내어 유형화하였다.

털 시대의 방송법제 간의 유사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통신과 방송 규제 간의 유사성 및 통합 정도를 비교해 볼 때 미국은 통합법과 통합규제기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통합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통신·방송 정책 및 규제가 단일기구인 FCC에서 통신·방송 관련 업무 모두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소유규제 부분에서 통신과 방송 영역을 살펴보면 통신에 대한 규제가 방송에 대한 규제보다 완화된 법적용을 받는다. 특히 통신시장은 진입장벽이 없는 상태이며, 방송시장도 진입장벽이 대폭 완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통신과 방송에 대한 소유규제의 정도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프랑스는 디지털시대의 방송법과 아날로그 시대의 방송법 간의 유사성 정도가 높은 편이다. 신규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의 대응만 있을 뿐 사업자 허가과 규제기구 부분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신규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새 ‘전자커뮤니케이션법’에서 ‘전자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 안에 기존의 방송망, 지상파, 케이블, 위성 그리고 새로운 방송망인 ADSL과 디지털 방송을 모두 통합함으로써 신규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단일한 사항만으로는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으나 3가지 항목상으로는 큰 변화로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영국이나 독일보다는 디지털 방송에 대한 대응이 늦었지만 프랑스도 새로운 법안을 개정함으로써 통신·방송융합시대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

통신과 방송 규제의 유사성 및 통합정도를 보면 통신과 방송을 규제하는 기관은 여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 통합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통신과 방송 관련 정책 및 규제에 있어서 ART와 CSA로 업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합의를 거쳐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소유규제를 살펴보면 통신에 대해서는 거의 규제를 하고 있지 않지만 방송의 경우는 다르다. 특히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엄격한 만큼 방송에 대한 규제가 쉽게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디지털시대와 아날로그 시대의 방송 규제와 통신·방송 규제를 비교해 볼 때, 다른 나라들과 상대적으로 변화가 컸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통신과 방송 규제 부분에서 통합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송법제 간의 유사성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통신과 방송 규제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통합법 Communication Act 2003의 개정과 통신·방송통합규제기구인 OFCOM의

탄생이다. 통신·방송의 융합에 대응한 단일법의 제정으로 이제는 망과 서비스로 분류되어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받는다. 소유규제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통신에 있어서 거의 규제가 없는 반면 방송은 소유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1998년 경쟁법과 2002년 기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전보다 경쟁에 더 큰 비중을 둔 규제를 받고 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이행하면서 방송법의 변화를 살펴보면, 신규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Communication Act 2003에 전자커뮤니케이션서비스, 콘텐츠 서비스, 방송서비스로 분류를 통해 새로운 통신·방송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놓았다. 이 법 안에서 독립TV서비스를 콘텐츠의 성격과 방송/통신으로 구분하여 이를 다시 5종의 1그룹과 2종의 2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서 television licensable content service를 경계영역적인 서비스로 보고 있다.

일본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이행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규제 기구의 재편이 있었고, 통신·방송융합서비스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일본의 총무성은 통신·방송 정책 및 규제의 단일기구이며, 총무성 내 정보통신정책국에서 통신과 방송 관련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통신과 방송 관련 법의 통합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통신방송융합서비스를 위한 법규가 마련되었는데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을 근거로 IPTV가 규제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방송규제와 통신·방송 규제 간의 변화가 거의 없다. 가장 큰 변화로는 디지털 방송시대로 이행하면서, 그리고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 등장에 대응하여 제 3의 법을 제정한 것이다. 신규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고 각 관할기구에 규제를 맡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방송규제기구와 아날로그 시대의 방송규제기구 간에는 변화가 없다. 또한 독일은 연방과 주차원에서 통신과 방송에 대한 정책이 구분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신·방송 통합규제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방송법 및 통신법도 규제기구와 마찬가지로 연방차원에서의 법규와 주차원에서의 법규로 분리되어 있다. 즉 통신 관련 법률은 연방 차원에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방송법은 주 정부가 법률 제정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독일에는 통신과 방송 관련 통합법이 없다. 새로운 통신 서비스와 미디어서비스는 정보커뮤니케이션 서비스법과 미디어서비스국가협약에 준해 법적용을 받는다. 이처럼 통합법은 아니지만 독일 국가의 특성을 고려한 대

응을 하고 있다. 독일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규제를 연방차원에서 연방독점제한법의 적용을 받으며 주차원에서도 규제를 받는다. 언론기업의 합병 또는 시장지배력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처럼 통신에 대한 규제는 없는 반면 방송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 통신·방송 융합시대에 대한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연방정부가 신속한 법적 환경 대응을 원하는 것과는 달리 패전 산물인 분할적 방송제도 틀이 지배적으로 자리매김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상으로 살펴 본 바와 같이 주요국들은 자국의 사회·경제·문화적 특성에 따라 각각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디지털시대와 아날로그 시대의 유사성 정도를 살펴볼 때 미국이 가장 유사하게 나타났고, 프랑스와 독일이 비슷한 수준으로 변화를 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국과 일본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이행됨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영국은 통신과 방송의 융합정도도 높게 나타난 것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가장 큰 변혁이 일어난 국가로 볼 수 있다. 일본은 통신·방송융합의 정도가 영국보다 낮게 나타난 것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일본이 새로운 통신·방송융합시대에 대응한 법 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통신·방송융합시대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 통신·방송융합모델을 살펴보고 지향해야할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외국의 규제체계의 변화 양상과 비교·분석하는 것은 새로 형성되는 방송산업의 시장구조와 행위에 대한 규제체계가 미숙한 우리 나라의 규제체계에 대해서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우리 나라보다 방송환경의 변화가 먼저 일어났으며, 따라서 방송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들어 방송법이나 통신법, 그리고 경쟁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융합산업의 조기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환경의 변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표 26〉 융합관련 규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구분 규제	공통점	차이점	
규제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과점 허용 → 시장경쟁</li> <li>• 규제완화(사전규제 → 사후규제)</li> <li>• 규제 중복문제 해결 추진</li> <li>• 규제기구 통합 혹은 분리 추진</li> </ul>	한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중복 문제</li> <li>• 소유규제 비중 높음 (구조규제 &gt; 행위규제)</li> <li>• 융합관련 정책적 대응 (임의적·일시적)</li> </ul>
		주요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중복 문제 해소</li> <li>• 소유규제 완화 (구조규제 &lt; 행위규제)</li> <li>• 융합관련 정책적 대응 (체계적·항시적)</li> </ul>

## 제 4 장 국내의 디지털 방송정책 모델



## 제 4 장 국내의 디지털 방송정책 모델

### 제 1 절 국내 디지털 방송정책 유형화

#### 1. 법제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통합방송법 제정과 통합방송위원회 출범이후, 통신·방송 융합화의 급격한 진전과 더불어 이들 통신사업과 방송사업을 동시에 규율하는 통신방송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통신방송관계법제도의 개편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1998년 2월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 2001년 10월 방송위원회 방송정책기획위원회 보고서, 2003년 1월 방송위원회 방송통신법제정비위원회 보고서 등이 그것이다. 전문가의 대다수는 통신규제와 방송규제의 통합적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대체로 공감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다만, 통신사업과 방송사업을 동시에 규율하게 될 통합규제기구 설립과 관련, 그 위상과 기능의 설정에 있어서 관계 정부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합치가 성립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04년 3월 2일 방송법이 개정으로 기존의 방송매체를 중심으로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으로 구분하던 방송의 분류를 방송콘텐츠 중심으로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 방송,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으로 분류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유제한 규정의 폐지 또는 완화로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도입에 따른 소유제한 및 경영제한규정, 채널의 구성과 운용관련 규정 개정되었다. 그리고 대기업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주식 또는 지분 소유제한 폐지, 외국자본의 종합유선방송사업(SO) 및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한 출자 및 출연 제한 완화(49%)가 이루어졌다.

개정법의 의의로는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데이터 방송 등 신규 방송서비스의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사업의 추진이 가능했다. 첫째, 금번 개정안으로 SKT가 추진 중인 위성 DMB사업을 허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및 사

업 추진의 장애요인 제거되었다.

둘째, 세계 최초로 지상파DMB 서비스가 실현될 경우 방송부문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관련 방송 기술 개발이나 단말기 제조 분야에서 선점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사업자 허가방식 및 사업자 수 선정 문제로 인해 난항을 벌였던 지상파DMB는 2005년 상반기 내에 사업자가 선정되어 서비스가 시작될 전망이다. 셋째, 데이터 방송 및 이동 멀티미디어방송이 방송의 영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향후 융합서비스 관련문제 해결에 있어서 방송위원회가 정보통신부에 대해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소유제한 완화로 케이블 TV 부문의 구조변화 및 디지털화 진전에도 기대가 크다. 케이블 TV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자금 유입의 통로가 확보되었다. SO 부문이 거대한 복수 SO(MSO) 구도로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며, 거대 자본의 유입으로 디지털 전환의 조속한 진척이 기대된다. 대기업의 SO 소유제한이 폐지됨으로써 CJ그룹, 현대백화점그룹 및 LG 그룹을 비롯한 대기업과 거대 통신사업자의 SO매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외국자본에 대한 SO 및 PP에 대한 소유제한 완화로 SO의 외자유치 활성화와 외국계 유명 방송콘텐츠 사업자들의 국내 진출도 예상된다.

그러나 통합방송법 개정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다. 첫째, 방송의 분류방식이 변경되었으나 융합 및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분류기준으로는 부적합하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에서의 영상 콘텐츠는 대부분 동일한 내용을 형식적인 분류로 현실성이 떨어진다.

둘째, 개정방송법에서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의 성격이 강한 데이터방송을 “방송”으로 분류함으로써, 데이터 방송의 발전이 더디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방송분야는 통신 분야보다 공익성,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해 보다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이다. 데이터방송 같은 통신적 속성이 강한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융합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통신서비스에 준하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셋째, 방송법개정을 통해 위성 DMB와 데이터방송 일부에 대해서만 역무분류가 이루어졌을 뿐 나머지 통신·방송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쟁의 소지가 남아있다. 연동형 데이터방송의 경우 기본적으로 데이터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부가통신서비스와 그 영역이 중복되어 있다. 그 이외에도 VOD 서비스를 방송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웹캐스팅, 모바일방송, 기타 융합서비스들에 대한 규제 문제들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

즉 방송법 개정으로 일부 융합서비스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시급사안에 대한 미봉적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는 아날로그 방송규제 기존틀에서 융합서비스를 아우르는 일방적인 개정을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마저도 원안이 수정·축소되면서 기존 방송분류체계에 위성 DMB, 데이터방송만을 추가한 기형적 구조를 띠게 된 것이다. 또한 위성 DMB와 지상파 DMB를 각각 위성방송과 지상파 방송으로 구분하는 우를 범하여 융합적 서비스에 대한 방송정책과 규제를 포기한듯 한 결과를 유발하여 방송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어려운 범제화를 한 상황이다. 따라서 개정방송법이 향후 새로이 등장할 여타 융합서비스들을 모두 포괄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범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 2. 규제기구

통신과 방송의 정책 및 규제기관으로는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방송위원회가 있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정책의 수립과 사업자허가, 요금 및 약관인가 등 사전규제를 담당한다. 통신위원회 과징금부과 등 사후규제를, 민간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통신내용에 관한 규제를 담당한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정책 수립과 경제적 규제와 내용규제를 전담한다. 다만, 방송정책 중 방송영상정책

〈표 27〉 통신과 방송의 정책 및 규제기관

구분		통신	방송	
산업진흥정책		정보통신부	방송영상산업정책	문화관광부
			기술 및 시설 정책 (H/W와 S/W)	정보통신부
			방송기본계획	방송위원회 (문광부 협의)
규제 정책	사업자 허가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사전 규제	정보통신부		
	사후 규제	통신위원회		
	내용 규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장관,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은 정통부 장관, 방송 프로그램의 유통 상 공정거래질서확립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하여 수립하고 추진한다. 통신법령의 제·개정은 정보통신부가 수행하는 반면 방송법령의 제·개정은 방송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법령 제·개정은 방송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법령 제·개정을 건의하여 국무총리가 최종 제안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국내 통신 분야에 대한 규제체계는 정부부처와 규제위원회로 분리된 이원적 구조이다. 정부부처로서 정보통신부와 규제위원회로서 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존재한다. 방송부문도 유사하나 정부부처 방송위원회는 정책기능과 규제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문화영상산업정책과 방송기술정책을 담당하는 고조로 되어 있다.

〈표 28〉 국내 통신과 방송 시장 환경, 정책 및 규제 환경 비교

구 분		통신	방송
공정경쟁 환경	유효경쟁수준	유선과 무선의 지배적 사업자 건제	지상파 사업자의 독과점
	대기업 소유제한	제한 없음	대기업의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33%소유제한은 폐지 되었으나 위성방송사업에 대해서는 유지
	외국인 소유제한	기간통신사업자: 49% 별정·부가통신사업자: 없음	종합유선방송 및 방송채널 사용사업의 외국인소유제한 49%완화
기관형태 및 성격	행정기관	민간독립기관/합의제행정기관 <sup>34)</sup>	
정책 및 규제원칙	시장원리, 경쟁활성화, 통신 비밀 보호	진입 및 내용규제, 공익성	
디지털화 수준	세계 최고 수준	미흡, 진행 중	
독립성	정치적 중립 추구	정치적 균형 추구	

34) 방송위원회의 지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는 방송위원회가 대통령과 국회의 합의에 의해 탄생하였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과 같은 헌법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였는 바 헌법의 개정 없이 국민의 정당성을 직접 대표하는 헌법 수권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합의하여

출처: 김원식(2005) 재인용.

원칙적으로 통신 산업의 규제기관은 정보통신부이다. 정보통신부 장관은 전기통신기본법 제 5조에 의해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을 수립 및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전과법 제 2장 제 5조에 따라 전과자원의 확보를 위한 새로운 주파수 이용기술의 개발, 이용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주파수의 국제등록, 국가 간 전파혼신 해소와 이의 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정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전과법 제 2장 8조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과자원에 대한 국가적 수요를 원활히 충족할 수 있도록 전과이용 중·정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전과법 제 6장 제 59조에 의해 전과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부는 방송기술 및 시설 등에 관한 기술적 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방송위원회 의 추천을 받아 지상파방송 및 위성방송 사업자에게는 방송국 허가를, 종합유선방송 및 중계 유선방송사업자에게는 사업허가를 내주고 있다. 한편, 전기 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전기통신 역무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전기통신사업자간의 분쟁조정은 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에 관한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정부조직법 제 35조에 의해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청소년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 내 문화산업국의 방송광고 과가 방송영상 광고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나, 방송영상정책 수립 시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합의하여야 하고, 방송기술과 시설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방송법 제 27조). 방송위원회는 방송영상 정책 수립시 문화관광부 장관의 합의를 구해야 할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

헌법기관과 같은 독립성을 가진 기구를 지향한 결과 정부조직법 제 5조에 나타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해석도 가능하나 법리적 무리(위헌소지)가 따르고 있다. 방송법 제 22조에 따르면 방송위원회를 중앙 행정기관적 성격으로 하는 조항(제 3항: 방송위원회 위원장의 국회출석 의견 진술 및 보고의무, 제 4항: 국무회의 출석권과 국무총리에게 의안제출건의권, 제 5항: 예산회계법상의 중앙관서의 장 등의 의무)이 규정되어 있으나 통상의 합의제행정기구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위를 갖기 위해 명시되는 정부조직법이나 공무원법 상의 규정이 부재하다.

적시하고 있는데, 방송영상산업 진흥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사업자 구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 방송시장 개방 또는 국제협력증진 등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새로운 방송환경의 형성, 변화에 따른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방송법시행령 제 20조 제 1항).

반면, 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통신사업자간 및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 37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에 설치된 것이 통신위원회이고,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제 4항 제 2호에 의해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다.

### 3. 소유규제

현재 국내의 방송허가제도는 무선국허가와 방송사업자허가로 구분되어 있다. 지상파방송사업과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방송국개설허가는 방소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 장관이 하며(방송법 제 9조 및 전파법시행령 제 32조), 방송국의 개설허가, 변경허가 또는 재허가, 방송위원회의 추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와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전파법시행령 제 32조 제 4항).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방송법제 9조 제 2항).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 경우 방소위원회는 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있다(방송법 제 9조 제 3항). 방송채널사용사업,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 유선방송사업은 방송위원회에 등록이 요구된다(방송법 제 9조 5항). 종합편성이나 정보 또는 홈쇼핑을 하기 위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방송법 제 9조 제 5항).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 장관과의 협의해야 한다(방송법 제 9조 제 6항).

통신사업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바다야 하고(전기통신사업법 제 5조), 별정통신사업은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가통신사업은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부가 2002년 6월 27일 발표한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방안”에 나타난 위성 DMB사업자의 지위에 대해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는 서로 상이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보통신부는 “개선방안”에서 위성 DMB가 향후 IMT-2000 가입자망과 결합되 양방향 통신서비스로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신사업으로 규정이 가능하며, 망을 소유한 경우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하는 것이 기존 통신법의 체계를 유지하고 이미 사업허가를 받은 기존 통신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방송위원회는 위성 DMB는 오디오서비스뿐 아니라 TV서비스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어 현행 법령체계하에서는 기술적 특성 및 서비스 내용이 위성방송사업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혀 방송·통신융합 시대에 규제대상의 정의와 규제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황을 드러냈다.

#### 4. 기타 규제

현행 방송관계법제는 헌법 제21조(언론의 자유)에 입각하여 방송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보장, 방송사업자의 허가 및 규제, 방송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방송기금 및 한국방송공사의 설치와 운영, 방송사업의 운영, 시청자의 권익 보호, 방송발전의 조성 및 지원 등을 규율하는 종합법전으로서의 방송법이 있다. 다만, 방송사업은 '하드·소프트동일체원칙'에 입각한 방송허가제도의 특수성, 즉 방송사업자허가와 무선국허가의 분리체제에 따라 방송사업의 소유규제 및 내용규제는 방송법이, 무선방송사업의 허가 및 설비규제는 전파법이, 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및 설비규제는 유선방송사업및전송망사업의허가및등록등에관한규칙이 적용되는 중첩적인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상파방송사업'은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종합유선방송사업'은 종합유선방송국을 관리·운영하며 종합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위성방송사업'은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방송채널사용사업’은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표 29〉 방송사업의 구분과 허가제도

방송사업		허가절차	근거법령
지상파방송사업		방송위원회 추천 정보통신부장관 방송국허가	방송법 제9조제1항 전파법 제34조
위성방송 사업	일반적인 경우	방송위원회 추천 정보통신부장관 방송국허가	방송법 제9조제1항 전파법 제34조
	외국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위원회 승인(다만,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	방송법 제9조제6항
종합유선 방송	일반적인 경우	방송위원회 추천 정보통신부장관 허가	방송법 제9조제2항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위원회 승인(다만,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	방송법 제9조제3항
중계유선방송사업		방송위원회 추천 정보통신부장관 허가	방송법 제9조제2항
방송채널 사용사업	일반적인 경우	방송위원회에 등록	방송법 제9조제5항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위원회 승인	방송법 제9조제5항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의 특정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위원회 승인(다만,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	방송법 제9조제8항
음악유선방송사업		방송위원회에 등록	방송법 제9조제5항
전광판방송사업		방송위원회에 등록	방송법 제9조제5항
전송망사업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	방송법 제9조제10항

현행 방송과 통신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방송이나 혹은 통신이나에 따라 각기 다른 법률과 심의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통신의 내용심의는 정보통신윤리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방송·중계유선방송·전관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것에 대한 내용심의는 방송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방송법 제 32조).

방송위원회의 유사방송에 대한 내용심의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관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유통시키는 정보가 대상이며, 이에 딸상방송사업자들이 행하는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는 방소위원회가 심의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제 2항, 동법시행령 제 16조 제 3항에 의거하여, 방송관계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운용하는 인터넷방송 및 인터넷서비스의 내용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까지 성인인터넷방송을 규제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해 성인 인터넷방송을 청소년 유해 매체 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또한, 2001년부터 방송사업자(프로그램제공업)에 대해 등록제로 전환되어, 방송사업자와 독립사업자를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위원회의 내용규제는 중복규제 또는 규제의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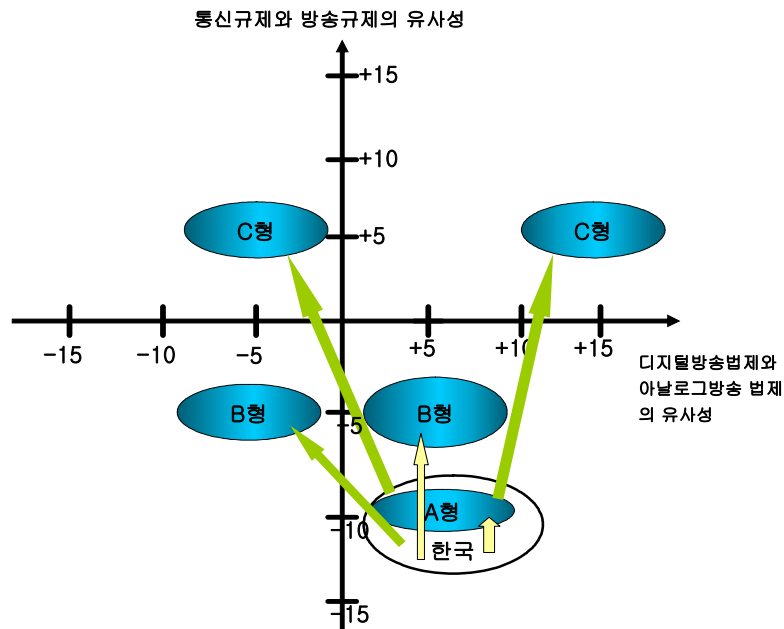
현재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디지털방송 등 신규서비스 개발, 방송·통신 융합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방송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미 2004년 3월 방송법의 개정을 통해 DMB와 같은 뉴미디어 서비스의 출현을 법적으로 수용하였고 현재 추가적인 개정을 추진 중이다.

## 5. 국내 디지털 방송정책 유형과 선택

국내 통신·방송 융합시대에 대응한 디지털 방송정책 유형을 보면 독일이 속하는 A유형과 같은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신규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안 마련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통신정책 및 방송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통신·방송정책 및 규제도 비슷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규제기구도 여전히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로 분리되어 있으며, 통합규제기구의 출범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

지 못하다. 통합법 역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이루어지기는 힘든 상황이다. 여전히 통신법과 방송법이 분리되어 있으며, 2004년 방송법 개정이 있으나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를 상용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소유규제 역시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분리되어 있으며, 방송에 대한 소유규제가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출은 33%로 제한되어 있어 진입 장벽은 높은 시장이다. 디지털 전환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통신방송융합서비스 또한 세계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규제기구의 변화는 없었다. 같은 유형에 속하는 독일과의 차이점은 독일은 통신방송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즉 제 3의 법이 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법 역시 통신법과 방송법의 통합 형태는 아니다. 그 외 규제기구의 형태, 통신법과 방송법의 분리, 차별적인 통신·방송의 소유규제 부문에서는 통합이 아닌 분리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4] 국내 디지털 방송정책의 유형화



제 5 장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디지털 시대 방송정책안

## 제 5 장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디지털 시대 방송정책안

앞서 주요국의 디지털방송정책 및 규제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디지털 방송정책 및 규제 체계가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 디지털방송환경에 적합한 모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제 1 절 유형별 시나리오

#### 1. A유형

A유형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이행하면서 방송제도에 변화가 있었고 통신과 방송 규제에 있어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특징을 보인다. 독일이 이 A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 유형에 속하고 있다. 단지 독일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융합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느냐는 여부이다. 독일은 융합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 3의 법을 제정하였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규제기구의 통합과 통신·방송 통합법 마련이 단시일 내에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신규서비스를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근거 마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독일은 융합서비스에 대한 분류기준을 정하여 연방이 관할하는 서비스와 주(洲)가 관할하는 서비스로 구분하였다. 우리의 경우도 규제기구가 통합하기 전까지 일부 융합서비스에 대해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간의 관할영역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제 3의 법을 제정하든, 상호 협력체를 구성하든 그 결과로서의 정책결정과 선택이 타협의 산물은 될 수 있을지언정 바람직한 성과로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며 미봉책에 그치기 때문이다.

## 2. B유형

B유형에 속하는 나라는 프랑스와 일본이다.

프랑스와 일본의 차이는 각각 통합법 제정과 통합기구의 출현에 있다. 프랑스는 규제기구는 분리되어 있으나 법은 2004년 전자커뮤니케이션법을 제정함으로써 통합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여 네트워크와 콘텐츠를 이원화하는 법령체계를 만들고 각 부문에 대해서는 이원화된 규제기구를 발족시켰다. 이 방식을 택할 경우, 기존과 같이 설비 특성에 따라 통신망과 방송망을 구분하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유럽국가처럼 모든 네트워크에 동등한 규제체계를 적용해야 한다. 즉 네트워크는 시장경쟁의 원리를 적용하여야 하여 진입의 장벽을 없애거나 낮추어 주는 것이다.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경쟁원칙과 부문 규제를 적용시키는 것이다. 한편 콘텐츠는 내용규제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 30〉 기구 통합과 분리의 장·단점

	통합	분리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융합형서비스에 대한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제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의 가치 사슬 변화에 대한 적합한 대응</li> <li>- 규제철학과 규제논리가 상이한 기존 전문 인력의 전문성을 극대화</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통신 및 방송이 필요로 하는 규제의 집행체제 구축 곤란으로 통합 형태에 따라 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li> <li>- 단일화에 따른 방대한 하부구조의 행정적 비능률성</li> <li>- 통신과 방송 양 부문에 정통한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기구의 규제 목표 간 마찰 가능성 상존</li> </ul>

또한 일본은 통신·방송 융합이 가시화되기 이전부터 통합형 구조를 보유하고 있었다. 2001년 우정성에서 총무성으로 구조가 재편된 것이다. 규제기구의 통합은 정책 및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대응이 빠르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융합서비스에 대해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통신법과 방송법의 분리가 지속되고 새로운 통신 방송융합서비스에 대한 법제정이 지연될 경우 통합된 규제기구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규제기관처럼 전문인력의 구성이 탄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 질 때 통합기구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이다.

B유형이 시사하는 바는 통합법 제정 또는 통합규제기구의 출범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 통합된 유형으로 가느냐 하는 우선순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느 것이 먼저 이루어지든 통신·방송 융합시대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내 상황에서도 어느 것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보다 통신·방송 융합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느냐는 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 3. C유형

C유형은 통신·방송을 규제하는 통합기구와 통합법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며, 단 소유규제에 있어서는 통신과 방송간의 규제가 다르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러한 유형에는 미국과 영국이 속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C유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 이유는 미국은 디지털시대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이전부터 이러한 방송법제가 통합을 이루고 있고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 간의 방송법제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통합법 내에서 또 하나의 차이점은 네트워크와 콘텐츠를 규제하는 법 체계가 분리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이다. 따라서 영국은 융합서비스를 다루는 법 체계가 통신과 방송을 아우르면서 포함되었다. 반면 미국은 신규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체계를 따로 마련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법 적용을 하고 있다.

규제기구와 법이 통합되어 있을 경우, 정책 전반에 일관성을 기할 수 있으며, 새로운 변화에 대해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영국과 같이 네트워크와 콘텐츠로 분리하여 규제할 경우, 관할 영역에 대한 분명한 구분된다.

궁극적으로 규제기구의 통합은 법률의 통합과 케를 반드시 같이 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변화는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C유형으로의 변화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1〉 주요국의 통신·방송융합시대에 대응한 법 개정 현황

국가	융합법령				네트워크·콘텐츠 분리 여부
	통신	통신	방송융합	방송	
미국	연방통신법				×
영국	콘텐츠	-		방송법	○
	네트워크	Communication Act 2003			
프랑스	콘텐츠	-	-	방송법 적용	○
	네트워크	전자커뮤니케이션법			
독일*	텔레커뮤니케이션법	텔레서비스법	미디어서비스 국가협약	방송국가협약	×
일본**	통신법	-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통방융합기술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 경계영역적 서비스 구분 가이드라인	방송법	×

\*, \*\* 독일과 일본은 통신과 방송을 아우르는 통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제 2 절 제 언

통신·방송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통합기구의 출범 및 통합법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통신법과 방송법의 차이를 간과해 왔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통신·방송융합에 보다 깊이 있는 접근을 위해 주요국과 국내의 통신법과 방송법의 차이, 통신규제와 방송규제의 차이, 통합의 정도를 분석하였고, 동시에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이행하면서 변화한 방송법 및 방송 규제를 살펴보았다.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디지털 방송정책 유형을 분류해 보았다.

국가에 따라서는 기존의 아날로그 체계를 디지털 체계에서도 유사하게 가져가는 경우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디지털 상황에 부합되는 조치가 부족함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이는 근본적으로 디지털방송화가 기존에 존재하던 방송을 전환하는 속성을 가지

면서 기존 사업자의 이해를 반영하는데 급급한 결과로 보여지나 디지털시대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아울러 통신법제와 방송법제의 유사성 여부에서 보면 상당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면은 국제기구의 통합과 유사 법제내지 법률의 공유로 나타난다.

그러나 어느 국가가 가장 상위의 개념의 국가시스템에 부합되는 방송·통신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며 지속적으로 적응해 가는 과정의 한 단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은 국내에서는 융합적 논의의 전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이 되는 변화를 도모해야 할 상황이다.

특정모형의 장단점은 다분히 선택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규제기구의 통합은 실질적인 정부기능의 국가경쟁력 향상 차원에서도 불가피해 보인다.



## 참 고 문 헌

## 참 고 문 헌

- 김국진(2003). 『방송·통신 융합의 이해』. 나남출판.
- \_\_\_\_\_ (2003). 방송통신융합시대 정책 및 법제도. 정보통신정책개발원.
- \_\_\_\_\_ (2003). DMB와 디지털 방송정책. DMB공청회
- \_\_\_\_\_ (2003). IT 융합시대와 규제융합에 관한 연구: 소유규제와 교차소유규제 중심 분석. Telecommunications Review(13권 4호), SK Telecom.
- 권호영(2004). 『IPTV 동향과 전략』.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김대호(2004).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정책방향. 방송위원회.
- 김도연(2004). IP TV와 케이블 TV. 정보법학회 월례 워크샵 발표문.
- 김동욱(2004). 통신방송 융합에 대응한 규제기구 재정립 방안. 국회의원 김석준 정책토론회.
- 김동준(2004). 일본 소프트뱅크, 야후 BBTB의 서비스 지역 확대. telecom
- 김무곤·김관규(2004). 일본의 디지털 방송 전환 정책 및 주요 민간방송의 사업전략. 《한국언론정보학보》 2000. 봄. 통권 24호.
- 김원식·한은영(2004). 유럽 주요국의 통신방송융합 대응사례분석. 『KISDI 이슈리포트』
- 김영주·이화진(2004). 모바일 콘텐츠 이용자의 특성과 콘텐츠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모바일 콘텐츠 발전 방안 연구’ 세미나 발제문.
- 방송위원회(2004). 영국커뮤니케이션법(상), (하).
- 박승권(2004). BcN과 방송계. 『방송과 기술』, Vol. 107. pp.78~88.
- 방석호(2004).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법제도적 정비방안 연구—사업자 규제를 중심으로—, 『방송연구』, 2004 여름호.
- 박종훈·김진기(2001).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주요국가의 통신서비스 정책 비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손장우(2003). Triple Play Service: Broadcast TV and VoD over IP. Netmanias 《Network Newsletter》. September 2003. pp.2~9.

- 송민정(2004). 해외통신사업자의 IPTV 제공 성공 사례 연구. 방송학회 2004년 학술대회 발표문.
- 신승목(2003). Issues on Triple Play Service: Multicast scalability and QoS. 《Netmanias Network Newsletter, September 2003, pp.17~21.
- 신용식·박용길·정원석·이주식(2004). 광대역 통합망(BcN) 개념, 특징 및 서비스 발전 전망; Prospect for evolution of BcN Service. 『방송과 기술』 Vol. 107.
- 오영안(2004). 낙후된 미 브로드밴드 산업 과감한 경쟁 정책 도입 긴급요. 월간 『뉴미디어』, 통권 214호, pp.86~88.
- 유의선(2004). 방송통신융합시대의 규제관리기구 정립방안. 방송위원회.
- 윤석민(2005). IP-TV의 국내외 도입 현황과 정책상의 쟁점들. 한국정보법학회.
- 이상일(2004). IP-TV 서비스가 BcN 주도 사업자 탈락 케이블 TV업계 반발. 월간 『뉴미디어』, 통권 214호, pp.22~25.
- 이상우(2004).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해외사례 비교분석—유럽의 동향을 중심으로—, 『방송연구』, 2004 여름호.
- 이태용(2003). 이탈리아 FastWeb의 초고속인터넷 사업 『telecom today』 71호. 한국디지털경제연구원.
- \_\_\_\_\_ (2004). 이탈리아 FastWeb의 ‘triple play service’ 현황 『telecom today』 79호. 한국디지털경제연구원.
- \_\_\_\_\_ (2004). 통신, 방송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IP-TV 서비스가 BcN 주도: 사업자 탈락 케이블 TV업계 반발”, 월간 『뉴미디어』 214호, pp.22~25.
- 이태용(2004). 프랑스, 지배적 사업자의 IP-TV 콘텐츠 독점 논란 『telecom today』 87호. 한국디지털경제연구원.
- 이홍석(2004) 미 방송·통신 ‘영역과괴’ 바람 2004/09/14 디지털 타임즈
- 장재현(2004). 콘텐츠 확보를 위한 통신사업자의 전략: 이통사와 MSP 간의 제휴 사례 분석. ATLAS Research Group.
- 정성영(2004). 유비쿼터스 구현을 위한 통신사업 규제 개선방향, <통신시장> 통권 제 52호.

- 정윤식(2004) IP-TV 도입과 진입장벽 제 1회 정보통신법 워크샵 〈IP-TV와 제 문제〉 2004. 12 한국정보법학회
- \_\_\_\_\_ (2004). 방송·통신 융합환경과 패러다임 변화, 방송위원회.
- 하나포스 신기술 사업팀(2003. 2) 일본 BB Cable TV 현황 조사.
- 한국디지털경제연구원(2003. 12. 26). 日 KDDI, 방송·VoD 서비스 ‘히카리 플러스 TV’ 출시, 이동통신 서비스와도 연계.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2004). 방송 동향과 분석.
- 황 근(2004). IP-TV와 지상파방송. 한제 1회 정보통신법 워크샵 〈IP-TV와 제 문제〉 정보법학회 워크샵 발표문
- \_\_\_\_\_ (2004). 통신방송융합 무엇이 쟁점인가—방송통신융합과 정책 이슈.
- 한창완(2005). IP-TV의 디지털 콘텐츠 수급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법학회.
- Infotma(2004). Grobal Digital TV.
- Ofcom(2004). Driving digital switchover: a report to the Secretary of State.
- Brown, A. & Robert G. P.(2005). 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in Europ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London.
- SK 경영경제연구소(2004). IT Insight.
- 해외 IP TV 사례 홈페이지
- 미국, SBC: (<http://www.sbc.com>)
  - 미국, Verizon: (<http://www.verizon.com>)
  - 홍콩, PCCW, Nowbroadband TV: (<http://www.nowbroadbandtv.com>)
  - 이탈리아, FastWeb: (<http://www.fastweb.it>)
  - 일본, SBB: (<http://www.softbankbb.co.jp>)
  - 프랑스, France Telecom: (<http://www.francetelecom.fr/fr>)